

사회문화법제분석 98-3

消費者製品의 安全性 確保를
위한 制度的 方案

1998. 9

研究者：李鍾永(先任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目 次

第1章 序 論	5
第2章 消費者製品의 安全確保에 관한 現行法制	7
I. 制度의 必要性	7
1. 立法權者의 課題와 制度의 役割	7
2. 消費者保護法의 補充	8
3. 製造物責任法의 役割	11
II. 一般製品의 安全性確保	13
1. 製品安全性 確保의 一般法化	13
2. 製品安全을 위한 特別法	13
3. 内 容	14
第3章 유럽聯合과 獨逸의 製品安全法	17
I. 유럽聯合의 製品安全에 관한 制度	17
1. 製品安全政策의 새로운 方案	17
2. 製品許可統制, 事後市場統制와 製造物責任	21
3. 製品安全準則	22
II. 獨逸의 製品安全法	27
1. 製品安全法의 制定背景	27
2. 民法上의 不法行爲責任	27
3. 製造物責任法의 制定	28
4. 製品安全法의 導入	33
5. CE마크 제도	45
6. 行政廳의 情報提供行爲	59
第4章 現行法의 改善 方案	63
I. 消費者保護法의 補充	63

II. 製品安全性確保의 具體化	64
1. 目的	64
2. 適用範圍	65
3. 管轄 行政廳	65
4. 事業者의 義務	66
5. 管轄 行政廳의 權限	67
III. 製品安全表示制度	75
第5章 맷는 말	77
부 록	81
I. 유럽聯合의 製品安全準則과 부속서	81
1. 유럽연합의 제품안전준칙	81
2. 부속서	88
II. 독일 제품안전법과 입법이유 등	90
1. 독일 제품안전법	90
2. 독일 제품안전법에 대한 연방정부의 입법이유	97
3. 연방참사원의 입장	110
4. 연방참사원의 태도표명에 대한 연방정부의 반대의견	116
III. 유럽연합의 CE마크 적합성평가절차	117
参考文獻	131

第1章 序論

제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현대인은 제품이 제공하는 생활의 편리함을 향유하는 대가로 불량한 제품으로부터 생명·신체의 위협과 경제적 피해라는 위험에 방지되어 있다. 제품의 소비자로서 일반대중은 제품의 구입·사용·소비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받아야 하고 과대광고나 오인광고로부터 피해의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국가는 이제 위험한 제품의 증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헌법에서 부여받은 立法形成權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사실 제품과 관련된 현대 산업사회의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산업국가는 이미 消費者保護法이나 製造物責任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한편으로 소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국가는 기준의 소비자보호법이나 제조물책임법만으로는 헌법상의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점차 인식되고 있다. 입법권자의 과제는 제품의 안전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장하며,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법적으로 안전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형성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법권자는 많은 소비자제품에 대하여 특별법, 즉 食品衛生法, 藥事法, 電氣用品安全管理法 등에 대하여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미 특수한 제품으로 인한 국민의 중대한 법익침해의 가능성을 파악하여 입법권자가 개별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당해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실시하고 있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은 이 보고서의 연구대상이 아니고, 특별법으로 규제되지 않고 있는 기타의 제품에 대한 안전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이 보고서의 연구대상이다.

소비자제품의 안전성확보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초월하여 국가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문제이다. 국가간의 교역이 증대하는 작금에는 제품의 안전성확보는 국가의 경쟁력과 관련된다. 이미 안전한 제품의 생산에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국가는 개발도상국의 제품이 자국으로 유입을 저지하기 위한 무역장벽으로도 제품의 안전수준을 활용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등장하는 산업국가의 소비자는 새로운 제품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폭로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은 이미 1980

년에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제품의 안전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과제는 현행 소비자보호법으로 완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행 법제의 상황은 입법적인 조치를 필요로 한다. 소비자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로 우리는 기존의 소비자보호법을 보충하는 방식과 새로운 제품안전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는 우선 제품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관하여 세심하게 파악되어야 하고, 필요한 요구사항이 현행 법률의 해석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행 법률의 해석으로 제품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현행 법률의 개정이나 또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우선 제품안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제품의 製造者·輸入業者·販賣者的 의무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를 파악한다. 요구되는 제품제조자와 판매자의 의무에 관한 현행 법률을 검토하고, 이미 제품안전에 대한 국가의 과제를 수행하는 일환으로 제품안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을 분석한다. 제품안전법을 제정하는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인 독일의 製品安全法을 외국입법의 연구대상으로 하고,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프랑스 등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논문에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행 법률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第2章 消費者製品의 安全確保에 관한 現行法制

I. 制度의 必要性

1. 立法權者의 課題와 制度의 役割

현행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질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제주체에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있다. 주된 경제주체인 기업은 자기의 제품이 시장에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할 목적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제품만을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새로운 품목이나 모델을 개발한 생산자는 다른 생산자와 경쟁을 의식한 나머지 충분한 안전성 심사를 하지 않고 시장에 유통시키거나 새로운 원재료를 개발하여 충분한 검증도 없이 소비재생산에 이용하거나 과소비를 촉동하여 소비자의 건전 소비풍토를 저해하며 상품의 내용이나 가격 기타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 소비자에게 검토나 교섭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제품의 소비자는 제품의 생산자 보다 상대적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에게 제조·판매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신용할 수밖에 없게 한다. 제품의 제조·판매자에 의한 제품정보는 일차적으로 소비자의 보호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판매에 있기 때문에 제품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보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적절한 대처방법을 충분하게 알지 못하는 것도 오늘날의 현실이다. 또한 제품의 위험으로 인한 피해와 인과관계에 관한 인식이 극히 충분하지 못하여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¹⁾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基本權으로 보호하고 있다. 제품에 의한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하에서 국가권력의 담당자인 입법권자는立法形成權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의무가 있다. 제품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사후적으로 제품에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있는 경우에 제품의 유통을 금지시키거나 제조·판매자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조치를

1) 洪天龍, 消費者의 安全, 慶南法學, 제5집, 경남대학교법학연구소, 1989, 120면이하 참조.

강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방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事後的 方法으로 이미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를 填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뿐이고, 事前的 · 豫防的 役割은 수행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보호를 제품의 안전성에 중점을 두어 사전적 · 예방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법의 보충적 개정이나 제품안전법의 제정이 요망된다.

국제간의 교역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제품의 국내유입시 안전기준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 국제간의 무역마찰로 이어 질 수 있다. 이러한 국제간의 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법으로 제품의 안전성기준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제품안전에 관한 일반법으로 製品安全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제품이 유럽연합으로 진출하기 위하여는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안전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품의 안전수준을 규정하는 법률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증대시켜 외국에 한국제품이 진출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소비자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법률의 개선방안은 개별제품의 안전성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법률에 대하여 일반법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개별법이 적용될 수 없는 부분과 관련된다. 또한 일반법으로 제품안전에 관한 법률은 입법학적으로 법체계상으로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안전상의 일반적인 내용을 단일법 속에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간소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2. 消費者保護法의 補充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소비자보호법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제2장), 사업자의 의무(제3장), 소비자단체(제4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제5장), 소비자보호원(제6장)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이 규정하고 많은 내용은 사실 소비자제품안전을 위한 제도가 추구하는 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특히 제3장 사업자의 의무분야는 소비자제품안전을 위한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1) 消費者保護를 위한 事業者 義務

소비자제품안전을 위하여 고려되는 법률은 제품의 제조·판매자에 대하여 안전한 제품만을 시장에 유통시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보호법에서 많은 부분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제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은 바로 소비자보호법이 어느 정도 제품안전성 확보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 보충되어야 하는 분야는 무엇인가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1) 危害防止基準의 遵守義務

소비자보호법 제3장은 사업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6조에 의한 사업자가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서는 안되는 위해방지 의무는 제6조제1항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① 물품 및 용역의 성분·함량·구조 등 그 중요한 사항, ②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③ 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다.

2) 表示基準의 遵守義務

사업자는 제16조제2항에 의한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이나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등으로 인하여 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관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① 상품명·용역·성분·재질·성능·규격·가격·용량·허용번호 및 용역의 내용, ② 물품을 제조·수입·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사업자명(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 ③ 사용방법, 사용 및 보관상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④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⑤ 표시의 크기·위치·방법, ⑥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3) 廣告基準의 遵守義務

사업자는 제16조제3항에 의한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의 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는 물품 또는 용역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광고의 내용과 방법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는 ① 用途·成分·性質·規格·原產地등의 廣告에 있어서 許可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廣告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廣告함에 있어서 특정내용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廣告함에 있어서 消費者가 誤認할 우려가 있는 特定用語 및 特定表現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廣告의 媒體 및 時間帶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4) 指定 · 告示된 行爲의 不作爲義務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제16조제4항에 의하여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고시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是正措置

재정경제부장관은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 제6조(위해의 방지), 제7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제8조(표시의 기준), 제9조(광고의 기준제정), 제10조(거래의 적정화)의 규정에 의하여 告示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제17조의2).

(3) 收去 · 破棄命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事業者가 物品 및 用役의 제공과 관련하여 消費者的 生命·身體 및 財產상의 안전에 현저한 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物品의 收去·破棄를 命하거나 製造·輸入·販賣禁止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를 명할 수 있고, 당해 물품 및 용역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수거·파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직접 수거하여 파기할 수 있다.

(4) 基準遵守命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6조제2항(표시기준) 및 제3항(광고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제조·수입·판매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를 명할 수 있다.

(5) 法違反事實의 公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범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3. 製造物責任法의 役割

製造物責任法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제조자·판매자·수입자 등 그 제품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²⁾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제조자의 배상책임과 관련된 私法分野이다. 이 법률의 주된 목적과 대상은 제조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이후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소비자보호피해의 사후적 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소비자제품안전을 위한 관련 법률은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事前的·豫防的으로 방지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 점에서 공법적인 분야에 속하는 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제품안전을 위한 관련 법률과는 차이가 있다. 물론 製造物責任法은 많은 부분에서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제조물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간소하게 하거나, 제품의 하자와 피해의 인과관계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피해의 입증책임을 제품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로 전환함으로써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조물의 안전성 확보는 제조물로 인한 피해발생시 제조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뿐이다. 제조물책임법의 입법목적은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와 기업의 경영방식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사고억제효과와 위해방지의 효과에 두고 있다. 그 결과 필연

2) 강창경, 제조물책임의 입법방향, 한국소비자보호원 7주년 개원기념 정책세미나자료, 7면.

적으로 기업은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의식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다 는 데에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적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으로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제조물책임법이 제품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부분은 제품의 제조자가 충분하게 제품의 위험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제한되고, 제조자가 예측하지 못한 제품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는 결코 방지될 수 없는 결합이 있다.³⁾ 이러한 흡결은 제조물책임법을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도 국민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한 적합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보완을 필요하게 한다.

製造物責任法과 제품안전을 위한 법률(소비자보호법이나 이른바 제품안전법)의 체제적인 관련성을 고찰할 필요성은 일반법으로서 제품안전을 위한 법률의 내용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분야는 제품의 회수(리콜)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러한 이른바 제품안전법은 제조물책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사실 사법분야에 속하고, 제품안전법은 공법적인 분야에 속한다. 그러나 제품의 안전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법영역은 상호 중첩하고 있다.

제품의 불안전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매년 수만명의 사망자와 수천만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이미 유럽연합이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화하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⁴⁾ 제조물책임법이 이러한 피해발생의 방지와 개별적 국민경제에 포함된 비용의 방지 그리고 관련된 당사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심리적 부담의 회피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적인 방안으로 도입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과 사전예방적인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는 소비자 제품안전법은 상호 어떠한 분야를 규율하여야 하는가? 특히 이미 제조물책임법이 입법화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소비자 제품안전법의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의 문제는 소비자 제품안전법의 입법화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3) 康昌景, 製造物責任의立法方向,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9면 참조.

4) 유럽연합에 의하면 1985년에 유럽연합내에서 3만명 이상의 사망자와 약 4천만의 상해자가 제조물의 하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EG-Kommission, Dok., KOM (84) 725, Bl.4..

II. 一般製品의 安全性確保

1. 製品安全性 確保의 一般法化

제품의 질에 대한 주요한 평가기준의 하나는 공산품의 안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제품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러한 기준에 합치하는 제품만을 시장에 유통하도록 하는 의무를 제품의 제조자나 생산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적 방안이 일반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각국의 방안이다. 소비자의 피해를 가능한 축소하기 위하여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시장에서 가능한 빨리 배제할 수 있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행하여져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공권력 행사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 실행되고 있는 여러 법률에서도 관련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즉,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食品衛生法, 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藥事法, 건축·건설공사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建設技術管理法, 항공기의 안전에 관하여는 航空法, 전기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電氣用品安全管理法 등이 제품안전법의 특별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소비자제품을 각각의 제품종류에 따라 특별법인 개별적 제품안전법으로 모든 공산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영향으로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는 공산품에 대하여 개별적 법률로 규제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 제품의 위험으로부터 무방비상태에 놓일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제품의 안전성을 최소한 추상적이라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一般法으로써 製品安全性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화학제품의 안전성, 의료기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은 현재 개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입법적인 공백을 제품안전법은 충당할 수 있다.

2. 製品安全을 위한 特別法

소비자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개별법은 食品衛生法, 藥事法,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 癡藥法, 大麻管理法, 毒物 및 劇物에 관한法律, 種苗管理法, 農藥管理法, 農產物檢查法, 畜產物衛生管理法, 電氣事業法, 電氣用品安全管理法, 電氣工事業法, 都市가스事業法, 高壓가스安全管理法, 液化石油가스의 安全 및 事業管理法, 自動車管理法, 遊船 및 渡船業法, 建築法, 品質經營促進法 등을 들 수 있다.

3. 内容

소비자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반법으로 도입이 요구되거나 현행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제품의 불안전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작용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제품안전에 관한 일반법의 작용은 생산자와 유통자에게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게 하는 직접적인 动因을 제공한다. 그리고 제품의 사용자에게 불가피한 제품의 위해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상기시켜 준다. 물론 제조물책임법도 제품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적 작용을 간접적으로 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리콜(회수제도)이나 사후적 경보와 같은 조치는 제품의 생산기업이 도산하여 없어지거나 외국제품인 경우에 국내시장에서 더 이상 유통되지 않거나 또는 위해방지조치를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 아무런 소비자보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규법만이 책임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위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품안전법은 점차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소비자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법률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의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지금보다 더 많이 행동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유통자가 제품의 위해방지에 충분하게 기여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청에 대하여 소비자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소비자에 대한 혜택으로는 무엇보다도 안전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경고, 불안전한 제품에 대한 회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청에 부여하는 것이다. 행정청에게는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조치를 취하게 하고 제품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권한은 앞으로 손해방지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소비자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관계 법률은 일반법으로서 기능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조항이 필요하다. 즉, 제품의 생산자는 안전한 제품만을 유통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에 처음 유통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그 제품의 생산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그 제품의 소비자는 일상적 또는 기대되는 사용기간 동안에 제품에서 발생하는 위해를 판단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의 소비자는 생산자가 제공한 정보로부터 위해를 인식하여 이에 대한 예방적 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제품의 유통은 생산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제품의 유통자에 대하여서도 안전한 제품만이 유통되는 데에 기여하게 할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청에게는 불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이러한 수단은 제품이 가지는 위해의 정도에 따라 강도를 달리할 수 있다. 행정청에게는 불안전한 제품의 유통을 일반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권한과 제품의 안전성을 위하여 요구되는 특정된 안전조치를 취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심사기간동안에 잠정적으로 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청에 부여되어야 한다.

소비자제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관계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는 외국의 입법을 참조하고자 한다. 소비자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의 입법례는 이미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다.⁵⁾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아직 소개가 되고 있지 않은 유럽연합과 독일의 소비자제품안전법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5) 이에 관하여 자세한 연구논문은 강창경, 소비자안전법 비교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20호, 1997/12, 106면이하; 李起翰, 미국의 FDA와 CPSC의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12; 제국의 상품안전확보대책에 관한 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5, 참조.

第3章 유럽聯合과 獨逸의 製品安全法

I. 유럽聯合의 製品安全에 관한 制度

1. 製品安全政策의 새로운 方案

유럽연합은 이미 1985년에 「製造物責任에 관한準則」⁶⁾을 제정하였고, 회원국도 자국법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품의 안전성 확보는 사후적인 제품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의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는 불충분하다는 데에 유럽연합위원회는 합의하였다. 이는 특히 1992년 말까지 유럽연합 시장의 통일을 위하여 유럽연합 위원회는 1982년 이래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관한 계획은 1985년 유럽공동체의 단일시장 완성을 위한 위원회의 백서⁷⁾에 명시되어 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이 백서의 권고에 따라 제품안전정책을 추진하였다. 유럽연합 개별 회원국의 안전법규와 기술법규는 상호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원국간의 상품유통을 위하여는 개별회원국에서 요구하는 안전요구를 충당하여야 하였다. 이와 같이 회원국간에 안전요구상 상이점은 결과적으로 유럽연합의 단일시장의 형성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그래서 유럽연합 위원회는 우선 유럽연합의 개별 회원국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된 안전법규, 기술규범 등과 같은 특별히 명백한 상거래의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위원회는 유럽연합 시장 내의 기술적 소비재에서 시장유통에 요구되는 요건에 관한 통일의 필요와 시민의 건강과 안전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요청간의 조정을 하여야 하였다. 이의 결과는 기술적 조화와 규범영역에서 새로운 방안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의 결정으로 1985년 5월 7일에 나타났다. 이 결정으로 유럽연합 위원회는 제품안전규범의 법적 형평에 관한 전통적인 방안을 근본적으로 포기하였다. 이것은 우선 자동차분야에서 나타났다.⁸⁾ 유럽연합은 바로 1985년 5월 7일 이사회의 결정으로 유

6) Produkthaftungsrichtlinie 85/374/EWG, ABIEG Nr.L 210/29 v.7.8.1985.

7) Weißbuch der Kommission an den Europäischen Rat Vollendung des Binnenmarktes, KOM (85) endg. v.14.6.1985.

8) 규율되는 제품군에 관하여는 Krämer, EWG-Verbraucherrecht, 1985, S.234 ff.; N.Reich, Förderung und Schutz diffuser Interessen durch die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1987, S.219 ff.

럽연합내에 적용되는 통일된 기술규격의 완전한 조화를 포기하였다. 이를 새로운 접근방식 또는 새로운 방안이라고 할 수 있고, 이로써 유럽연합 회원국은 기존의 규격을 상호인정하되 각 회원국별로 표준 또는 기준이 상이하여 교역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통일을 기한다는 것이다.⁹⁾ 통일을 기함에 있어 과거와 같이 기술적인 세부사항까지 규정하지는 않고 기본적인 기술요구만을 정하기로 유럽연합 이사회는 합의를 하였다. 기본적 기술요구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위원회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만 정하고, 세부적 기술적 사항은 민간표준기구에 위임하기로 결정하였다. 민간표준기구로는 유럽표준화위원회(CEN)¹⁰⁾와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CENELEC)¹¹⁾가 지정되었다. 이들 민간 기구는 유럽연합위원회의 준칙에 따라서 기본적 사항에 합치하는 규격을 제정한다.¹²⁾

새로운 방안은 소위 일종의 대강규정을 의미한다. 독일 제품안전법에 있어서 이에 관한 모범은 기기안전법 제3조제1항이다. 제품과 관련된 각각의 개별적인 준칙은 일반적인 안전의무를 요청하였다.¹³⁾ 이 의무는 준수되어야 하는 특정된 기술적 안전수준에 관한 요건에 의하여 내용적으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수준은 “基本的인 安全要求에 관한 새로운 概念”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안전요구는 각각의 개별준칙의 부속서에 가능한 모두 기재되어야 하고 자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기술적 특수성에 관한 작업은 유럽연합의 준칙과 그 부속서에 규정되지 않고, 산업 규범을 관할하는 위원회의 과제로 넘겨졌다. 지금까지의 기술규범에서와 같이 이

9) 이에 관하여는 이종영, 식품위생법 개선방안(II), 한국법제연구원, 1997, 145면 이하 참조.

10) 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

11) 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 Electrotechnique.

12) 제조업자들이 유럽표준화위원회와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가 제정한 규격을 충족하면 유럽연합의 준칙에서 규정한 기본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유럽표준화위원회와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가 제정한 규격과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방법으로 기본사항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제품의 판매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대량생산을 하는 대규모기업의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기본사항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 강제력을 가지는 규격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표준화위원회와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가 제정한 표준(규격)을 충족시킬 경우에 제품의 생산자는 자신의 제품에 소위 CE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마크가 있는 제품은 유럽연합내에서는 추가적 시험검사없이 유통이 가능하다(成克濟, 표준 및 검사제도, 대외경제연구원, 1992, 73면 참조).

13) 예를들면 1988년 8월 3일의 장난감에 관한 유럽연합준칙 제2조제1항이다(ABIEG v.16. 7.1988 Nr.L 187/3): “장난감은 일상적인 행위를 고려하여 특정되거나 예측될 수 있는 사용시에 이용자와 제3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하지 않을 경우에만 유통될 수 있다.”

러한 기술적 특수성은 법규적 특성은 없고, 비구속적인 권고이다.¹⁴⁾ 새로운 방안 (Neue Ansatz)은 대강입법에 대한 청구권이다. 그런데 이 대강입법은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품이 기본적인 안전요구에 합치하는가에 대한 여부를 승낙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여기서의 승낙은 제품의 안전성 인증을 의미한다.

개별적으로 모델-준칙(Model-“Richtlinie”)은 다음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경우에 중요한 안전요구와 합치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첫째, 당해 제품이 유럽연합 규격화기관인 유럽표준화위원회(CEN)와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CENELEC)의 합의된 기술규격에 합치하는 경우; 둘째, 유럽규격이 없는 경우에 당해 제품이 자국의 기술규격에 합치하는 경우; 셋째, 유럽연합규격과 국가규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제품의 안전요구 합치여부는 증명서 또는 검사표시에 의하여 증명하는 경우. 이러한 증명은 독일의 기술감독협회(Technische Überwachungsvereine: TÜV)와 같이 이를 위하여 허가된 국가기관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발급될 수 있다. 생산자 자신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은 소위 자가확인(Selbstbestätigung)이라고 한다. 안전요구의 합치에 합치는 당해 제품은 원칙적으로 유럽연합의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당해 제품이 유럽연합의 개별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안전요구와 합치를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입증이 있을 때까지 그 제품은 안전요구에 합치하는 것으로 인용할 의무가 있다.¹⁵⁾

유럽연합이 접근하고 있는 “새로운 방안은 결국 효율적이고 사후적 시장통제에 대한 요구를 불가피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취약점이 있다. 첫째, 기본적인 안전요구를 규율화하는 안전수준에 대한 각각의 조화된 기술규범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만 의도된 규범권유가 기능을 발할 수 있다. 이러한 한에서 유럽연합 위원회는 CEN과 CENELEC에 규격화 과제를 부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¹⁶⁾ 둘째, 기본적인 안전요구는 해당 기술규격이 없는 경우에도 제품의 안전요구 적합성에 대한 증명이 생산자와 검사 기관에 가능할 정도로 완전하고 자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셋째, 기본적 안전요구와 이 대한 제품의 합치증명은 기본적 안전성요구의 준수를 문서화하도록 하여

14) Modell-“Richtlinie”, Anh. II, Nr.C 136/3 참조.

15) Modell-“Richtlinie”, Anh. II, Nr.C 136/3.

16) 유럽연합의 규격화에 관하여는 Mohr, DIN-Mitteilung 1985, S.395; Joerges/Falke/Micklitz/Brüggemeier, Die Sicherheit von Konsumgütern und die Entwicklung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1988, S.361 ff.

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합의된 규격이 없는 경우에, 자국의 기술규격으로 충분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자국의 기술규격은 유럽연합 위원회에 통지되고, 목록에 기록되고 공포된다. 규격목록의 관리는 관할 상설협의회가 한다.¹⁷⁾ 이 상설협의회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이 대표자는 전문가 또는 기술상담자(컨설턴트)에 의하여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관할 상설협의회의장을 당해 유럽연합 위원회의 대표가 한다. 검사기관의 측면에서 기본적 안전요구는 인적·내용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당해 유럽연합 위원회에 이러한 개별적인 요구를 실현하는 기관을 지정한다. 생산자에 의한 자기증명의 측면에서 감독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안전목표의 달성을 동질성의 보장과 회원국의 인증절차의 타당성에 달려 있다. 넷째, 새로운 방안에 내포된 기타 주요한 약점은 안전요구와 합치성이 표시된 제품이 실적으로 안전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유럽연합 위원회에는 이에 대한 대응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회원국의 하나가 어떤 제품이 사람, 가축 또는 상품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 회원국은 해당제품을 회수하게 하거나 유통을 금지시키거나 또는 그 제품에 대한 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조치는 당해 제품이 기본적인 안전요구의 증명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¹⁸⁾ 모델준칙에 의하면 이와 관련된 회원국은 전통적인 조화방안에서 유래되고 있는 보호조항절차(Schutzklauselverfahren)를 따른다.¹⁹⁾ 바로 이 보호조항절차에 의하여 유럽연합법의 최고권은 제한되고, 회원국가들에게 유럽공동체조약(Vertrag zur Errichtung der Europäischen Wirtschaftsgemeinschaft: EWGV) 제36조의 의미에서 안전정책적 이익의 이의신청을 열어놓고 있다. 모델준칙에 규정된 보호조항절차로 어떤 제품의 기본적 안전요구에 추측된 합치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합치표시의 유효성이나 또는 기술규격의 질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회원국의 행정청에 부여되어 있다. 해당회원국은 자국이 행한 시장유통금지에 관하여 유럽연합 위원회에 보고한다. 해당국가의 조치가 기술규격의 부존재에 근거하는 경우에,

17) Modell-“Richtlinie”, Anh. II, Nr.C 136/8. 이는 이미 Die Richtlinie über ein Informationsvorhaben auf dem Gebiet der Normen und technischen Vorschriften v.28.3.1983, ABIEG Nr.L 109 v.26.4.1983.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Joerges/Falke/Micklitz/Brüggemeier, aaO., S.362 ff.

18) Modell-“Richtlinie”, Anh. II, Nr.C 136/6. 또한 장난감준칙 제7조제1항, ABIEG v.16. 7.1988, Nr.L 187/3 참조.

19) Krämer, aaO., S.220 ff.

유럽연합 위원회는 분쟁해결을 상설협의회에 넘긴다. 상설협의회의 의견에 근거하여 유럽연합 위원회는 공포된 규격목록에서 규격을 삭제하거나 또는 회원국에 합치된 추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정보를 줄 수 있다. 해당회원국은 유럽공동체조약(EWGV) 제173조에 의하여 위원회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정에 대하여 조치를 할 수 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해당회원국과 협의를 하고, 상설 협의회의 의견표명후 회원국의 조치가 올바르다는 결과에 도달하면, 기타 회원국에 해당제품의 유통을 동시에 금지시킬 의무가 위원회에 있다는 것을 주지시킨다.²⁰⁾ 유럽연합 위원회는 조정된 조치를 다른 회원국가의 행정청이 관철하도록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를 위한 유럽공동체법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합치성표시가 있는 위험제품에 대한 사후적 시장통제를 위하여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모델준칙에 근거하여 제정된 개별제품에 대한 개별준칙을 만들었다.²¹⁾

2. 製品許可統制, 事後市場統制와 製造物責任

제품에 대한 책임법적·안전법적인 요소의 측면에서 사후시장통제시에 존재하는 규율공백은 유럽연합으로 하여금 효율적이고 반응적 작동장치의 도입을 하도록 압력을 하였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이러한 현상에 기초하여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공동체전체에 적용되는 절차의 도입을 위한 준칙이나 명령을 제정하였다.²²⁾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유럽공동체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시장유입의 요건을 규율하는 모델준칙과 이에 근거하는 제품과 관련된 개별준칙이다. 둘째, 유럽연합전체에 동일한 책임법적인 최소한의 표준을 도입하는 것이다. 셋째, 특히 긴급한 경우에 유럽연합 전체에 통일적으로 위험제품의 시장유통금지(Vermarktungsverbote)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적

20) Modell-“Richtlinie”, Anh. II, Nr.C 136/7.

21) 이에 관한 사례로는 간단한 인쇄용기에 관한 준칙 (ABIEG v.8.8.1987 Nr.L 220/48) 과 장난감준칙(ABIEG v.16.7.1988 Nr.L 187/1)을 들 수 있다.

22) 유럽연합에 의한 기본적 안전성요구의 제정에 대한 정당성문제가 중요한 법적인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왜냐하면 규격과 표준은 사실상 일종의 규범이고 이는 법률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수행한다. 법률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규범을 제정하는 기관은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유럽표준화위원회와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에는 환경보호단체와 소비자보호단체는 참여하나 이것으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민주적 정당을 가진 기구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절차적인 측면에서 유럽연합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준칙내용과 기준의 합치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공고에 의하여 기준을 수용한다(이에 관하여는 이종영, 전계서, 148면 참조).

제품안전준칙이다. 즉, 제품안전법의 구조적인 3개의 기둥은 예방적인 장치인 제품허가통제, 사후적인 통제인 제품의 시장유통금지, 그리고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법적인 보장²³⁾이다. 제품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이러한 3가지의 필수적인 요소는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제도로 완성되었다.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3 가지의 제도적 장치는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도 도입되었다.²⁴⁾

3. 製品安全準則

(1) 概要

유럽연합은 1992년 6월 29일 유럽연합이사회 준칙 92/59/EWG으로 일반적 제품안전에 관하여 결정하였다. 이러한 준칙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유럽연합은 연합내의 시장의 단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이었다. 유럽연합의 시장은 국경없는 하나의 공간을 창출하여 상품, 노동, 서비스 그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할 목적으로 단일시장내에서 규율될 수 있는 통일된 규범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은 1985년부터 제품안전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여 회원국의 법률을 조사한 다음, 제조사와 판매자 그리고 수입업자에 대하여 안전한 제품만을 제조하여 유통시킬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1987년 1월 유럽연합이사회의 결의로 승인되었다. 구체적인 준칙안은 1989년 4월 27일 유럽연합 위원회에 제시되어, 몇번의 검토를 거친후 1992년 6월 29일부터 효력을 발하게 되었다.

다수의 회원국은 이미 제품안전에 관한 법규정이 있었다. 이들 제품안전법은 경제주체에게 안전한 제품만을 유통시킬 일반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들 법규정이 요구하는 안전성수준은 유럽연합의 회원국간에는 서로 상이하였다. 안전요구에 대한 법규정과 이러한 법규정이 없는 회원국간의 제품의 안전수준의 상이점은 결국 유럽연합 내의 상거래를 방해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제품과 장래 개발되는 제품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준칙을

23) 제품의 책임법적인 장치는 단순히 민사상의 제조물책임을 넘어서 형사법적일 수도 있다.

24) 이에 관하여는 Berichterstattung für die USA, Großbritannien, Frankreich und Die BRD, in: Joeges/Falke/Micklitz/Brüggemeier, aaO., S.62 ff.

제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사람과 건강에 대한 보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법적 규율이 필요하였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이 각각의 법규를 제정하는 데에는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하여 유럽연합은 포괄적인 수평적 대강법규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조약 제100a조제3항에 의하여 요구된 안전과 인간의 건강에 대한 높은 수준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은 현재 또는 미래의 특별한 법규정상 공백을 메울 대강규정이 필요하였다. 소비자를 위하여 특정되거나 또는 소비자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유럽연합 전체에서 일반적인 안전요구를 만들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특별히 사용된 제품은 그 성질상 규율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였다. 즉, 제품생산시설물, 투자재 그리고 직업상 이용만을 위하여 특정된 제품은 이 준칙과 관련이 없다. 이 준칙의 규정은 유럽연합규율의 영역에서 관련된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유럽연합의 준칙은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이 모든 유럽연합회원국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산자, 판매자 그리고 회원국가의 의무를 규정하여야 하고, 회원국과 유럽연합 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하여야 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준칙은 생산자, 판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회원국가에만 적용된다.²⁵⁾ 그러나 유럽연합의 회원국가는 이 준칙 제17조에 의하여 1994년 6월 29일까지 이 준칙에 따르기 위하여, 즉 제품안전이 유럽연합의 준칙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국의 국내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률과 행정규칙을 제정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완전한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 특별 공동체법규에 새로운 내용을 목적으로 통과되는 이러한 요구가 제품의 안전성 측면에서 확정되면, 경제주체에게 이 규정에 속하는 제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기타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특수한 유럽공동체규정과 관련된 제품의 안전이나 위험범위의 특정된 관점만 고려되면, 경제주체의 의무는 이 규정만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일반적 안전요구의 준수는 경제주체의 의무이고, 이러한 의무는 소비자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품의 특별한 특성에 합치하는 적합한 조치를 하

25) EuGH, NJW 1994, 2473 = JZ 1995, 149; NJW 1996, 1401 = EuZW 1996, 236 = ZIP 1996, 870; 제조물책임에 관한 유럽연합 준칙에 관하여는 H.J.Kullmann, Handbuch Produzentenhaftung, Kennzahl 3601, S.6 f.

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비로소 소비자는 이러한 그 제품의 위험에 대한 통지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의 준칙에 규정된 규정을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3가지 의무(제3조제1항과 제2항)
 -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시킬 의무
 - 소비자에 필요한 제품정보의 제공의무.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에 주의사항을 표시할 의무
 - 제품관찰의무
- 판매자는 일반적 안전의무의 준수에 기여하기 위한 주의의무(제3조제3항)²⁶⁾
- 회원국가의 의무
 - 통제행정청의 설치의무와 이 준칙상 적합한 조치를 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행정청에 보장할 의무(제5조제2항)
 -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제6조)
 - 제품의 유통 후에도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 모든 관계자로부터 모든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기 위하여
 - 제품의 유통시에 제품을 안전하게 제조하고 제품위험에 대한 적절한 경고 표시를하도록 하기 위하여
 - 제품의 위험에 폭로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적합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그리고 경고에 의하여 이 위험함을 암시받도록 하기 위하여
 -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하고 일치하는 징표가 있는 경우에,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에 해당제품과 동일한 제품종류를 공급하거나,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 위험한 것으로 증명된 제품과 동일종류 제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금지명령의 준수를 위한 필요한 추가보완조치를 확정하기 위하여
 - 이미 시장에 유통중인 제품과 동일종류 제품의 회수와 비상시에 적절한 조건하에 그 폐기를 효과적이고 즉각적으로 조직하기 위하여
 - 회원국은 제품이나 또는 동일종류 제품의 유통이 제한받거나 또는 회수되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유럽연합 위원회에 통보할 의무. 다만, 이 조치가 회원국의 영토에 제한되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제7조제1항).

26) 판매인에게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목적은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 감독에 생산자와 공동으로 기여하게 하는 데에 있다.

이것은 회원국이 즉각적인 조치를 하거나 또는 이 조치가 제품이나 동일종류 제품 시장유통이나 또는 판매를 자국의 영토내로 유입을 저지하거나 제한하거나 또는 특별한 조건하에 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왜냐하면 당해 제품이나 동일종류 제품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진지하고 직접적인 위험을 야기하기 때문이다(제8조).

- 하나의 회원국 이상에서 제품에서 야기되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진지하고 직접적인 위험을 인식하는 경우, 이 위험과 관련하여 취하여야 되는 조치에 대한 회원국간의 의견의 상이성이 존재하는 경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공동시장의 규범합치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험이 적절하고 유럽연합 전체에 적용가능한 조치로만 적합하게 극복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하고 잠정적인 조치를 할 유럽연합 위원회의 권한(제9조).

어떤 제품의 안전성 판단을 위한 척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확정될 수 있다. 유럽연합회원국은 제품의 안전성통제를 위한 적합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행정청을 신설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이미 유통되고 있는 위해한 제품의 수거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즉시 조직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이러한 적절한 조치에 속한다. 시장의 단일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유통을 제한하거나 또는 시장으로부터 퇴출명령을 받는 모든 조치에 관하여 통보를 받는다. 물론 이러한 조치가 해당 유럽연합회원국가의 고권에 제한된 지역적 영향을 가지는 사고에만 관련이 된다고 할지라도 통보를 받는다.

기존의 준칙은 기술규정과 규범분야의 정보절차에 관한 1983년 3월 28일의 유럽연합 준칙 83/189/EWG에 의한 공고절차 그리고 안전, 근로위생 그리고 근로현장에서 건강보호 분야에서 정보의 개선에 관한 1988년 2월 24일 유럽연합위원회의 결정 1988/383/EWG은 고려하지 않았다.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효과적인 감독은 제품안전의 비상사태에 관한 신속한 정보교환을 위한 유럽연합회원국과 유럽연합전체의 관청설립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1988년 12월 21일 소비재의 사용할 때 위해에 대한 정보의 신속한 교환에 관한 유럽연합의 체제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의 결정 89/45/EWG에 따른 절차가 위의 유럽연합 준칙속에 편입되어야 하고 이러한 결정이 폐지되어야 한다. 이외에 이러한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부적 절차는 제품안전에 관한 유럽연합준칙의 내

용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위원회의 지원으로 적합시킬 확신을 위원회에 수용하여야 한다.

이에 합치하는 등록절차는 이미 의약품(유럽연합준칙 75/319/EWG와 81/317/EWG), 가축전염병(준칙 82/894/EWG), 동물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제품(준칙 89/395/EWG) 그리고 방사선비상상황시에 신속한 정보교환에 관한 시스템의 형식(결정 87/600/Euroatom) 등이 있다.

우선 유럽연합회원국의 고권지역내에서 발견된 위험한 제품에 대한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특히 유럽연합조약에 따르면 유럽연합회원국의 사안이다. 그러므로 개별 회원국은 특정된 제품에 대하여 상이한 결정을 하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소비자보호시에 합당하지 않은 부조화로 될 수 있다. 이로써 유럽연합내의 거래관계가 방해받을 수 있다.

전체공동체와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과 관련되거나 또는 직접적인 미래와 관련될 수 있고 제품에서 나오는 안전성문제로 인하여 개별적인 제품 또는 개별적인 제품집단에 대한 특수한 유럽연합규범속에 규정된 절차의 범위내에서 중대한 제품안전성에 관한 비상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된 종류의 비상상태에 마주치기 위하여 전체적 공동체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써 유럽연합회원국에 대한 결정의 형식으로 제정할 수 있는 적합한 절차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경제주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고, 유럽연합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이후에 위원회는 유럽연합회원국의 대표자위원회의 지지로써 한시적인 조치만을 취할 수 있다. 회원국과의 협력으로써 87/373/EWG 결정의 절차Ⅲ 변형 b)에 의하여 규율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준칙은 하자있는 제품의 책임에 대한 회원국의 법규법과 책임규범의 조정에 관한 1985년 7월 25일의 유럽연합이사회의 준칙 85/374/EWG의 의미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유럽연합국가는 관할법원에 제품의 유통이 제한되거나 또는 시장으로부터의 퇴출을 명령받는 관할 행정청의 조치에 대한 적합한 권리부조가 도입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경험상 이러한 준칙의 적합성은 특히 적용범위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유럽연합영역에서 비상상태와 조치에 관한 규범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수입된 제품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국제적 의무와 합치하여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규정되어야 한다.

II. 獨逸의 製品安全法

1. 製品安全法의 制定背景

제품안전법상 3개의 축은 예방적인 장치인 製品許可統制, 事後的 統制인 製品의 市場流通禁止, 그리고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責任法의 保障이다.²⁷⁾ 물론 제조물책임법도 원칙적으로 제품의 피해를 명백히 하여 생산자와 판매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어느 정도까지는 제품안전의 사전예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점은 부인될 수 없다.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독일은 민법상의 不法行爲責任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제조물로 인한 피해분쟁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그러나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과 제조물책임법의 중점은 제품의 생산자와 판매인에 대한 사후적인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나, 사전예방적인 제품의 안전성확보에 직접적인 기여를 위하여는 또 다른 제도가 필요하였다. 여기서는 제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전통적인 방법,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품안전성확보 그리고 제품안전법의 도입에 관하여 간단하게 기술한다.

2. 民法上의 不法行爲責任

제조물책임법²⁸⁾은 전통적으로 엄격하게 분류된 최소한 3개의 법영역이 상호 중첩하고 있는 분야이다. 즉, 契約法(Vertragsrecht), 不法行爲法(Deliktsrecht) 그리고 危險責任法(Gefährdungshaftungsrecht)이 여기서 상호 중첩하고 있다. 더욱이 이 3개의 법영역은 동태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는 점은 제조물책임법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엄격한 구분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제조물책임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으로 다루어 왔다. 독일 민법 제823조에 기초하는 불법행위책임이 제조물책임의 중요한 법률적 근거로 되어 왔다. 이에 의하면 과실의 근거가 되는 주의의무는 매우 고도화·객관화되어 있으며, 시장에 유통한 후의 제품에 대하여서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위험을 경고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다. 1968년 다페스트

27) 이에 관하여는 G. Brüggemeier, Produkthaftung und Produktsicherheit, ZHR 152 (1988), S.511 ff. 참조.

28) 전통적으로 제조물책임의 개념은 위험책임으로 사용되었다.

사건 이후로 피고의 과실은 추정되고, 원고에게는 제품의 결함,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만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원고의 부담은 경감되어 있었다.²⁹⁾ 사실 불법행위법(Deliktsrecht)은 특정된 기준의 권리와 법익에 대한 완전성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손해배상조치는 불법없는 기준의 상태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불법행위법이 적용되는 분야는 사고법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로부터 완전성보호는 오래전부터 계약관계의 내·외에서 계약법적으로 그리고 준계약법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반대로 증대하는 계약상 이행보호가 불법행위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위험책임법은 변화된 조건하에서 구공동체법상 인과책임의 재도입을 의미한다. 19세기의 사법상 손해배상법에 있었던 Culpa-독트린이 실행된 이후로 위험책임은 산업사회의 새로운 기술위험에 대한 변형된 인과책임의 예외적 규정으로 등장하였다. 오늘날 위험책임은 危險社會(Risikogesellschaft)의 대표적 배상법으로 효력을 발할 수 있다.

3. 製造物責任法의 制定

(1) 전통적 법리의 흥결

계약상·불법행위상·위험책임법상 손해배상법의 지배적인 기능은 전통적으로 귀속가능하게 발생한 손해의 조정에 있었다. 이러한 조정은 그 범위내에서 분야에 따라서 특수하고 각각에 상이하게 확정된다. 즉, 계약법상 적극적 또는 소극적 이익, 불법행위법에서 완전성이의 그리고 위험책임시에 양적인 책임최대치와 원칙적으로 인명피해와 물건피해에만 적용되는 질적인 배상은 각각에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미 1988년에 오스트리아 경제학자인 Mataja는 이러한 손해배상법의 보상법적인 축소를 비판하고 피해예방의 우월성을 강조하여 왔다.³⁰⁾ 즉, 세상의 어떠한 입법권자도 이미 발생한 피해를 제거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입법은 손해위험과 관련하여 2개의 목적만 추구할 수 있다. 즉, 하나는 가능한 한 예방적 입법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피해를 정의에 대한 요구와 국민경제적 이익에 따라 가장 적합한 부담자인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다.

29) 외국의 상품안전확보대책에 관한 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국, 1997/5, 56면 이하 참조.

30) G.Brüggemeier, Produkthaftung und Produktsichheit, ZHR 152(1988), S.511 ff.(514); V.Mataja, Das Recht des Schadenersatzes vom Standpunkt der Nationalökonomie, 1988, S.19 제인용.

(2) 피해예방

피해예방은 법학의 희망적인 요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보지 못하여 왔다. 미국³¹⁾에서는 1960년대에 독일³²⁾에서는 1970년대에 손해배상법적 논의에서 예방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위한 법의 경제적 분석을 위한 동기가 필요하였다. 오늘날 책임법은 위화력에 의한 피해예방적 기능과 구체적 경우에 책임자에 의한 피해조정의 실행기능을 수행한다. 즉, 책임법은 피해발생의 방지를 위한 행위조정의 목적을 추구한다. 책임법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무의 요건, 배상되어야 하는 손해의 범위, 배상권자의 범위 등등은 책임법의 목적인 피해 발생의 예방으로 방향설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私法에 대한 경제적 분석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피해방지의 노력을 하게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사법의 경제적 분석은 피해최적화의 범주(Kategorie der Schadenoptimierung)에 중점을 두고 있다.³³⁾ 그러므로 특정된 피해를 회피하고, 다른 특정된 피해는 허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피해방지비용과 피해발생개연성이 기대된 피해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 피해회피가 기대될 수 있다. 피해회피비용과 1차적, 2차적 그리고 3차적 비용이 최소화되는 경우에 최적화는 달성된다. 잠재적 위험부담자에 피해회피를 유도하는 방안은 불법행위적 과실책임과 명백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회적인 피해최적화의 추구를 하는 방안은 계약상·불법행위상의 민사책임으로 넘어갈 수 있다. 계약법에서 손해배상의무 또는 계약별은 합법적인 계약이행을 위한 요소이다. 효율적 계약파기에 관한 방안은 어려움없이 일반적 이행장애법의 도그마로 통합될 수 있다. 불법행위법은 그 전부터 사법의 경제적 분석방안의 중요한 적용분야였다. 이에 대하여 위험책임은 행위유도에 의한 피해예방의 기능적 정향을 거부하는 것같이 보인다. 위험책임이 규범적으로 변경된 인과책임을 내용으로 한다면, 인식불가능한 피해발생과 적절한 예방비용에도 불구하고

31) 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 3 J.Law & Economics 1(1960); Calabresi, The Costs of Accidents, 1970; R.-A. Posner, Economic Analysis of Law, 1973 참조.

32) Trimarchi, ZHR 136 (1972), S.118; N.Horn, AcP 176 (1976), S.307; H.D. Assmann/C. Kirchner/E. Schanze(Hrsg.), Ökonomische Analyse des Rechts, 1978; Schäfer/Ott, Lehrbuch der ökonomischen Analyse des Zivilrechts, 1986; Behrens, Die ökonomischen Grundlagen des Rechts, 1985; Adams, Ökonomische Analyse der Gefährdung- und Verschuldenshaftung, 1985 참조.

33) Schäfer/Otto, aaO., S.85 ff.

회피불가능한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도 포함한다. 경제적 분석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행위유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수준의 확정이라고 강조함으로써 과실책임과 질적인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3)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1) 유럽연합준칙과 독일법으로 전환

1985년 유럽연합의 「제조물책임준칙」의 제정으로 독일에서는 1989년 12월 1일에 「제조물책임법」이 성립되어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제조물책임준칙」³⁴⁾은 2가지를 명확하게 하였다. 하나는 전체산업국가에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문제에 관한 법정책적 규율의 필요성이고, 다른 하나는 서유럽에서 제조물책임의 조정이 경쟁법적인 의미이다. 유럽연합준칙이 회원국의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 대상제품의 범위에 제1차적 농산물을 포함되지 않고, 둘째, 개발위험의 항변은 인정되며, 셋째, 1억6000만마르크의 책임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제조물책임준칙은 제품과 관련된 개별준칙과는 달리 제품안전법의 제조물책임법적 분야에 완전한 조화를 의도하지는 않았다. 이 규율은 복잡하나 배타적이지는 않다. 부분적으로 이미 회원국의 개별법률에 존재하는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그리고 위험책임외에 유럽연합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있다.³⁵⁾ 유럽연합의 규율은 기존의 범질서속으로 전환의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복잡성은 동시에 좁은 범위에서 나마 유럽연합 준칙의 차단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준칙의 적용분야에서 제조물책임과 관련되는 한에서 국가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은 지금까지와 같이 회원국의 자치적인 법발전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법발전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유럽연합준칙의 복잡성 때문에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주장되어 온 불변화이론과 합치할 수 없었다. 불변화이론에 의하면 일반적 제조물책임법은 1985년 7월의 수준으로 동결되어야 한다.³⁶⁾ 유럽연합준칙의 차단작용은 준칙의 제정권자가 이미 의도하고

34) Richtlinie des Rates vom 25.7.1985 zur Angleichung der Rechts- und Verwaltungsvorschriften der Mitgliedstaaten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85/374/EWG).

35)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26.Deutsche Verkehrsgerichtstag 1988 in seinen Empfehlungen zur Produkthaftung für Kraftfahrzeuge.

있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는 유럽연합준칙이 의미하는 제품과 관련되는 경우에 유럽연합준칙에서 규정된 책임수준으로 후퇴하는 위험책임에 관한 특별규율이 회원국가에 의하여 채택되지 않아야 한다.³⁷⁾ 특히 이러한 것은 식품과 화장품에서 중요한 의미를 획득하였다.³⁸⁾ 이러한 한에서 독일에서 인간에게 사용하도록 제조된 완성약품에 관한 醫藥品法 제84조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의 적용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85년에 이미 존재하고 유럽연합준칙의 형량이 유 13개에서 유보되어 있는 “특별책임원칙(besondere Haftungsregel)”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독일의 연방입법권자가 독일 제조물책임법 제13조에 규정된 청구권경합 대신에 제15조제1항에 법률경합, 즉 의약품법의 배타성을 규정하는 경우에 유럽연합준칙에 대한 위반여부였다. 결과적으로 의약품법 제88조제1문제1호에 따른 개별피해사례의 경우에 책임상한액 50만마르크는 유럽연합준칙에 따른 책임액을 배제한다.

2) 제조물책임법의 영향

제조물책임의 제정은 법적인 측면과 제품안전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제조자가 무과실인 것을 증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인하여 제품에 결함이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생산자측에서 승소를 할 수 있는 전망은 거의 없게 되었다. 사실 손해배상청구권을 절차법적 실행이라는 측면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독일 연방법원 제6 민사부의 판례는 이를 명확히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설에서는 1968년의 닉페스트-판결³⁹⁾이 아니라, 1981년의 사과병-판결⁴⁰⁾이 제조물책임에 증거법적인 혁명을 가져왔다고 주장되었다. 이로써 과실책임에 있어서 내부적 주의의무와 외부적 주의

36) Bourgoignie, 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Verbraucherrecht (EuZVR) 1986, S.4 ff.(13).

37) 이에 관하여는 N.Reich, Schutzpolitik i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im Spannungsfeld von Rechtsschutznormen und institutioneller Integration, 1988, 참조.

38) 식품에 관하여는 Ch.Hammerl, Das Produktsicherheitsgesetz im Bereich des Lebensmittelrechts, ZLR 1997, S.611 ff. 참조.

39) BGHE 51, 91.

40) BGHE 80, 186.

의무의 무의미한 구분은 중단되었다. 독일 연방법원은 1981년 입증책임의 전환은 외부적 주의의무의 침해에 대하여서도 효력을 발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이러한 것은 항상 생산하자(Fabrikationsfehler), 설계결함, 지시하자 그리고 조직자의 경우에서 나타나고 있다.⁴¹⁾ 그러나 생산자가 필요한 외부적 주의의무의 준수를 입증할 수 없으면, 내부적 주의의무의 위반은 추정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산자는 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에 기준하여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독일의 제조물책임법은 미국이나 영국의 제조물책임법과 같이 불법행위적 제품관찰의무와 반응의무를 규정하였다. 반응의무는 극단적인 경우에 동일제품의 전체가 회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규범의 내용에 규정되었다. 즉, 생산자의 반응의무, 특히 제품회수의무(리콜의무)는 법의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인 실행될 수 있다. 이 때에 발생하는 문제는 누가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는가이다. 독일의 제조물책임법은 불법행위적 제조물관찰의무와 반응의무는 원칙적으로 개발하자에 제한하였다. 독일 연방법원의 판례는 생산자의 책임을 제품판매 이후에 까지 확장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특별한 판례를 차치하더라도 생산하자, 설계결함, 지시하자에 생산자의 반응의무가 공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설의 태도였다.⁴²⁾ 그러나 생산자가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발생의 경우에 그의 책임은 인정된다. 제품관찰의무와 반응의무는 도그마-구조적으로 개발위험시에 불법행위적 책임이유에 기여한다. 이 의무는 손해배상의 이행의무에 필요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보다 좁은 책임법상 의무와 독립하여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격심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문제는 생산자의 일반적 반응의무가 위험원을 처음으로 알리고 난 이후,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제품에도 존재하는가였다. 독일의 학설은 독일 민법 제1004조에 따른 예방적 부작위청구권, 불공정거래법 제1조에 의한 부작위청구권 또는 민법 제823조제1항에 직접적으로 근거하는 부작위청구권에 관한 잠재적 위협피해자와 해당 이익단체의 반응청구권의 도입을 고려하였다.⁴³⁾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Schwenzer는 반대하였다. 그는 이러한 해결방

41) Brüggemeier, Die Gefahrdungshaftungs der Produzenten nach der EG-Richtlinie – ein Fortschritt der Rechtsentwicklung?, in: Schäfer/Ott(Hrsg.), Ökonomische Analyse des Zivilrechts, 1989, S.228 ff. 참조.

42) Brüggemeier, ZHR 152 (1988), S.524 f.

43) Falke, Praxis der Nachmarktkontrolle technischer Gebrauchsgüter in der BRD,

안의 구조적인 모순성과 내재적 한계를 명백히 하였다. Schwenzer는 회피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적·재산적으로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는 생산자에게 경고의무나 리콜의무의 형식인 불법행위적 위험제거의무가 발생한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생산자의 리콜청구권은 예방적으로 실행가능한 불법행위이며 독자적인 청구권이다. 이러한 청구권으로 생산자에 의한 보수형식으로 또는 판매대금을 환불하는 물건회수의 방식이 있다. 이 청구권은 생산하자와 구조결함의 경우에 제품의 회수에 속한다. 제품구매자로 인적인 제한과 구매물건의 보수나 환수로 하는 물적인 제한은 Schwenzer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는 불법행위적 제품회수에 독일 민법상의 보장법적 직접행위의 도입을 분명하게 하였다.

4. 製品安全法의 導入

(1) 경 과

독일에서 이미 소비자용제품의 안전확보에 관한 주요한 법률로 1968년에 제정되고 1979년에 개정된 기기안전법(Gerätersicherheitsgesetz)이 있었다. 이 법률의 규율대상은 가정용제품, 완구, 스포츠용품, 원예용품, 조명·냉난방장치, 상업용기기 등 광범위한 제품이 포함되었다. 이 법률에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모든 위험을 방지하도록 일반에게 인정된 기술수준에 따라 제조되고 있는 경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동등한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술수준으로는 독일규격 협회(Deutsche Institut für Normung: DIN)의 규격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독일 제품안전법(Gesetz zur Regelung der Sicherheitsanforderungen an Produkte und zum Schutz der CE-Kennzeichnung: Produktsicherheitsgesetz: ProdSG)의 목적은 일반적 제품안전에 관한 1992년 6월 29일 유럽공동체이사회 준칙(92/59/EWG)과 1993년 7월 22일 유럽공동체이사회 결정(93/465/EGW)을 독일법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다.⁴⁴⁾ 그러므로 이 법률의 목적

in: Micklitz (Hrsg.), Nachmarktkontrolle, Bremen 1988, S.21 ff.

44) 독일은 유럽연합의 제품안전준칙에 대하여 유럽연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제기 이유는 유럽연합 위원회가 회원국에 특정된 방지조치의 의무를 특정된 제품에 대하여 하도록 한 결정은 무효라는 것이었다(ABIEG v.5.11.1992 - Nr.C 288, S.10). 유럽연합 법원은 1994년 8월 9일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을 기각하였다(EuZW 1994, 627 = EWS

과 내용은 많은 부분에서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 위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유럽연합 준칙의 목적은 소비자를 위하여 특정되었거나 또는 소비자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유럽연합 전체로 일반적인 안전요구를 수립하는 데에 있다. 유럽연합 전체에 적용되는 안전요구의 필요성은 회원국가에 존재하고 있는 개별 법규정과 이러한 법규정이 없는 다른 회원국가에 안전수준이 서로 달라서, 유럽연합내의 상거래를 저해하고 경쟁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93년 6월 22일 유럽공동체이사회의 모듈결정(Modul-Beschluß)⁴⁵⁾은 CE-표시의 도입과 사용 그리고 남용적 사용에 대한 조치에 관한 규율과 관련된다.

독일은 유럽연합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기각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유럽연합의 준칙을 자국의 법률로 전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에 1995년 8월 11일 제품안전법 초안을 제출하였다.⁴⁶⁾ 연방참사원의 관할 위원회인 경제위원회, 노동과 사회정책 위원회 그리고 법사위원회가 이 초안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연방참사원은 1995년 9월 22일 경제위원회에서 7 대 5로 입장장을 정하여 연방정부에게 이 법률초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연방참사원의 입장은 이 법률은 이중적인 규율이고, 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적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연방참사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특별법, 즉 약품법, 유전공학법, 건축물법, 의료제품법, 에너지법, 항공법, 식품법, 가금류위생법, 화학법, 농약법, 기기안전법, 도로교통법, 무기법 그리고 폭발물법 등에 보충되면 된다는 견해였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연방참사원의 제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연방참사원에 의하여 언급된 16개의 법률은 제품안전법을 초안에 의할 때에 이미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안 제2조제4항에 의하면 제품안전법은 우선적인 효력을 가지는 법률이 아니라 이러한 특별법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특별법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적용상 우선순위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박하였다.⁴⁷⁾ 연방정부의 중요한 논거는 기존의 특별법은 소비자에게 도

1994, 312). 유럽연합 법원은 준칙 제9조에 규정된 제품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잠정조치를 할 의무를 회원국에 부여하는 유럽연합 위원회의 권한은 유럽공동체조약 제100a조제1항에 의하여 합당하고 이 권한은 또한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5) ABIEG Nr.L.220 S.23.

46) BR-Drs. 457/95 v.11.8.1995.

47) BT-Drs. 13/3130 v.29.11.1995, S.18.

달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제품안전준칙은 모든 소비자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방정부의 의도에 따르면 제품안전법은 특별법에 의하여 폐악되지 않는 소비자제품에 적용되고 특별법에 비하여 적용상 후순위에 있는 보충적 규율로서 “一般的 包括法(allgemeines Auffanggesetz)”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방수상은 연방의회에 1995년 11월 29일의 서면으로 연방정부의 원안을 연방참사원의 입장에 대한 연방정부의 반대의견과 입법이유를 첨부하여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률안은 1996년 2월 8일 연방의회에 실시된 제1독회에서 논의없이 연방의회의 담당 위원회에 이송되었다.

이 법률안의 핵심은 제품안전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제2절이다. 이 법률의 규정으로써 생산자와 상인에 의하여 유통되고, 개인 소비자에게 특정된 제품이 안전화되는 일반적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동시에 이 법률은 유럽연합의 완전한 통합과정에서 조화를 위한 장치이다. 이 법률로써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에서 조화되는 소비자가 가지는 제품의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와 이에 합치하는 생산자와 상인의 최소한의 의무가 확정되었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시장에서 비교 가능한 생산조건과 운영조건의 만드는 데에 기여함으로써 경쟁조건을 동일하게 한다. 동시에 집행시에 행정청에 의한 감독과 행정청과 긴밀한 공동작업에 의하여 집행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이외에 제품안전법의 일반적 · 공법적 장치는 제품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사법상의 보호를 보충한다. 특정된 제품과 제품집단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품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공법상의 특별규정은 제품안전법과 양립하여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특별규정은 일반제품안전에 원칙적인 우위를 가지는 특별규정이다. 위험을 수반하는 거의 모든 제품을 규율하는 기존의 포괄적인 규율서측면에서 볼 때에 대부분의 제품분야는 제품안전법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은 최소한 지침의 실정법적인 요구에 합치하고 대부분에서 이를 능가한다. 법적인 안전성의 이유에서 이 법률안은 제품안전법의 요구와 기존의 전문법, 특히 실질적 요구를 명백히 구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품안전법은 지금까지 특별법적인 요구하에 있지 않았던 제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에 영향을 준다. 이에 의하여 기존의 규율간에 존재한 입법의 공백을 메워서 제품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반적 법률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많은 제품에 대한 독일의 안전법에서 경고와 리콜에 대한 명백한 법적인 근거

가 없었기 때문에, 제품안전법은 이러한 제품에 대한 공법상의 명령권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외의 예외적인 분야에서도 이러한 권한으로 소급적 비난으로 제품안전법은 실제적으로 보다 넓은 적용범위를 가지게 되었다. 경고와 리콜에 대한 가능한 통일적 규율은 안전하고 예측가능한 법적용에 기여한다. 연방법과 주법에서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근거는 분산성과 불확정성으로 인하여 충분하지 못하다.

(2) 内容

독일 제품안전법의 핵심은 제4조제1항과 동조제2항이다. 제4조제1항은 일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製品生産者의 義務이다. 이에 의하면 제품생산자는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다. 제4조제2항은 소비자가 통상적 또는 기대될 수 있는 사용기간 동안에 제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고 위험의 사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품이 시장에 처음 유통될 때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생산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판매자도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되게 하는 데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도 안전하지 못한 제품이 생산되고 판매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하여 단계화된 법적 장치를 부여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관할 행정청은 안전하지 못한 제품의 유통을 일반적으로 금지할 권한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의 안전이 특정된 조치에 의하여 보장될 때에 비로소 유통시킬 명령권이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청은 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협의점이 있는 경우에 적합한 주의경고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청은 제품의 안전검사에 필요한 기간동안에 제품의 유통을 시키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은 제품에 기인하는 위험에 폭로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적합한 시기에 적절한 형식으로 특히 생산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알리게 할 수 있다. 나아가서 행정청은 위험이 급박하여 생산자에 의한 제품의 위험경고로 효과적인 조치가 될 수 없는 경우에 스스로 일반대중에 대하여 위험경고를 할 수 있다.

제9조에 규정된 행정청의 권한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즉, 관할 행정청은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안전하지 못한 경우에 리콜을 명령하고 안전확보를 할 수 있다. 소비자에 대한 위험이 다른 방법으로는 제거될 수 없는 경우에 생산자나 판매자가 효과적인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할 행정청은 그 제품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생산자, 판매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은 당행 행정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관할 행정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당해 행정청에 의한 조치를 실행할 의무를 진다. 기타 관할 행정청의 담당 공무원은 제품생산의 공간이나 장소, 유통목적으로 제품이 저장되거나 전시된 공간이나 장소에 출입할 권리를 가지고, 제품을 검열하고 검사할 권리를 가진다.

안전하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로써 다른 한편으로 제품안전법규가 유럽연합시장내에서 자유로운 제품판매의 제한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위원회와 최종적으로 다른 회원국에게 정보시스템의 설치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외에 CE-표시의 부적법한 사용이 규범과 합치하지 않은 분야에서 금지되고 이러한 금지에 대한 위반에는 과태료와 사법상의 책임이 부여된다. 연방,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제품안전법의 추가적 심사의무와 개입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로는 자세하게 확정될 수 없으나 일반제품에 대하여 커다란 영향이 없다. 왜냐하면 법률에서는 예방적 안전심사를 규정하지 않아서 이 법률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특별히 법률상 안전에 대한 요구를 부여받지 않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서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CE-표시의 허용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사용의 통제와 관련하여서도 행정청의 부담은 좁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하여서는 경쟁자, 경쟁협회에 관한 사법상의 규정도 그리고 시장에 의한 통제도 개방하였기 때문이다. 일차적 부담을 지는 행정청은 예측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된 관련자로써 주는 제품안전법의 집행을 관할하는 우선 확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가격에 대한 영향은 기대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의무를 지는 생산자와 상인은 이미 현재의 책임법에 근거하여 안전한 제품만을 시장에 유통시켜야 하고, 심사비에 의한 가능한 부담, 행정청에 의한 리콜조치 등등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한에서 일반적 가격수준, 특히 소비자가격수준에 대한 영향은 기대될 수 없다.

(3) 소비자의 혜택

사실 제조물책임법도 이미 제품의 피해에 대한 예방적인 작용을 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주된 작용은 손해배상의무에 있고, 손해배상을 하지 않기 위하여 제조물책임자가 노력한 결과 부차적으로 제품에 의한 피해가 예방될 수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은 생산자와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피해배상책임 때문에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의 질을 개선할려고 노력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피해의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과 민사상의 불법행위법은 회피될 수 없는 제품위험의 발생에 대하여 적합한 사용방법과 경고에 의하여 제품사용자를 보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 주의경고나 회수 등의 방법으로 제품이 유통된 이후에 비로소 제품위험이 소비자에게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제품의 생산자와 판매자가 하는 경우에 비로소 피해의 예방적인 효과는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생산기업이 해산되거나 청산되거나 하여 시장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시장으로부터 사라진 경우에 또는 위험방지조치를 할 수 있는 재정적인 가능성이 더 이상 없는 경우에 제조물책임법의 중요한 효과인 피해의 예방적 효과는 없어진다. 이러한 경우에 제품안전법만이 피해의 예방적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품안전법은 점점 더 그 의미가 증대하고 있다.⁴⁸⁾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소비자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제품안전에 대한 유럽연합 준칙을 독일법으로 전환함으로써 생산자만 지금보다 더 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도 생산자와 판매자 위험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기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안전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주의경고하고 회수를 명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암류하여 폐기처분할 수 있는 행정청의 권한은 소비자에 대한 중요한 보호장치이다. 이러한 행정청의 권한은 앞으로 독일에서 제품으로 인한 피해발생의 방지를 위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4) 執行機關

1) 정보수집행정

독일에서 제품안전성 확보에 책임이 있는 행정청은 연방의 경우에는 노동보건 사회부이다. 그러나 연방의 주무부서는 법률, 법규명령 그리고 지침을 제정하고, 집행은 원칙적으로 주의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담당한다. 그러나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제정한 법규를 단순히 집행하는 기관에 만족하지 않고 연방이 제정하는 법규가 적합한가에 대하여 연방참사원이나 연방의회를 통하여 통제하는 기능도 수행 한다. 제품으로 인한 가정내의 사고와 레즈용품으로 인한 사고조사시스템이 유럽 연합에 실시되고 있다.⁴⁹⁾ 이외에 연방노동부와 주정부의 공장검사부분을 관할하

48) Brüggemeier, ZHR, 152 (1988), S.511 (526).

49) 이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제외국의 상품안전확보대책에 관한 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는 행정청은 결합제품과 관련된 사고의 통지를 기록하는 시스템이 있다.

2) 집행권이 있는 주정부의 권한

주정부는 제품안전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공장출입권, 생산자와 수입업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제출요구권, 전문가에 제품검사의뢰 요구권 그리고 전람회에서의 제품 검사권 등을 가진다. 이러한 주정부의 권한은 이미 기기안전법(GSG)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기안전법은 제품의 회수에 관한 규정을 내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관할 행정청은 생산자와 수입업자에게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자발적인 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 첫째, 제품에서 나오는 위험이 긴급하고, 이것이 사용자의 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둘째, 그 위험이 사람의 건강과 관련되고, 셋째 제품에서 나오는 이 위험이 사용자가 처리할 수 없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청은 제품의 생산자와 수입업자에게 제품의 회수를 명령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스스로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여 그 비용을 생산자나 수입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집행을 담당하는 독일 행정청은 사실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담당하는 행정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력을 작업장에서 안전에 행정력이 집중되고, 제품의 안전성문제에는 5%정도의 행정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⁵⁰⁾ 이러한 노력도 대부분 박람회에서의 검사라는 형태를 취하고 그것도 눈으로 보는 것으로 실시하고 엄밀한 검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전람회의에서 실시는 부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소비자나 소비자단체, 주립 안전기술연구소에서 송부된 제품정보, 사고발생정보, 제품검사재단의 월간지(Stiftung Warentest)에 발표된 제품비교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행하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미 독일기술협회(TÜV)로부터 검사를 받아 GS마트를 획득한 제품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주의 집행기관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은 그 내용과 제조금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조치에 대하여 연방노동환경보호청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기기안전법의 내용은 주로 수입제품에 대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제품이 기기안전법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주의 통상산업감독청에 그를 통지하고 생산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는 주의 통상산업감독청이 한다.

소비자 안전국, 1997/5, 57면이하 참조.

50) 제외국의 상품안전확보대책에 관한 조사, 전계서, 59면 참조.

3) 제품안전관련된 주요기관

① 소비자단체 연합

소비자단체 연합(Arbeitsgemeinschaft der Verbraucherverbände: AgV)은 16개의 주에 있는 소비자센타를 포함하여 38개의 회원협회로 구성된 독일의 전국적인 통합조직이다. 주된 업무는 소비자운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이다. 설립의 목적은 입법이나 행정에 소비자이익을 촉진하고, 소비자에 대한 자문과 상담 그리고 정보제공활동을 하고, 소비자운동을 하는 회원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위한 제품의 정보제공활동에 기여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연합은 정보제공활동의 일환으로서 각종 출판물을 발행하고 있다.⁵¹⁾

② 제품검사재단

제품검사재단(Stiftung Warentest)은 독일 연방정부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이 재단은 소비자의 측면에서 시장에서 제품을 구입하여 재단연구소에서 제품검사를 하고 있다. 제품검사에는 제품의 사용편리성, 가격의 적정성, 환경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가 현명한 상품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검사의 발표는 이 재단에서 발행되는 잡지에 게재된다.

③ 소비자보호협회

소비자보호협회(Verbraucherschutzverein: VSV)는 법률상담이나 소송으로 불공정경쟁이나 거래의 일반조건에 관한 위법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업자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소비자를 위하여 중재지원을 한다. 중재지원의 대상은 주로 매매계약, 용역계약,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 등이다. 이 협회는 일차적으로 중재지원을 하고, 재판에서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조언한다.

④ 기술감독협회

기술감독협회(Technischer Überwachungsverein: TÜV)는 품질인증을 하는 전문가기관의 연합조직이다. 기술감독협회는 정부공인 검사기관이면서 제품의 안전성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 최대의 기술감독협회 라인란드(TÜV Rheinland)는 보일러의 안전검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에는 안

51)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제외국의 상품안전확보대책에 관한 조사, 전개서, 60면 참조.

전검사의 분야를 자동차 검사, 자동차 형식검사, 전기설비, 전자기기의 검사, GS 마크의 인증, 나아가서 자동차의 운전면허시험 등도 실시함으로서 공무수탁사인 (Beliehene)⁵²⁾으로 국가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적 단체이다. GS마크의 인증은 연방정부가 승인한 기관만이 할 수 있다. GS마크의 인증을 위한 시험은 제품의 원형시험과 제조설비의 검사가 주된 시험의 대상이다. GS마크가 인증된 후에도 인증기관인 기술검사협회는 GS마크를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대하여 정기검사나 공장의 생산라인이나 또는 시장에서 제품을 구입하여 인증받은 제품이 지속적으로 인증기준에 합치하는지를 검사한다. 기술감독협회는 인증기준에 합치하지 않는 제품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생산금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 단지 관할 행정청에 통지만 할 수 있다.

⑤ 독일규격협회

독일규격협회(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DIN)은 연방정부와 협약에 의하여 독일의 규격을 제정하는 민간단체이다. 국가의 중요한 표준과 규격을 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⁵³⁾ 독일규격협회가 하는 규격과 표준은 안전의 확보, 건강의 유지, 환경보호나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중요한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규격과 표준의 제정절차에 관하여는 독일규격협회의 정관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규격과 표준의 작성에는 관할 행정청, 생산자단체, 검사기관, 기술자검사협회, 손해보험회사, 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비자가 참가한다. 규격작성을 위한 실무작업위원회에서 규격안이 작성되면 기관지인 「DIN-Anzeiger」에 게재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일반인에게 의견을 표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제출된 모든 의견에 대하여 검토가 되면 규격안에 대한 합의절차를 거쳐서 확정된다.⁵⁴⁾

(5) 비판적 검토

1) 유럽연합 준칙의 회원국의 법률로 전환에 따른 문제점

이미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독일 연방정부가 연방참사원에 의견표명의 기회

52)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로서 법령에 따라 일정범위내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독자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다. 홍준형, 행정법총론, 제3판, 101면 참조.

53) 諸外國의 商品安全確保對策에 관한 조사, 전계서, 61면이하 참조.

54) 諸外國의 商品安全確保對策에 관한 조사, 전계서, 62면이하 참조.

를 주었을 때에 연방참사원은 제품안전법의 제정에 반대하고 이 법률안의 철회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연방참사원의 입장에 대하여 연방정부는 반대의견의 표명하였다. 즉, 연방정부의 반대의견에 의하면 현행의 특별법은 소비자에게 도달되는 모든 제품을 규율하지 못하고, 그 결과 항상 지금까지 특별법적으로 규율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법률상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입장은 학계로부터 지지를 받았다.⁵⁵⁾

현행의 특별법이 소비자제품에 대한 실질적 안전요구를 규율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유럽연합 준칙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연방정부는 주장하였다. 특히 특별법은 행정청에 의한 제품의 회수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된 제품의 위험에 대하여 메스콤으로 관련 당사사에게 주의경고를 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된 제품에 대하여서만 법률상 허용된다. 예를 들면 기기안전법 제6조제1항제2문, 의료제품법 제28조제2항 그리고 식품위생법의 집행을 위한 바덴뷔르템뷔르그 법률 제13조에서는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경우에 행정청이 다른 제품에 대하여서도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법률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률규정은 제품과 관련된 많은 개별적 법률이나 또는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도입될 수 없고, 제품안전법과 같은 통일적인 포괄적 법률(Auffangsgesetz)에 의하여 도입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입법현실상 연방정부의 의도하였던 바와 같이 제품안전법 속에 원칙적으로 모든 제품에 제품의 회수와 일반대중적인 주의경고에 관한 통일적인 법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적 근거의 통일화는 불필요한 중복규율을 피하고, 여러 제품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제품회수처분과 일반대중에 대한 주의경고조치에 대한 행정실무와 판례 그리고 학설이 불필요하게 대립하지 않게 하는 데에 기여한다.

입법론적으로 행정청에 의한 불안전한 제품의 회수처분과 일반대중에 대한 주의경고처분은 이미 특별법에 의하여 행정청이 이러한 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도 적용되게 하고, 특별법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더욱 합목적적이라는 학계의 주장이 있다.⁵⁶⁾ 유전공학법의 규율을 받는 제품에 대하여

55) H.J.Kullmann, Das künftige Produktsicherheitsgesetz, ZRP 1996, 436 ff.(439); Ulrich Berz, Tagungsbericht: 34.Deutscher Verkehrsgerichtstag 1996, NZV 1996, S.100 ff.

56) H.J.Kullmann, aaO., 439.

주의경고와 회수를 못하게 하는 제품안전법의 규정이 합당한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독일의 제품안전법은 유전공학법과 항공법의 규율을 받는 제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제3조제3항제1호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식품법의 집행을 위한 바덴뷔를던뷔르그주의 법률에 소비자의 예방적 건강보호와 오인방지를 목적으로 주의경고와 제품회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제품안전법은 제품회수처분과 일반대중에 대한 주의경고처분의 가능성이 중대하고 구체적인 건강에 대한 위해의 방지에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州의 법률상 규정은 연방법인 제품안전법의 제정으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분야에 제품안전법의 적용가능성은 최소한 소비자보호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았다. 독일의 기본법에 의한 연방과 주의 경합적인 입법분야에서 연방법률이 해당 사안분야에 관하여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주의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⁵⁷⁾ 주법의 규율영역은 연방법률로 규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규율할 수 있다.⁵⁸⁾ 그러므로 제품안전법이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목적에 합치하여 안전하지 못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에 제한되면, 주는 기타의 분야에서 입법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州法律上 규정이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한, 즉 식품위생법의 집행법률과 관련된 소비자의 오인방지라는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범위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에서 연방법에 의하여 제품안전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의 법률에서 제품안전법보다 강화되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주의 법률이 계속하여 적용력을 가진다.

2)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독일 제품안전법은 독일의 「제약회사의 운영에관한명령」 제14조와 관련된 「의약품법」 제29조제1항제2문에 규정된 바와 달리 중대한 제품위험에 관하여 자기에게 알려진 의문점이나 또는 유통되고 있는 자기제품에 대한 기타의 안전성결함을 관할 행정청에 알릴 생산자의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제품생산자에게 많은 문제점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생산자는 관할 행정청에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없게 된다. 「의료기기에관한명령」 제11조제3항과 제15조상의 의료

57) BVerfGE 7, 342 (347) = NJW 1958, 1179.

58) Leibholz/Rinck/Hesselberger,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7.Aufl., Art.72 Rdnr.36 참조.

기기의 운영자와 같은 제품의 사용자도 기기의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대하여 행정청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⁵⁹⁾

관할 행정청의 요청에 의하여만 생산자, 판매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수행되는 정보제공의무는 당해 행정청이 필요로 하는 불가피한 정보를 획득하게 하고, 적절한 시기에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데에 기여하기 충분하지 않다. 관할 행정청은 합당한 협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이유를 기술하여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사실 행정청이 이러한 협의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는 제품안전법 제10조제2항의 권리를 해당기업에 대하여 우연히 행사하는 경우(즉, 영업장소에 들어가서, 제품을 보고 그리고 운영하게 하는 경우)와 관계 공무원이 협의를 가지거나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의 시험보고서나 지적으로부터 이러한 협의를 포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당해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제품위험을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그 이후에 비로소 중대한 제품위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품안전법에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가능한 위험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제7조에 규정된 행정청의 과제는 제품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행정청의 완벽한 방안이 될 수 없다.

독일 제품안전법 제10조의 규정은 유럽연합 준칙 제5조와 제6조제1항제a)호를 사안에 적합하게 전환한 규정이 아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럽연합 준칙 제5조에 따른 필요한 법규범과 행정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면, 모든 관계자로부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요구하기 위하여 위험의 정도에 따라 행사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험한 제품특성에 대하여 의심의 시작에 대한 모든 정보도 불가피하다. 생산자는 그가 알게 된 모든 제품위험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나 당해 행정청이 구체적인 정보요청을 생산자, 판매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당해 행정청은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독일 제품안전법의 제정시에 생산자에게 그가 알게된 안전성결함에 관한 정보를 관할 행정청에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학계가 대안으로 생각한 방안은 약품법 제29조제1항제2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通知義務였다. 그러나 최소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제품이용시에 발생되어 제품의 안전성결함에 기인할 수 있는 사고로서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알려진 모든 사고를 행정청에 보고할 의무와 피해원인을 명

59) 이에 관하여는 Nöthlichs, Sicherheitsvorschriften für Medizinprodukte, Kennzahl 6728 unter 7 und Kennzahl 67735 unter 2-4 참조.

백히 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자가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가를 통보할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⁶⁰⁾ 이러한 경우에 비로소 당해 행정청은 제7조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의 여부와 행사하는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적합한 시기에 결정할 수 있다.

독일 제품안전법은 관할 행정청이 제7조 내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원료공급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는가 또는 최종제품의 생산자에 대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명백히 하지 않고 있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절의 규정은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소비자에 대하여 확정되거나 일반적 거래관행상 소비자에 대하여 사용되는 제품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바로 이 규정은 행정청의 권한이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에만 관련되고, 최종제품의 생산시에 사용된 제품의 부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품의 부품이나 그 일부는 다른 제품의 생산만을 목적으로 제조될 수 있다. 제품안전법 제7조제3항에 의하면 현재의 중대한 위협이 다른 방법으로는 방지될 수 없는 경우에 관할 행정청이 발하는 개별조치의 수범자는 물론 생산자와 판매자외에 기타의 모든 사람이다. 예외적으로 이러한 위협은 당해 행정청이 부품공급자(또는 원료공급자)에 대하여 취하는 경우에만, 부품공급자가 당해 행정청이 발하는 조치의 수범자가 될 수 있다.⁶¹⁾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는 최종제품의 생산자가 더 이상 시장에 존재하지 않고 부품공급자가 부품의 회수와 교환 또는 수선을 할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견해가 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청은 제품안전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한 이 권한을 부품공급자에 대하여서도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⁶²⁾

5. CE마크 제도

(1) 도입배경

CE(Commuanutés Européennes: Europäische Gemeinschaften)마크는

60) Berz, aaO., 100 ff.

61) S. Hauberichs, 1.Schweizer Fachtagung "Produkt- und Umwelthaftung", in: Produkt- und Umwelthaftpflicht International, 1996, S.26 ff.

62) Berz, aaO., 100.

유럽연합의 통일된 인증마크이다. 제품의 CE마크는 1985년 5월 7일의 유럽연합 이사회의 결정이 그 출발점이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내의 자본, 상품, 인력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하여 3가지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고자 하였다.⁶³⁾ 이에 따른 수단으로 유럽연합은 유럽표준(EN: European Norm)과 CE마크를 제정하였다. 이제까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각국은 국가표준인 BS, DIN, NF 등 의 표준을 독자적으로 제정함으로써, 목적은 거의 같음에도 불구하고 세부내용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여, 각국의 제조업자가 상품을 수출하기 위하여는 상대수입국의 공업표준에 각각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다. 또한, 각국의 제도를 의도적으로 까다롭게 운영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었다. 이 결정에 의하면 개별국가의 규격과 기술규격의 조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과 기술적 제품의 상호인정은 개별 국가에 따라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안전규범으로 인한 상품유통의 장애를 제거하게 되었다. CE마크는 유럽연합의 여러 준칙에서 규정되었다. 그러나 CE마크에 대한 대부분의 규율은 유럽연합의 기계준칙에 규정되어 있다.⁶⁴⁾ 유럽연합의 기계준칙은 유럽공동체조약 제100a조에 근거하는 유럽연합의 역내시장준칙과 관련된다. 역내시장준칙은 우선적으로 회원국의 법규와 행정규칙의 조정에 기여하고 역내시장의 형성과 기능유지와 관련된다. CE표시는 표시된 제품의 준칙합치성을 상징하므로 상이한 요청에 근거하는 국가적 통제를 제거하고 상이한 기술규범과 관련된 상품유통제한을 극복하는 데에 기여한다. CE마크의 부착에 대한 책임과 CE마크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한 전제요건은 유럽연합의 여러 준칙에서 명백하게 상호간에 구별되어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항에 접근하기 이전에 유럽연합의 역내시장의 조화를 위한 기술준칙이 가지는 의미와 이를 유럽연합의 법적 근거, 특히 회원국이 다르게 안전규격을 제정할 수 있는 분야가 자세하게 규명되지 않고는 CE마크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제품의 안전성확보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CE마크를 우리나라 또는 다른 국가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제품안전성을 확인하는 마크를 도입하기 위하여 단순한

63) 3가지의 장벽은 첫째, 물리적 장벽인 국경에서 재화와 용역 등의 이동을 저해하는 규제요소; 둘째, 기술장벽인 재화, 용역, 자본, 노동 등의 이동을 저해하는 상이한 표준, 기술규정, 인증제도, 검사제도; 셋째, 재정적 장벽인 가맹국 간의 상이한 세금제도, 부가가치세, 물품세 등을 제거 등이다.

64) Richtlinie Nr. 89/392/EWG, ABl. Nr.L 183, 9; 1차 개정 Richtlinie 91/368/EWG, ABl. Nr.L 198, 16; 제2차 개정 Richtlinie 93/44/EWG, ABl. Nr.L 175, 12; 제3차 개정 Richtlinie 93/68/EWG vom 22.7.1993, ABl. Nr.L 220, 1.

제도의 부산물인 기술적인 규범만을 도입하고 연구하여서는 많은 위험이 있다. 이러한 마크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구하고 있는 CE마크가 바탕을 두고 있는 법적인 문제점에 대하여도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여기서 잠시 소개한다.

(2) 역내시장의 형성을 위한 기술규격조화준칙의 의미

1) 상이한 기술안전법에 의한 제품유통장벽

기술제품의 시장은 회원국가의 상이한 안전시스템에 근거하는 수많은 상품유통의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유럽연합의 현실이었다.⁶⁵⁾ 그러므로 기술제품의 수출시에 흔히 특별한 안전성심사, 인증서 또는 구조변경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형식으로 표출되는 상품의 유통장벽은 쉽게 극복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각 국가는 오랜 역사동안 발전되어온 국가내의 규범구조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기기안전법(Gerätesicherheitsgesetz: GSG)의 일반조항 제3조제1항은 법규명령에서 기술적 작업도구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 산업재해방지에 관한 규범으로 보충된다.⁶⁶⁾ 물론 기기안전법의 일반조항에 의하면 기술적 작업도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술규율과 작업보호규정, 사고방지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제3자가 규정된 사용할 때 생명과 건강에 대한 모든 종류의 위험에 대하여 방어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만 그 작업도구는 유통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일반조항을 완성시키는 사고방지규정은 독일사회보험법(Reichsversicherungsordnung: RVO) 제708조에 의한 직업협동조합에 의하여 제정된다. 그러므로 사고방지규정은 법률적으로 정당화된 자치법 규이다.⁶⁷⁾ 사고방지규정은 2가지의 중요한 규율영역에서 구별될 수 있다. 하나는 건축과 기계설비에 관한 안전기술적 요청과 관련된다. 다른 하나는 기계의 운행과 운행자의 행위방식에 관한 규율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규율분야는 다른

65) Reuter, Binnenmarkt Europa, Das Beispiel der neuen Maschinenrichtlinie, CR 1990, 540 (541).

66) Reuter, aaO., 540 ff.: v.Hoyningen-Huene/Compensis, Deutsche Unfallverhütungsvorschriften im EG-Binnenmarkt - insbesondere für die Gerätesicherheit -, NZS 1993, 233 (237).

67) Wank/Börgmann, Deutsches und Europäisches Arbeitsschutzrecht, 1992, S.160; v.Hoyningen-Huene/Compensis, aaO., 233 ff. 참조.

회원국가에도 유사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각 국가에 따라서 상이한 규율의 조화에 어려움은 이러한 규율분야가 상호 교호적인 작용을 하는 데에 있다. 작업 기계에 대한 적은 요청은 직업상 사용하는 근로자는 특별히 기본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많은 부분 상쇄된다. 반대로 작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성요구를 강하게 하지 않는 국가의 규정은 기계의 사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보다는 기계 자체에 대한 안전성을 많이 요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각 국가간에는 기계의 안전성요구에 차이점이 있고, 바로 이점이 국가간의 규범조화를 어렵게 한다.

2) 우선법의 요건

이러한 기술상으로 존재하는 상품유통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럽공동체조약 제30조가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우선적인 효력을 가지는 규정이지만 이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유럽공동체조약 제30조에 의하면 분활화와 동일한 효력의 조치(Maßnahme gleicher Wirkung)는 금지된다. 유럽연합법원의 다손빌-판결⁶⁸⁾에 의하면 유럽연합 역내의 제품유통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실적 또는 잠재적으로 방해하는 모든 회원국의 규율은 동일한 효력의 조치이다. 다손빌-판결을 적용하는 경우에 회원국의 보호규정은 회원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균화되게 된다.⁶⁹⁾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법원은 Cassis de Dijon-판결에서 유럽공동체조약 제36조에 의하여 국가의 수입제한을 조세상 통제, 국민건강의 보호, 거래의 공정성, 소비자보호에서 허용하였다.⁷⁰⁾ 기술적 제품에 대한 회원국가간에 상호 상이한 안전규정은 바로 유럽연합내에 공동규정과 상이한 규정을 회원국가가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소비자보호의 문제에서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는 제품의 유통장벽은 원칙적으로 제거될 수 없었다.⁷¹⁾

기술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럽공동체조약 제30조와 제36조에 규정된 認定原則(Anerkennungsprinzip)을 활용

68) EuGHE 1974, 837 (852).

69) Matthies, in: Grabitz (Hrsg.), Kommentar zum EWG-Vertrag, Art.30 Rdnr.24; Reuter, aaO., 541 f. 참조.

70) EuHGE 1979, 649; Reuter, Die neue Maschinenrichtlinie: Ein Europäischer Binnenmarkt im Maschinen- und Anlagenbau, BB 1990, 1213 (1214) 참조.

71) Köck, Indirekte Steuerung im Umweltrecht: Abgabenerhebung, Umweltschutzauftrag und Öko-Auditing, DVBl. 1994, 27 (32).

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 원칙은 比例原則(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의
파생원칙으로서 동일한 가치의 보호수준을 유지하는 다른 회원국가의 허가는 원
칙적으로 인정되어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인정원칙에 의하면 수출
국가에서 해당제품에 대하여 기술상 안전요구에 대하여 비교가능한 검사가 실시
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회원국가가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통제하게 되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⁷²⁾ 그래서 유럽연합법원은 건강보호분야에서 유럽
연합의 한 회원국가가 수출국가에서 실시한 시험검사를 수입국가의 시험검사에
합치함에도 불구하고 수입된 제품의 유통을 기술적 안전성요구를 수단으로 저지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⁷³⁾ 동일한 원리가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적 이
유에도 적용된다. 즉, 수출국가의 환경보호요구가 수입국가의 환경보호 수준과 비
교가능할 정도의 수준을 보장하고 있으면 수입국가는 환경보호에 대한 기술적 요
구를 이유로 수입을 거부하지 못한다.⁷⁴⁾ 실무상으로 특정된 허가절차의 등가성이
나 인증서의 등가성은 입증될 수 없다.⁷⁵⁾ 그 이유는 이미 위에서 언급된 개별국
가의 안전시스템의 상이성에 기인한다. 구조적 안전의 상계에 관한 변수는 안전성
의 확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즉, 기술적 제품의 사용에 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
고 있는 국가나 사용자에 대한 엄격한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국가는 이러한 규정
이 없는 국가와 동일한 요건을 규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제품 자체가 가지는 안전
성 요건이외에 바로 이와같은 사용요건의 엄격성과 사용자에 대한 교육요건도 고
려하여서는 단일적인 안전성 기준을 확정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유럽연
합법원은 비교가능한 사고통계에 기준하는 방식도 충분한 방법으로 보지 않고 있

72) EuGHE 1981, 995; EuGHE 1986, 419 (436); Himmelmann, Umweltschutz in der Europäischen Union, in: Himmelmann/Pohl/Tünnesen-Harmes, Handbuch des Umweltschutz, 1994, A.9 Rdnr.82; Middeke, Nationaler Umweltschutz im Binnenmarkt - Rechtliche Möglichkeiten und Grenzen umweltrelevanter Alleingänge im Verhältnis zum freien Warenverkehr, 1994, S.190 ff.

73) EuGHE 1986, 419 (436).

74) Montag, umweltschutz, freier Warenverkehr und Einheitliche Europäische Akte, RIW 1987, 935 (939); Middeke, aaO., S.197 참조.

75) 다만, 유전공학적으로 변형된 생체기관의 유통분야에서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 여기에서
는 외국에 의한 허가의 인정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유럽연합 준칙(Art.13
der Richtlinie des Rates über die absichtliche Freisetzung genetisch veränderter
Organismen in die Umwelt vom 23.4.1990, ABl. L 117, 15)이 있다. 이 준칙상의
조건이 회원국가에 의하여 자국법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이 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에 기
준하는 허가의 등가성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다.⁷⁶⁾ 유럽연합법원에 의하면 비교가능성의 요구는 외국의 허가에 대한 비교가능성의 확정에 대한 원칙이라기 보다는 예외로 확정될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 준칙에 의하여 구체적 요건이 확정되지 않으면, 각각의 보호수준확정시에 회원국가의 기타 평가특권(Einschätzungsprärogative)이 존재한다.⁷⁷⁾ 이에 의하면 상호인정원칙은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에 제한적인 기여만 할 수 있다.⁷⁸⁾

3) 완전조화

이러한 어려움에서 볼때에 유럽연합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기술적 유통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유일한 가능성으로 완전조화의 방법을 찾을려고 시도하였다.⁷⁹⁾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곧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입증되었다. 상세한 안전규정은 유연성결함이라는 위험을 유발하고, 효력이 발하기까지 절차기간은 장기간이 소요되어 규범화가 신속하게 변화하는 기술적 요청에 보조를 맞출 수 없게 된다. 여러 준칙은 경험적으로 발안에서 효력발생까지 15년 이상이 필요하였다.⁸⁰⁾ 그 이유는 우선 수많은 기술적인 상세규정은 관할 위원회에서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과중하게 요구하였고 이로써 전문가와 협의를 필요로 하였다는 데에 있다.

4) 기술적 안전법에서 새로운 방안

1985년 4월 유럽연합은 위와 같은 기준의 규격인증통합에 관한 전통적 접근법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술통합과 표준화의 새로운 접근법(new approach)'을 발령하면서 표준, 기준의 조화와 인증제도의 설립으로 지역내의 기술적 장애를 제거하려고 하였다. 이 방안은 한편으로 충분한 유연성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안전수준이 공동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균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의 제정에는 품질이 낮은 지역외부의 저가제품을 수입

76) EuGH, NJW 1986, 1418.

77) EuGE 1987, 1227 (1273); EuGH, EuZW 1992, 346.

78) Reuter, CR 1990, 541 f.; Tünnesen-Harmes, Die CE-Kennzeichnung zum Abbau technischer Handelshemmisse in der Europäischen Union, DVBl. 1994, 1334 ff. (1336) 참조.

79) Reuter, CR 1990, 540 (542); ders., BB 1990, 1213 (1214); Eckstein/Krämer, EG-Maschinenrichtlinie, Gerätesicherheitsgesetz, 2.Aufl., 1993, Verband Deutscher Maschinen- und Anlagenbau e.V.(Hrsg.), S.6 참조.

80) Eckstein/Krämer, aaO., S.6.

규제하는 목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지금까지 추구된 기술적 완전조화 방안은 원칙적으로 상호인정원칙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그러나 높은 안전성요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안전표준이 준칙에 의하여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 안에 따라 표준은 위생, 환경, 안전, 소비자보호 등 공공이익에 관련된 강제분야(법적 규제 분야)와 경제분야 이외의 분야인 임의분야(자유 경제분야)로 구분되었다. 강제분야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요건을 동의하여 유럽연합준칙으로 공표하고 세부표준의 제정은 CEN/CENELEC에 위임하였다. 이에 반하여 임의분야는 집행위원회의 관여없이 CEN/CENELEC이 직접 제정하게 하여 유럽연합공통의 표준화작업을 가속시키고 있다.

강제규제분야는 원칙적으로 유럽연합 전체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안전표준이므로 개별 회원국가의 안전수준은 유럽연합이 설정한 기본적 안전표준에 합치하여야 한다. 유럽연합의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법은 1985년 이래로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인쇄용기,⁸¹⁾ 공장구내화물운반차량,⁸²⁾ 장난감,⁸³⁾ 건축물,⁸⁴⁾ 전자장 적합성,⁸⁵⁾ 기계,⁸⁶⁾ 사람보호시설,⁸⁷⁾ 비독자적 저울,⁸⁸⁾ 의료기기,⁸⁹⁾ 가스사용시설물,⁹⁰⁾ 전기통신-송신시설,⁹¹⁾ 액체와 기체형태의 연료로 공

-
- 81) Richtlinie 87/404/EWG, ABl. Nr.L 220, 48; 제1차 개정 Richtlinie 90/488/EWG vom 17.9.1990, ABl. Nr.L 220, 25; 제6차 기기안전법명령(Verordnung über das Inverkehrbringen von einfachen Druckbehältern)에 의하여 독일법으로 전환, BGBl. 1992 I, S.1172.
 - 82) Richtlinie 89/240/EWG: 1992년 6월 25일 제5차 기기안전법명령(Verordnung über kraftbetriebene Flurförderzeuge)에 의하여 개정 BGBl. I, S.2179.
 - 83) Richtlinie 88/378/EWG, ABl. Nr.L 187, 1; 장난감안전에 관한 명령(Verordnung über die Sicherheit von Spielzeug)에 의하여 독일법으로 전환 BGBl. 1989 I, 2541.
 - 84) Richtlinie 89/106/EWG, ABl. Nr.L 40, 12; 건축물법(Bauproduktgesetz)에 의하여 독일법으로 전환 BGBl. 1992 I, S.1495.
 - 85) Richtlinie 89/392/EWG, ABl. Nr.L 139, 19; 개정 Richtlinie 92/31/EWG, ABl. Nr.L 126, 11; 기기의 전자장 수용성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elektromagnetische Verträglichkeit von Geräten)에 의하여 독일법으로 전환됨 BGBl. 1992 I, S.864.
 - 86) Richtlinie 89/392/EWG, ABl. Nr.L 183, 9; 1994년 8월 2일의 의료제품에관한법률(Gesetz über Medizinprodukte)에 의하여 독일법으로 전환됨 BGBl. 1994 I, S.1963.
 - 87) Richtlinie 89/686/EWG, ABl. Nr.399, 18; 제8차 기기안전법명령(Verordnung über das Inverkehrbringen von persönlichen Schutzausrüstungen)에 의하여 독일법으로 전환됨 BGBl. 1992 I, S.1019.
 - 88) Richtlinie 90/384/EWG, ABl. Nr.L 399, 18; 도량형검정규정의 개정에 관한 명령(Verordnung zur Änderung der Eichordnung vom 24.9.1992)에 의하여 독일법으로 전환됨 BGBl. I, S.1653.

급되는 온수기기,⁹²⁾ 특정된 전력내에서 사용을 위한 전기제품,⁹³⁾ 의료기기제품⁹⁴⁾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준칙이 제정되었다. CE표시는 이 준칙의 적용분야에서만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즉, CE표시는 어떤 제품이 이 준칙에 규정된 기본적인 강제요건을 충족하고 이 준칙에 규정된 합치성평가가 실행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모든 제품이 CE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CE표시는 새로운 접근방법에 따라 준칙의 적용분야에 속하는 제품에 대하여서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한다.⁹⁵⁾ 새로운 접근방안에 따른 유럽연합의 준칙은 중요한 안전요건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즉 준칙속에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준칙내용의 구체화에 관한 문제가 실무에서 제기된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접근방안은 장기적으로 CEN과 CENELEC에 의하여 제정되는 기술규범에 의하여 구체화되게 규정하였다. 유럽연합의 영역에서 새로이 규정되는 기술규범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유럽연합위원회가 요구하는 시간내에 규격서가 작성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⁹⁶⁾ 그래서 기계준칙의 원래적 방안에 의하면 회원국가의 법규범과 행정규칙은 1993년 1월 1일까지 관할 유럽연합-규범화위원회(EG-Normungsgremien)의 조화된 규범에 의하여 대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
- 89) Richtlinie 90/385/EWG, ABl. Nr.L 189, 17; 의료기제품법(Gesetz über Medizinprodukte)에 의하여 독일법으로 전환됨 BGBl. 1994 I, S.1963.
 - 90) Richtlinie 90/396/EWG, ABl. Nr.196, 15; 제7차 기기안전법위임명령(Gasverbrauchseinrichtungen-Verordnung)에 의하여 독일법으로 전환됨, BGBl. 1993 I, S.133.
 - 91) Richtlinie 91/263/EWG, ABl. Nr.L 128, 1; 통신시설물법(Gesetz über Fernmeldeanlagen: FAG)의 개정과 전기통신시설물의 허가에 관한 명령(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Telekommunikationseinrichtungen: TKZulV)에 의하여 독일법으로 전환됨 BGBl., I, S.756.
 - 92) Richtlinie 92/42/EWG, ABl. Nr.L 167, 17; ABl. Nr.L 195, 32. 난방기술 시설물과 온수사용시설물에 관한 에너지절약 요청에 관한 명령(Verordnung über energiesparende Anforderungen an heizungstechnische Anlagen und Brauchwasseranlagen vom 24.2.1982)에 의하여 독일법으로 전환됨 BGBl. 1982 I, S.205; 1994sus 3월 22일의 명령에 의하여 폐지됨 BGBl. I S.613.
 - 93) Richtlinie 73/23/EWG; Sattler, Inhalt und Bedeutung des CE-Zeichens, 2. Ausgabe, 1993, Deutscher Industrie- und Handelstag (Hrsg.), S.7.
 - 94) Richtlinie 93/42/EWG, ABl. Nr.L 169, 1.
 - 95) Sattler, aaO., S.7.
 - 96) 이에 관하여는 v.Hoyningen-Huene/Compensis, NZS 1993, 233 (236); Sokoll, Di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im Übergang zum Europäischen Binnenmarkt - Änderungen zum 1.1.1993, NZS 1993, 9 (13) 참조.

러나 이 기간까지 기계의 일 부분에 대하여서만 합당한 기술규범이 제정되었을 뿐이다.⁹⁷⁾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과규정이 필요하였다. 즉, 앞으로 2년간 즉,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회원국가의 내국법이 효력을 가지도록 경과규정이 도입되었고, 그 결과 그 때까지 상이한 효력을 가진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다.⁹⁸⁾ 물론 유럽연합의 규범화위원회의 노력이 보다 많은 성과로 나타나면 날수록, 새로운 방안에 근거하는 인정요소는 더욱더 많은 분야에서 완전한 조화로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준칙에 의한 완전규율과의 차이점은 기술규범에 대한 조화가 유럽연합 조약의 법정립절차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유럽연합에서 권한구조가 새로운 접근방안으로 기술규범분야에서 유럽연합기관에서 규범화기관으로 옮겨졌다고 할 수 있다.⁹⁹⁾ 관련된 유럽연합의 기업, 특히 기계제작 기업은 다음과 같은 법적인 결과에 기록된다. 유럽연합의 준칙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구는 법적인 구속을 받으나 유럽연합 규범화위원회의 기술규범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DIN EN-Norm으로 표시되는 이러한 기술규범은 예외적으로 그 준수가 해당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실무상에서는 그 의미는 높게 평가될 수 없다. 왜냐하면 기술규범은 법률상 합치성의 추정으로 CE표시의 획득을 아주 쉽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DIN EN 규범에 합치하는 제품이 다른 검사없이 법률상 안전규격과 합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3) CE마크의 개별적 적용사항

1) CE마크의 내용

새로운 접근방법이 유럽연합회원국 간의 상호인정의 원칙을 확립하였다고는 하지만 적합성평가방법이나 인증마크를 개별상품별로 정하고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989년 12월 2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지역내의 자유로운 상품유통을 위하여 유럽공통의 표준제정뿐만 아니라, 시험과 평가방법의 공통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시험 및 인증에 관한 글로벌접근법(global approach)'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강제분야의 제품은 유럽연합의 명

97) Wlotzke, Technischer Arbeitsschutz im Spannungsverhältnis von Arbeits- und Wirtschaftsrecht, RdA 1992, 85 (90 f.) 참조.

98) v.Hoyning-Huene/Compensis, NZS 1993, 233 (236) 참조.

99) Reueter, CR 1990, 542 f.; Tünnesen-Harmes, DVBl. 1994, 1337.

령(Directive)에서 제시한 적합성평가모듈의 절차에 따라 적합성을 평가하고 이를 만족시킨 경우에 CE마크를 붙이도록 하였다.¹⁰⁰⁾ CE마크는 각각의 기술적 제품에 해당하는 유럽연합준칙의 본질적인 안전요구가 준수되고, 모듈의 세부적인 규정에 따라서 적합성평가절차가 실시되었다는 것¹⁰¹⁾에 대한 외부적 표시이다. 이는 유럽연합 지역내에서 그 동안 국가별로 사용되어 오던 각양각색의 인증마크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CE마크는 제품이 유럽의 해당준칙상의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마크이다. CE마크를 부착하고 있는 제품은 유럽연합회원국들의 별도검사나 시험 없이도 유럽내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다. CE마크를 획득한 기계는 유럽연합 기계준칙의 규정과 합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독일 기계제작과 시설물건설 협회(Verband Deutscher Maschinen und Anlagenbau: VDMA)는 CE마크가 최소한 기계준칙의 적용분야에서는 기존의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는 당연한 것을 표시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CE마크는 결코 품질표시가 아니다. CE마크는 유럽연합위원회의 방안에 의하면 소비자나 수요자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행정표시이다. 오히려 CE마크는 감독행정청에게 적합성을 보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또한 CE마크는 원산지표시도 아니며 유럽연합의 규범화기관의 조화된 기술규범과 제품의 일치여부를 표시하는 것도 아니다.

CE마크의 획득을 위한 요건은 각각의 사안과 관련된 유럽연합준칙을 전환한 자국법에 합치이다. 조화된 기술규범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준수는 CE마크를 위한 강제적 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조화된 기술규범의 준수는 CE마크의 획득을 쉽게 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적합성이 추정되기 때문이다. 조화된 기술규범이 유럽연합에 없거나 또는 있어도 이것이 완전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이 제품에 대하여는 모형심사의무가 있다.¹⁰²⁾ CE마크가 부착된 기계는 기계준칙 제5조에 의하여 회원국가의 관할 행정청이 그 기계가 해당 준칙의 요구에 합치한

100) 이종석/공길택 지음, 기업과 품질경영시스템, 청문각, 39면.

101) Beschuß des rates über die in den technischen Harmonisierungsrichtlinien zu verwendenden Module für die verschiedenen Phasen der Konformitätsbewertungsverfahren und die Regeln für die Anbringung und Verwendung der CE-Konformitätskennzeichnung (93/465/EWG vom 22.7.1993, ABl. Nr.L 220, 23 ff.).

102) 이에 관하여는 부록의 유럽연합 이사회의 모듈, ABl.Nr.L 220, 23 (29 f.): Kalwa, Die Berufsgenossenschaft, 1993, 296 (297) 참조

다고 추측받는 법적 효과를 가진다. 국가나 또는 직업협동조합에 의하여 주어지는 추가적인 증명서나 표시는 필요하지 않다. 결국 생산자가 자기제품에 대하여 적합성선언을 하고 이를 CE마크로 표시하면,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제품의 수입나 사용을 위하여 기타의 다른 심사나 인증을 받게 하여서는 안된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이와 달리 행위하기를 원하면 기계준칙의 적용분야에서 기계준칙 제6조와 제7조에 의한 특별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럽공동체조약 제100a조제4항에 의하여 보다 엄격한 보호규정을 제정할 가능성이 회원국가에 추가적으로 존재한다. 특별한 절차는 회원국가의 조화된 규범이 준칙의 해당된 기본적 요구에 완전하게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다. 또는 회원국가가 CE마크가 부착된 기계가 사람의 안전과 가축 또는 재화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특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CE마크의 개정준칙과 모듈결정

새로운 방안에 관한 유럽연합의 준칙에서 1993년 7월 22일의 CE마크-개정준칙의 효력발생까지 CE마크의 부착에 대한 책임측면에서 CE마크의 재발급에 관한 측면에서 중대한 상이점이 있었다. 개정준칙은 회원국가에 따라서 상이한 표시원칙을 포함하는 모든 개별적 준칙의 개정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접근방안에 의하여 제정된 여러 준칙을 조화시켰다.

CE마크-개정준칙은 1994년 7월 1일까지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법으로 전환되어야 하였다. 새로운 표시규율의 효력발생은 1995년 1월 1일부터 였다. 물론 2년간의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늦어도 1997년 1월 1일까지는 유럽연합 회원국 가의 통일적인 표시원칙이 정립되어야 했다. 개별준칙의 개정은 적합성평가와 CE마크의 사용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와의 종합안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개정준칙과 동시에 적합성평가절차의 여러 단계를 위하여 기술적 조화준칙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모듈에 대한 결정과 CE마크의 부착과 사용의 규율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으로 적합성평가의 조화된 장치와 산업제품의 유통에 관한 장래 기술준칙의 결정을 쉽게하여 역내시장의 실현을 촉진에 기여하여야 하는 기본원칙이 정립되었다. 모듈결정 제1조는 이러한 목적에 합치하여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기술적 조화준칙에 적용되어야 하는 절차가 모듈결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모듈 중에서 그리고 이 결정에서 확정된 척도와 부속서에 포함된 일반적 준칙에 따라서 선택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특정된 제품과 해당준칙의 요구사항에 합치성여부의 증명을 모듈의 형식으로 실현하는 방식은 개별준칙에서 규정될 수 있는 적합성평가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각각의 준칙에 이러한 모듈과 조합이 규정될 수 있다. 「모듈 A」는 내부적 완성통제와 관련된다. 「모듈 A」는 생산자나 유럽연합 내에 거주하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제품이 준칙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고 선언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자와 그 대리인은 CE마크를 그의 제품에 부착하여 적합성을 선언하게 된다. 생산자는 제품의 적합성선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아가서 「모듈 Aa」는 어떤 제품의 특정된 관점에 대한 검사와 지정된 기관에 의한 셈풀검사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모듈 B」는 지정된 기관이 해당 제품을 대표하는 셈풀이 해당준칙의 규정에 합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허용하는 절차의 일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자는 당해 기관에 해당 제품이 관련된 준칙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셈풀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모형검사증명서를 발부한다. 「모듈 C」는 「모듈 F」와 결합하여 적용될 수도 있다. 「모듈 C」는 건축종류에 적합성에 관한 생산자선언이다. 「모듈 F」는 생산자가 제품과 허용된 건축종류와 적합성 또는 준칙의 기본적 요구사항과 합치를 선언하고 관계기관은 적합성증명서의 발부전에 이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모듈 G」는 개별적 심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자는 해당 준칙의 기본적 요구사항과 합치를 심사받는 제품을 관계기관에 제출한다. 「모듈 D」와 「모듈 E」는 생산자에 의하여 허가된 품질보증시스템과 생산자 선언과의 결합에 의한 개별 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품질보증시스템은 인증을 필요로 한다. 즉, 중립적인 제3자가 적합한 신뢰가 있고, 각각의 품질보증시스템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되었고, 규범과 합치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인증된 품질보증시스템의 사용은 관할 인증기관이 정기적으로 법률상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CE마크의 획득은 인증된 품질시스템의 사용에 이점을 제공한다. 즉, 관계 기관은 품질인증시스템과 관련된 CE마크가 부착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스템을 감독하나 더 이상 생산과정이나 제품 자체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게 된다. 「모듈 H」는 포괄적인 품질보증과 관련된다. 여기서 생산자는 제품구상을 위하여 허가된 품질보증시스템을 사용한다. 관계 기관은 이러한 품질보증시스템을 통제하고 제품구성이 관계 준칙과 합치하는지를 심사한다. 여기서 관계 기관은 제품구상심사증을 발급한다. 생산단계에서 생산자는 관계 기관에 의하여 감독받는 허가된 품질보증시스템을 사용한다.

3) CE마크의 적용분야

CE마크는 해당 준칙이 회원국의 자국법으로 전환되고 기존의 경과기관이 도과한 경우에 새로운 접근방안에 따른 유럽연합준칙에 속하는 모든 제품에 부착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준칙이 회원국의 자국법으로 전환되면 생산자가 그 준칙의 효력발생이후에 유럽연합의 준칙을 준수한 경우에 CE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나, 준칙에 규정된 전환기간의 도과이후에는 언제든지 생산자는 CE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준칙에 규정된 경과기간의 측면에서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과도기에 자국법의 규정에 따라 자국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제품은 생산될 수 있다. 물론 이 제품은 CE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 생산자가 경과기간동안에 이미 개별 준칙의 요구를 충족하는 경우에 CE마크는 부착될 수 있다. 어떤 제품이 CE마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준칙에 속하는 경우에 CE마크는 원칙적으로 해당된 모든 준칙에 적합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제품은 해당준칙이 독일법으로 전환되고 고려되어야 하는 경과기관이 도과한 시점부터는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생산자가 적용될 규율의 선택할 수 있는 경과기간동안에 생산자에게 적용된 준칙규정과 합치는 CE마크로 표시된다. 이 경우에 제품에 부착된 서류, 고지사항 그리고 제품에 적용되는 준칙의 번호는 유럽연합의 공보에 게재되어야 한다. 그 결과 어떠한 준칙이 적용되었는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다.¹⁰³⁾

사용된 기술제품은 CE마크의 적용영역에서 배제된다.¹⁰⁴⁾ 이것은 예를들면 기계준칙의 적용분야에서 CE마크는 합법적인 유통을 전제로 한다는 것에서 나온다. 모든 기계는 한번만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표시의무는 바로 기계가 처음으로 유통되는 시점에만 있게 된다. 소위 공장정문을 기준시점으로 하는 원칙(Werkstorprinzip)은 유통에 적용된다. CE마크는 위험모면의 시점 이전에 부착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기계가 사용장소에서 설치되어 모든 부품이 연결된 경우, 즉 운행될 수 있는 상태인 때에 비로소 CE마크가 부착된다.

4) 기계준칙의 적용분야에서 적합성선언

기계준칙 제8조제1호와 결부된 기계준칙 「부속서 II」는 생산자가 한 적합성선언

103) Modul-Beschluß, Anhang I B c, ABI, Nr.L 220, 23 (26).

104) Wlotzke, Umsetzung des EG-Richtlinienwerkes für Maschinen in das deutsche Arbeitsschutzrecht, Die Berufsgenossenschaft 1990, 6 (7).

언은 어떠한 내용이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자 또는 유럽연합내에 있는 대리인의 상호와 주소, 기계에 대한 설명, 기계와 관련된 모든 규정, 등록된 기계인 경우에 등록기관과 주소, 유럽연합 모형검사증명서의 번호, 조화된 규범이나 자국의 기술규범의 근거와 적용된 특수성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심사되지 않는 기록서류가 제출될 수 있다.

5) 기타 표시의 사용

원칙적으로 제3자가 CE마크의 의미와 형태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표시의 부착은 금지된다. CE마크외에 GS표시가 부착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아직 명백하지 않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이에 관하여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가 있다.¹⁰⁵⁾ 물론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유럽연합법원이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외관적인 혼동의 위험이 없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GS표시의 계속적인 사용에 찬성하고 있다. 기타 GS표시는 CE마크와는 달리 자발적인 표시이다. CE마크는 생산자 스스로 부착하여야 하고, 기계준칙의 적용분야에서 원칙적으로 어떠한 검사도 받지 않는 반면에, GS표시는 관할 기관이 제품감독과 결합한 모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GS표시는 독일의 국내법적인 요구를 충족하고 있다는 표시이므로, 독일의 국내법이 유럽연합의 준칙에 완전히 일치하게 규정한 경우에 고유한 의미가 상실된다. 유럽연합의 기계준칙의 규정은 유통되어 현재 운행되고 있는 모든 기계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독일의 제품안전성표시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관련된 법규가 유럽연합의 준칙과 합치하지 않고 있는 분야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허용된다.

6) 안전표시의 양식

CE마크는 제품 자체에 부착될 수 있다. 기계준칙 「부속서 I」 제1.7.3.호는 생산자표시에 통합이 합목적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CE마크는 항상 쉽게 볼 수 있고 장기간 부착될 수 있어야 한다. 제품의 크기나 특성상 CE마크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 예를 들면 장난감준칙에 구속받는 작은 장난감자동차의 경우에 CE마크는 포장용지나 용기에 부착될 수 있다. 또한 포장용지나 용기도 없는 경우에는 사용안내서에 부착할 수 있다. CE마크는 쉽게 발견될 수 있어야 하고, 큰

105) Wlotzke, Die Berufsgenossenschaft 1990, 6 (8); Reuter, CR 1990, 544.

기계나 시설물에서 CE마크는 가능한 중심적인 위치에 부착되어야 한다.

CE마크의 모양도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글자모양은 반원형태로 하고, 반원의 90%에 해당하는 중심축은 “E”에 있어야 한다. 글자선의 굵기는 철자크기의 15%로 되어야 한다. 1993년 7월 22일의 CE표시 개정준칙에 의하면 CE마크를 크게하거나 작게하는 경우에 비율이 준수되어야 한다. CE마크의 여러 가지 구성 부분은 동일한 크기이어야 하고, 이때에 최소한의 크기는 5mm이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아주 적은 제품의 경우에는 5mm이하일 수 있다. 현재로는 CE마크는 철자 “CE”로 되어 있고, 부착연도의 4자리수 중에서 마지막 2자리수가 부착되었다. 1995년 1월 1일부터는 부착연도를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어 졌다. 그러나 제작연도가 생산자표시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경과기간동안 생산자는 적용받는 규율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 경우에 생산자에게 적용되는 준칙규정에 합치의 여부가 CE마크로 표시된다. CE마크의 재질과 색상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다. 유럽연합준칙에 의하면 단지 CE마크는 분명하게 인쇄되고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재질은 제품의 예상수명동안 유지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색상의 선정시에 주의하여야 하는 점은 CE마크와 그 주변이 구분할 수 없어서 보기애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된다.

6. 行政廳의 情報提供行爲

(1) 일반대중에 대한 행정청의 정보제공행위

독일 제품안전법 제8조는 제품의 위험을 일반대중에 알리기 위하여 행정청이 직접 정보제공행위를 할 수 있다. 행정청의 이러한 행위는 지금까지의 행정청의 행정작용과는 특이한 행위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청의 경고조치는 국가의 정보제공행위의 형태이다. 국가는 정보제공행위로 일반대중의 위험방지의 목적으로 위해와 위험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보호¹⁰⁶⁾와 건강보호의 분야에서 정보가 구체적인 제품과 동일종류의 제품과 관련되면, 제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국가의 대중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것으로 느끼는 경우에 국가의 정보제공행위는 제품생산자 또는 판매자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106) Di Fabio, JuS 1997, 1 ff.; H.J.Kullmann, Die Rechtsprechung des BGH zum Produkthaftpflichtrecht in den Jahren 1995-1997, NJW 1997, 1746 ff.; N.Kollmer, Zivilrechtlich und arbeitsrechtliche Wirkungen des Gerätesicherheitsgesetzes, NJW 1997, 2015 ff. 참조

위험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인 발표행위에 대하여 일반대중이 가지는 이익은 이러한 정보제공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이익과 상반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이익이 국가의 발표행위로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법률규정의 도입, 위험상황의 긴급성 그리고 정보의 정치적 의미가 결정과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상황이 발생하여 행정청의 부작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¹⁰⁷⁾ 그래서 1997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빌한 독일제품안전법은 제품위험에 대한 행정청의 정보제공활동의 합법성에 대하여는 엄격한 요건하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법률은 행정청의 위법한 제품정보에 대하여 공무원의 책임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에 의한 제품의 경고조치는 일반대중에 대하여 폭넓은 영향을 미치므로 통제될 수 없는 고유한 동태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고유한 동태성으로 인하여 행정청의 경고조치는 해당 기업에 대한 민감한 경제적 침해가 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¹⁰⁸⁾ 이것은 독일에서 영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에 관한 공적 논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언론에 의하여 “광우병”이라는 표제로 보도됨으로써 독일의 쇠고기 시장은 판매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행정청의 경고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판명되면, 국가는 일반적인 국가배상액과는 달리 아주 높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제도의 도입시에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2) 行政廳의 警告의 補充性

1) 행정청의 권한

독일의 제품안전법이 효력을 발하기 전의 법률상황은 아주 불만족스러웠다. 왜냐하면 행정청의 경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분산된 권한규범만 존재하거나, 州의 경찰법에 규정된 일반조항에 근거하여 또는 헌법에서 직접 도출된 경고에 관한 권한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고, 행정권한의 분산과 주에 제한된 권한은 주를 넘어서는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대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식품에 대한 경고에 적용된다. 왜냐하면 식품에 대한 경고는 주의 경계와 행정권한을 넘어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07) 이에 관하여는 Heckner, ZLR 1994, 1 ff. 참조.

108) B.Tremml/S.Nolte, Amtshaftung wegen behördlicher Warnungen nach dem Produktsicherheitsgesetz, NJW 1997, 2265 ff.(2266) 참조.

제품안전법은 행정청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의무는 담당공무원이 제품위험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 이행하여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법적인 상황과 비교할 때에 몇가지 분야에서 결정적으로 변경되었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보다 구체화되었다. 그래서 제품안전법은 일반대중에 대한 행정청의 정보제공권한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다. 정보를 제공한 행정청은 제품의 위험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범위에서 일반대중에 대하여 스스로 지적을 하거나 일반적 경고를 할 수 없다. 일반대중에 대하여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경고를 하는 권한은 위험이 급박한 경우에만 행사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법적 상황은 구체적인 위험으로 충분하였다. 행정청의무의 구체화는 행정청의 정보제공권한의 제한과 함께 실현된다. 제품안전법 제8조에 의하면 관할 행정청은 제품이 유통되고 난 이후에 제품에서 기인하는 위험에 피폭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적시에 적합한 형식으로 특히 생산자에 의하여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지적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청은 위험이 급박하여 다른 효과적인 조치, 특히 생산자의 경고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일반대중에 대하여 스스로 경고를 할 수 있다. 제품안전법 제8조는 이제 행정청의 일반대중에 대한 정보제공행위보다 해당 기업의 자발적 조치에 우선성을 부여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서 발달된 행정청의 정보제공행위가 가지는 補充性(Subsidiarität)을 명백히 하였다.¹⁰⁹⁾

2) 행정청 정보제공행위의 보충성

일반대중에 대한 행정청의 정보제공행위는 최후수단의 조치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즉, 위험이 급박하고, 생산자 자신에 의하여 효과적인 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행정청은 일반대중에 대한 정보제공행위로 제품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 자체적인 경고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경고에 우선한다. 그러므로 관할 행정청은 일차적으로 생산자에 대하여, 2차적으로 판매자에 대하여 위험방지에 필요한 경고를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대한 현재의 위험이 다른 방법으로는 회피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은 경찰법상 기본원칙에 따라 위법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하여 경고를 할 수 있다.

109) B.Trummel/S.Nolte, aaO., 2267.

第4章 現行法의 改善 方案

I. 消費者保護法의 補充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럽연합과 독일의 제도적 방안에 관하여 위하여 고찰하였다. 독일의 입법상황은 유럽연합의 영향과 자국의 법치주의의 철저한 보장하에서 제품안전법을 도입하였다. 물론 이 법률은 제품안전에 관한 일반법이기 때문에 이 법률의 제정 이전에 이미 개별적인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의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적인 원칙은 한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도입이 요망된다. 제품안전에 관한 일반법은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는 경우에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자가 안전한 물품을 제조하도록 강요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이 물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는 분야는 사후적 조치가 일차적이다. 그리고 물품을 유통시키거나 제조한 사업자가 이미 시장에서 퇴출되어 버린 경우에 물품안전성에 기여할 수가 없다. 이를 위하여는 사전예방적인 물품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고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제도는 바로 제품안전법이나 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과는 달리 한국은 제품안전성의 확보와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消費者保護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이 없는 독일의 경우에는 제품안전법을 새로이 제정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한국은 우선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이후에 새로운 법률의 제정에 관하여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¹¹⁰⁾ 즉, 새로운 법률을 도입함으로써 추구하는 입법권자의 목적이 기존의 법률의 해석으로 충분하게 실현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기존의 법률로써 이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여 그 법률의 시스템속에서 달성하려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현행 법률의 시스템속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우리는

110) 이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그 법률의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요성 검토는 ① 법률제정의 불가피성이 존재하는가? ② 그 법률이 달성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③ 설정된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가능한가? ④ 설정된 목적이 상위 규범이나 정책 목표와 일치하는가? ⑤ 동일한 서열에 있는 다른 목표와 충돌은 없는가? ⑥ 목표설정이 상위의 목적에 보다 잘 일치할 정도로 개정될 수 있는가? 등등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목적 추구는 소비자보호법의 해석으로도 가능한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해석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보호법에 제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 목적이 수용되면 消費者保護法의 체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소위 製品安全法의 제정은 고려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제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설정하고, 이를 법률로 구체화 할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II. 製品安全性確保의 具體化

1. 目的

제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우선 안전한 제품만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생산자와 판매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최소한의 소비자보호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 소비자보호법의 입법이유에 의하면 제정 취지는 “상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도의에 입각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과하고 소비자 이익을 옹호하며 소비자의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조장하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법은 1986년 말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개정이유는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민 소득수준이 2천불을 넘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욕구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그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바, 이에 현행 소비자보호법의 선언적 규정들을 보다 실효성있게 개정하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백히 하며, 법체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에 두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의 제정취지와 전면적인 개정취지에도 소비자제품의 안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발견할 수 없으나, 소비자보호법의 목적조항에서는 이미 많은 부분 내포되어 있다. 현행 소비자보호법 제1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서 많은 부분에서 안전한 제품만을 생산하고 판매할 제조사와 판매자의 의무를 이미 구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품안전성의 확보를 제도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이미 소비자보호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가 추구하는 제품안전의 최소한에 대한 요구사항은 소비자보호법의 목적에서 명백하게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제품안전확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소비자보호법 제1조 목적조항에 “… 기본적 사항과 최소한의 소비자보호수준을 규정함으로써 …”로 개정하면 제품안전성확보의 목적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될 수 있다.

2. 適用範圍

현행 소비자보호법은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제2조의 소비자를 정의하면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및 제공된 물품을 농업(축산업을 포함)과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 하고 있다. 여기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하고, 축산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 및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를 제외하고 있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은 사업자를 정의하면서 판매하는 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고제품의 유통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에 골동품과 수선되어 재사용되는 제품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사실 독일의 제품안전법의 적용범위와 구별되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보호법과 제품안전법간의 목적의 상이점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물품의 성질상 특히 공동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안전성과는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소비자제품은 원칙적으로 사용함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와 관련되나, 골동품의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래적인 용도와는 거리가 있고, 장기간의 시간 경과로 인하여 물품의 생산당시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골동품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예외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3. 管轄 行政廳

현행 소비자보호법의 집행권은 재정경제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소비자보호법은 제품안전을 확보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一般法이다. 그러므로 특별 소비자보호법 또는 특별 제품안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 수도법, 약사법 등등과 소비자보호법의 소관부처는 다르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법은 모든 소비자제품을 그 관할분야로 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관할하는 행

정정이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소비자보호법의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는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물품, 즉 식품이나 약품 등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이러한 경우에 사실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보호법에 특별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가 소비자보호법으로 관할 할 수 없는 분야를 명백히 할 필요성이 있다. 관할의 명백화는 효율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나의 행정청에게만 관할권을 주는 데에 기여한다. 특정된 제품의 소비자보호와 제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일 행정청에 집행권을 집중하는 것은 인력과 비용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낭비에 대한 예로는 다수의 행정청에 의한 상이한 안전판단에 의하여 행정청간의 마찰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결국 행정청은 소비자보호법과 개별법률을 소비자보호의 목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소비자보호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별법률에서도 중요하다.

4. 事業者의 義務

안전한 제품만을 유통시킬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사실 소비자보호법의 핵심인 동시에 제품안전법제의 핵심규정이기도 하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은 수범자를 명백하게 사업자로 함으로써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하고 있다. 또한 특이한 점은 물품의 제조자, 수입업자 그리고 판매자에 대하여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실 물품의 유통절차와 소비자보호의 책임의 정도면에서 물품의 제조자와 판매자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영역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물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데에 관여한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책임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제품의 안전성확보에 보다 많이 기여할 수도 있으나, 각자에게 책임영역이 명백하게 설정되지 않으므로서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책임이행을 상호에게 전가시킬 위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물품의 성질상 판매자에게 부여될 수 없는 책임이 판매자에게 부과됨으로써 판매자측에서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은 과중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치국가에 기초하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중한 책임의 부여는 위헌적인 법률로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소비자보호법에서 제2조의 정의에서 사업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하의 모든 법률규정에서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보다는 물품의 제조자와 판매자를 구별하여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 판매자의 책임은 생산자의 책임과 다르다. 왜냐하면 판매자는 제품의 위험잠재성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판매자는 그에게 가능하고 수인될 수 있는 책임의 범위 내에서 안전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여야 한다.

5. 管轄 行政廳의 權限

(1) 主管 行政機關에 대한 是正措置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2에 의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사업자가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가 직접 위법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주관 행정기관에게 조정조치를하도록 한 것은 주관 행정기관이 관할 물품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데에 기인한다.

(2) 收去·破棄命令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3에 의하면 관할 행정청은 사업자가 물품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끼치거나 기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를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를 명할 수 있고, 당해 물품 및 용역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관할 행정청은 소비자의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물품에 대하여 직접 수거·파기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일차적으로 행정처분으로 이를 명령하고, 사업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비로서 최후의 수단으로 직접 수거하여 파기할 수 있다. 이는 비례의 원칙을 명문화한 규정이다. 현저한 위험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사업자가 직접 위해방지조치를 하는 것이 행정청이 직접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당해 물품의 위해와 유통과정을 보다 잘 알고 있는 사업자가 이를 직접 행하는 것이 소비자에 대한 물품의 위해방지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예외규정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즉,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가 급박하여 사업자에게 수거·파기를 명령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관할 행정청이 직접 수거·파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3제3항에 이와 같은 예외규정의 삽입이 필요하다.

(3) 比典型的 行政手段의 補充必要

제품의 위험을 일반대중에 알리기 위하여 행정청이 직접 정보제공행위를 하는 권한도 고려할 수 있다.¹¹¹⁾ 행정청의 이러한 권한은 한국의 법질서에 있지 않는 새로운 행정작용으로 행정청의 특수한 행위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대중에 대한 행정청 경고조치는 일반대중의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정보제공행위의 형태이다. 환경보호¹¹²⁾와 건강보호의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가 구체적인 제품과 관련되는 경우에, 제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는 일반대중에 대한 국가의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 수 있고 이는 국가의 정보제공행위가 제품생산자 또는 판매자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즉, 제품위험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인 발표행위는 한편으로 일반대중에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정보제공활동으로 기업의 이익은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대중에 대한 국가의 정보제공행위가 비례의 원칙에 일치하지 않을 정도로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다. 일반대중에 대하여 행정청의 정보제공행위를 허용하는 경우에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는 바로 요건의 엄격성이다. 동시에 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은 행정청의 위법한 제품정보에 대하여 공무원의 책임을 자세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행정청의 제품에 대한 경고조치는 일반대중에 대하여 폭넓은 영향을 미치므로 그 파급효과는 통제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바로 행정청의 경고조치가 가지는 이러한 동태적인 파급효과는 해당 기업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¹¹³⁾

위험방지에 대한 국가의 정보제공활동은 행정청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일반대중이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국가의 정보제공활동은 명령과 강제가 아니라, 호소, 자극 그리고 설득작업의 형태로 나타난다.¹¹⁴⁾ 이러한 방식

111) 이종인, 제품위험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부족이 제품안전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소비자문제연구, 제20호, 1997/12 참조.

112) Di Fabio, JuS 1997, 1 ff.; H.J.Kullmann, Die Rechtsprechung des BGH zum Produkthaftpflichtrecht in den Jahren 1995-1997, NJW 1997, 1746 ff.; N.Kollmer, Zivilrechtlich und arbeitsrechtliche Wirkungen des Gerätesicherheitsgesetzes, NJW 1997, 2015 ff. 참조

113) B.Tremml/S.Nolte, Amtshaftung wegen behördlicher Warnungen nach dem Produktsicherheitsgesetz, NJW 1997, 2265 ff.(2266) 참조.

으로는 국가의 정보제공활동은 의도된 의사영향의 강도에 따라 3가지의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일반대중에 대한 경고, 추천 그리고 지도의 3가지의 형태이다.¹¹⁵⁾ 이들 3가지의 행위방식에 관한 통일적인 용어는 최소한 독일에서 아직 문헌이나 판례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¹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점에 관한 각각의 의미내용을 발견하여 개념적으로 구조화하려는 시도는 법적인 문제점의 설명과 정돈을 쉽게 할 수 있다.¹¹⁷⁾ 경고, 추천 및 지도의 형태로 하는 국가의 정보제공작용은 일반대중의 행위유도를 목적으로 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일반대중의 의사에 대한 영향력의 강도에 따라서 개념적인 구별이 될 수도 있다.

警告(Warnung)는 가장 강력한 행위유도수단이다. 경고는 생명, 건강, 재산과 같은 법익의 보호와 법질서 전체를 유지하거나 재건하는 경우에 행사되어야 한다.¹¹⁸⁾ 이 경우에 경고는 위험방지의 수단으로 나타난다. 경고는 특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수범자가 사실상 이성적인 다른 행위방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소극적으로 형성된다. 수범자가 경고에 반하여 행위하는 경우에, 수범자는 계산될 수 없는 위험에 방치된다. 경고는 이러한 의미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이 의사결정에 대한 높은 영향은 식품법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수범자의 건강과 생명의 법익이 가장 강력하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은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114) 행정청의 이러한 행위방식은 현대국가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통적인 질서행정 법상 행위형식인 명령적 또는 형성적 행위방식외에 유도적 또는 향도적 또는 동기부여적인 조정을 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115) W.Brohm, Rechtsstaatliche Vorgaben für in formelles Verwaltungshandeln, DVBl. 1994, 133 ff.; T.Leidinger, Hoheitliche Warnungen, Empfehlungen und Hinweise im Spektrum staatlichen Informationshandelns - Zur aktuellen Stand der Diskussion in Rechtsprechung und Literatur -, DÖV 1993, 925 (926).

116) 경고, 추천 및 지도는 일부적으로 구별될 수 없는 측면도 있고, 부분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에 관하여는 Rolf Gröschner, Öffentlichkeitsaufklärung als Behördenaufgabe, DVBl. 1990, S619 ff.(620 f); Markus Heintzen, Die staatliche Warnung als Handlungsform?, in: Kathrin Becker-Schwarze u.a.(Hrsg.), Wandel der Handlungsformen, 1991, S.167 ff. 참조.

117) Gröschner(aaO., S.620) 교수는 문제점의 법적인 극복을 위하여 개념의 명확하기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18) Dolde, Behördliche Warnungen vor nicht verkehrsfähigen Lebensmittel, Rechts-gutachten, 1987, S.9; Philipp, Staatliche Verbraucherinformation im Umwelt- und Gesundheitsrecht, 1990, S.5 참조.

주기 때문에 소비자는 사실 국가의 경고조치에 다를 수밖에 없다.

행정청에 의한 제품, 기업 또는 행위방식의 推薦(Empfehlung)은 수범자에게 많은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다만, 행정청은 여러 가지의 선택가능성 중에서 하나에 대하여 고권적으로 우월성을 발표한다. 물론 행정청은 다른 행위의 가능성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는가를 설명한다. 이로써 수범자는 경고와는 달리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고와 권고를 구체적인 경우에 구별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모든 행위방식이 모두 위험하고 다만 다른 하나만이 추천되는 경우에, 이는 사실 추천이라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형성된 경고이다. 또한 위험원천이 구체적으로 개인화될 수 있는 경우에 다수의 선택사양 가운데서 하나의 권고는 역시 긍정적으로 형성된 경고이다. 이렇게 되면 수범자에게는 권고에 전형적이고 현실적인 다른 행위방식이 없게 된다.¹¹⁹⁾

行政廳의 指導(Hinweis)는 어떤 제품, 제품의 종류, 생산자 또는 행위방식을 위험원천으로서 개인화하지 않고, 특정된 정보대상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이 점에서 권고, 경고와 구별된다. 국가는 행위유도를 목적으로 지도를 한다. 그러나 국가는 지도를 받는 자에게 지정된 행위방식을 하도록 지정 하여서는 안된다. 즉, 국가는 특정된 행위방식을 지정하지 않고 특정된 행위형태 간의 효과나 원인의 관련성만 단순히 지적한다. 여기서 가능한 다른 행위방식이 관련된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지시를 받는 자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지도를 받는 자는 완전히 고유한 결정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행정청의 경고, 추천 또는 지도는 이를 받는 일반대중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속하거나 법률효과의 귀속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반대중이 행정청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행위를 유도되게 하여 사실상의 효과발생을 목표로 한다. 위험방지를 위한 국가의 정보제공활동은 결과적으로 그 법적 성질에 따라 단순-고권적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고권적 행정작용은 실제로 해당 당사자의 부담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인 국가강제력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거나 그 이상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¹²⁰⁾ 예를 들면 행정청이 건강에 위험한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대신

119) R.Gröschner, Aufklärung der Öffentlichkeit im Umweltfragen – wirtschaftspolitisches Ziel und wirtschaftsverwaltungsrechtliche Aufgabe, WUR, 1991, S.71 ff.; Fr.Ossenbühl, Zur Staatshaftung bei behördlichen Warnungen von Lebensmitteln, ZHR 1991, S.329 ff.(331); Renate Philip, Staatliche Verbraucherinformationen im Umwelt- und Gesundheitsrecht, 1990, S.5 참조.

에 소비자에게 특정된 식품의 음용시에 건강의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청의 경고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자기 스스로의 결정으로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소비자보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제품안전성 확보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의무는 담당공무원이 제품위험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이행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제공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보호법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제공권한의 행사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의 위험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행정청은 동일한 범위에서 일반대중에 대하여 당해 행정청이 직접 지도를 하거나 일반적 추천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어야 한다. 다만, 일반대중에 대한 위험이 급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경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그러나 경찰법에서 도출되는 국가공권력의 발동요건은 법적 상황이 구체적인 위험으로 충족되었다.

관할 행정청은 제품이 유통되고 난 이후에 제품에서 기인하는 위험에 피폭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적시에 적합한 형식으로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생산자에게 명령할 수 있게 하고,¹²¹⁾ 다만 행정청은 위험이 급박하여 다른 효과적인 조치, 특히 생산자의 경고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일반대중에 대하여 스스로 경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이러한 행정청의 권한 행사방식은 물론 현행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3에서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일반대중에 대한 행정청의 직접적 정보제공행위보다 해당 기업의 자발적 조치에 우선성을 부여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서 발달된 행정청의 정보제공행위가 가지는 보충성(Subsidiarität)을 입법적으로 명백히 할 수 있다.¹²²⁾

일반대중에 대한 행정청의 직접적 정보제공행위는 최후수단의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위험이 급박하고, 생산자 자신에 의하여 효과적인 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행정청은 일반대중에 대한 정보제공행위로 제품의 위험을

120) BVerwGE 71, 183 (195) = NJW 1985, 2774; W.Brohm, aaO., 133 (134); Di Fabio, aaO., 1. (6); Roth, Verwaltungshandeln mit Drittgefährdung und Gesetzvorbehalt, Diss. Konstanz 1991, S.231; Streinz/Hammerl, Lebensmittelrechts-Handbuch, 1996, III D Rdnr.262.

121) 독일 제품안전법 제8조 참조.

122) B.Trummel/S.Nolte, aaO., 2267.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 자체적인 경고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경고보다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관할 행정청은 일차적으로 생산자에 대하여, 2차적으로 판매자에 대하여 위험방지에 필요한 경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¹²³⁾

행정청의 처분방식에 보충성을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해당 기업의 경쟁자유와 재산권에 대하여 행정청의 경고가 미치는 특별한 침해의 질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보충적 경고조치는 학계와 판례에서 발전시킨 행정청의 정보제공 행위의 비례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러한 보충성은 행정청과 해당 기업간의 의사소통을 제도화하고 보장한다. 왜냐하면 행정청이 새로이 도입되는 경고조치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하여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그 기업이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자기의 경고나 기타 조치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문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생산자는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생산자와 원칙적으로 필요한 협조를 하게 하는 것은 효과적인 위험방지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생산자인 기업이 자기 제품의 일차적 판매인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의 위험방지의무가 실현될 수도 있다.¹²⁴⁾

행정청의 행위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는 비전형적인 행정작용은 추천이다.¹²⁵⁾ 행정청의 추천은 침해강도의 정도에 따라서一般的的推薦과具體的推薦간에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 추천과 구체적 추천은 법률효과에서 차이가 있고, 합법성요건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추천은 일반적 지도와 같이 소비자대중에 대한 계몽에 기여한다. 일반적 추천은 추천대상을 제품, 제품의 종류, 생산자 또는 행위방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하여 명령적이지 않다. 또한 소비자대중의 특정된 제품에 대한 구

123) 중대한 현재의 위험이 다른 방식으로는 회피될 수 없는 급박한 경우에 당해 행정청은 경찰법상 기본원칙에 따라 위법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하여 경고를 할 수 있다.

124) 제품안전법 제8조제1문은 행정청이 일반대중에 대하여 제품의 위험을 지적하는 권한을 규정하는 동시에 제한하고 있다. 제품안전법 제8조제1문은 제7조제3항과 결합하여 해석하면, 행정청은 생산자,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일반대중에게 제품위험을 지적하게 하는 행정처분의 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행정청에게는 스스로 소비자대중에 대하여 제품위험을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점에서 이전의 법적인 상황과 차이가 있다. 일반대중에 대한 행정청의 지적은 일반행정법의 원칙에 따라 수범자인 생산자, 판매자 그리고 제3자가 그들에게 부여된 의무적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만 대체적인 조치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규율은 비례의 원칙과 일치한다.

125) 독일 제품안전법 제8조는 추천형식으로 하는 행정청의 정보제공행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매포기는 행정청이 의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예측할 수도 없다. 이에 반하여 구체적 추천은 특정된 제품, 제품종류, 생산자 또는 행위방식이 소비자대중에 대한 위험원으로 개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생명과 건강과 같은 높은 법익에 대한 위험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다른 행위방식은 수법자에게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소비자에 대한 구체적 추천은 명령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 추천을 받는 소비자대중의 행위변경, 예를들면 구매포기는 행정청이 감수하거나 의도된 효과이다.¹²⁶⁾ 구체적 추천은 기업에 대한 침해가 행정청의 목적추구의 필수적 핵심이기 때문에 침해의 강도가 경고와 동일하다. 구체적 권고와 경고가 가지는 효과의 동일성은 바로 구체적 권고를 행정청이 하는 경우에 경고와 동일한 전제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반적 권고와 지도는 동일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양자는 생산자, 판매인 또는 제3자에게 행정청분으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¹²⁷⁾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할 행정청은 사업자에게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를 명령할 수 있으나, 위해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행정청은 제품안전성 확보에 의한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입법적인 흠결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보호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즉, 독일 제품안전법이 도입하고 있는 바와 같은 행정청의 경고처분, 권고처분 또는 지시처분 등에 대한 권한¹²⁸⁾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소비자보호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는 소비자제품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등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비재제품에 대하여는 이미 특별법에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의 산업사회는 끈임없이 새로운 소비자제품이 시장에 등장하고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한다. 하루가 다르게 밀려오는 소비자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다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하고, 소비자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보다 다양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안전하지 않은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일반적

126) Leidinger, DöV 1993, 925 ff. (930).

127) 행정청에게 부여된 이러한 보충성에 따른 법률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국가는 피해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B.Tremml/S.Nolte, aaO., 2265 ff. (2269 ff.) 참조.

128) 비전형적 행정작용에 대한 법원리는 金昌奎, 非定型的行政作用의 許容性과 限界에 관한 研究 - 獨逸의 理論을 中心으로 -,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7/6 참조.

권한위임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제품의 추상적 위험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권한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예방적 일반적 제품안전성 심사에 대한 의무가 행정청에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예방적인 안전성 심사는 사업자의 중요한 법익과 관련되고 비례의 원칙에 반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행정비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법에서 이미 예방적 안전 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별법속에는 예를들면 허가절차를 형태로 하는 예방적 조치는 제품의 특별한 위험성 때문에 행정청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일 때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에 행정청의 적발에 연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제품의 추상적 위험에 대한 방지조치와는 달리 구체적 위험의 발생에 대한 행정청의 권한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인 위험의 경우에 당해 제품이 소비자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된 기준에 일치한다고 행정청이 만족하여서는 안 된다. 국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①물품 및 용역의 성분·함량·구조등 그 중요한 내용, ②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③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한다. 국가가 정한 이러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위해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행정청에 필요하다.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청의 특정된 조치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¹²⁹⁾

관할 행정청은 우선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청은 다수의 가능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 효율적인 위험방지의 수단을 선택을 하여야 한다. 유통분야에서 안전하지 못한 제품에 대하여 가능한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유통되기 전에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청에게 주어 질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조치는 헌법상의 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규정되어야 한다. 즉, 행정청이 직접 소비자일반에 대하여 조치를 하기 보다는 일차적으로 행정청은 사업자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하고, 사업자가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행정청이 직접 위해방지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하게 고

129) 이러한 내용은 유럽연합의 준칙에서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독일의 법률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독일기기안전법 제6조제1항제1문).

려될 수 있는 행정청의 조치는 바로 제품위험성에 대한 경고조치명령, 권고조치명령 및 지적조치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대중에 대한 행정청의 경고는 위해가 급박하여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서만 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인 조치를 사업자에게 하게 하는 제도가 바람직한 방법이다.

(4) 行政廳의 出入權과 檢査權

행정청이 소비자제품이 법규에 합치하는가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비자제품의 제조장, 제품진열장 또는 전시장에 출입하고, 검사를 목적으로 표본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명백히 있어야 한다. 물론 현행 소비자보호법 제15조의 사업자의 소비자보호에의 협력의무에서 검사목적의 표본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안내의무도 도출될 수 있다. 행정청이 검사를 목적으로 수거한 표본에 대한 보상의 범위에 대하여서도 명백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 의무는 행정청의 안내받을 권리로 연결된다. 그러나 제조장이나 진열장 또는 창고에 출입은 도출되기에 어려움이 있다. 물론 대부분의 특별법에서는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이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품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인 행정청의 활동을 보장하는 공장·창고출입권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행정청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보호법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다.

III. 製品安全表示制度

제품안전확보의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중요한 제도적 방안은 안전마크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행 소비자보호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 현행 품질경영촉진법 제13조에 의하면 소비자가 품질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수입한 공산품을 포함한다)중 산업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이를 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의 製造者·加工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그 공산품에 품질표시기준에 의한品質表示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에 의하면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중 상업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의 제조업자·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부장관의 안

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의 기준은 공산품별로 정하여 고지되어야 한다. 안전검사의무자, 안전검사 대상공산품의 판매업자 및 안전검사 대상공산품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판매, 판매를 위한 수입·진열·보관 또는 운반이나 영업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산업부장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라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사전검사에 합격한 사전검사대상 공산품마다 합격증표를 붙여야 한다. 다만, 공산품마다 합격증표를 붙일 수 없거나 실수요자가 다양으로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공산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산품의 최소포장마다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붙일 수 있다.

위와 같은 품질경영촉진법에서는 일정한 제품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고 이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표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모든 소비자제품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게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충분한 안전성을 가진 제품이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선택되지 위하여 임의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차단되어 있다. 그러므로 특정된 제품에 대한 의무적 검사와 그 표시이외에 모든 제품도 제조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표시를 제품에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을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기 보다는 품질경영촉진법에 도입하는 것이 적합하다.

第5章 맷는 말

일반적인 소비자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 함은 이미 누차 언급되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비자제품이 시장에 등장하는 현실과 이 제품들의 결합으로부터 소비자는 폭로되어 있는 현실은 입법권의 입법형성권을 일반적인 소비자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헌법은 명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소비자제품에 대하여는 개별법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입법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법으로 증대하는 소비자제품의 모두를 규제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개별법이 규제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반법이 필요하다. 이 법률은 제품안전에 관한 일반법이기 때문에 이 법률의 제정 이전에 이미 개별적인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의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 제품안전성의 확보와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이 없는 독일의 경우에는 제품안전법을 새로이 제정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한국은 우선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보호법이 제품의 일반법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소비자보호법을 보완하는 방향이 법률의 홍수를 방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우선 안전한 제품만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생산자와 판매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최소한의 소비자보호수준을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소비자보호법의 목적조항에서는 이미 많은 부분 소비자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내포하고 있다. 제품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제도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이미 소비자보호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품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가 추구하는 제품안전의 최소한에 대한 요구사항은 소비자보호법의 목적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제품안전확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소비자보호법 제1조 목적조항에 "... 기본적 사항과 최소한의 소비자보호수준을 규정함으로써 ..."로 개정하면 제품안전성 확보의 목적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될 수 있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은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은 사업자를 정의하면서 판매하는 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고 제품의 유통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에 골동품과

수선되어 재사용되는 제품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물품의 성질상 특히 공동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안전성과는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소비자제품은 원칙적으로 사용함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와 관련되나, 골동품의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래적인 용도와는 거리가 있고, 장기간의 시간경과로 인하여 물품의 생산당시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골동품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예외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소비자보호법에 특별법으로 재정경제부가 소비자보호법으로 관할할 수 없는 분야를 명백히 할 필요성이 있다. 관할의 명백화는 효율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나의 행정청에게만 관할권을 주는 데에 기여한다. 특정된 제품의 소비자보호와 제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일 행정청에 집행권을 집중하는 것은 인력과 비용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낭비에 대한 예로는 다수의 행정청에 의한 상이한 안전판단에 의하여 행정청간의 마찰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결국 행정청은 소비자보호법과 개별법률을 소비자보호의 목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소비자보호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별법률에서도 중요하다.

안전한 제품만을 유통시킬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사실 소비자보호법의 핵심인 동시에 제품안전법제의 핵심규정이기도 하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은 수범자를 명백하게 사업자로 함으로써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하고 있다. 물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데에 관여한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책임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제품의 안전성확보에 보다 많이 기여할 수도 있으나, 각자에게 책임영역이 명백하게 설정되지 않으므로서 실제적으로는 책임이행을 상호에게 전가시킬 위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물품의 성질상 판매자에게 부여될 수 없는 책임이 판매자에게 부과됨으로써 판매자측에서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치국가에 기초하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책임의 부여는 위헌적인 법률로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소비자보호법에서 제2조의 정의에서 사업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하의 모든 법률규정에서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보다는 물품의 제조사와 판매자를 구별하여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3에 규정하고 있는 행정청의 물품 수거·파기 요청권과 수거·파기권은 예외규정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즉,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가 급박하여 사업자에게 수거·파기를 명령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관할 행정청이 직접 수거·파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

므로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3제3항에 단서 규정을 두어 위해가 급박하고 직접적인 경우에 행정청이 직접 수거·파기할 수 있는 예외규정의 삽입이 필요하다.

제품의 위험을 일반대중에 알리기 위하여 행정청이 직접 정보제공행위를 하는 권한도 고려할 수 있다. 경제적 분야에서 행정청의 행위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는 비전형적인 행정작용을 소비자제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제도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 고려될 수 있는 행정청의 권한으로 경고권, 추천권 및 지도권 등이다. 이러한 행정청의 권한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요청되는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기 위하여 행정청은 제품의 제조사·판매자에게 일차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고,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행정청이 직접 소비자대중에 대하여 이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할 행정청은 사업자에게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를 명령할 수 있으나, 위해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행정청은 제품안전성 확보에 의한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입법적인 흠결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보호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밀려오는 소비자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다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하고, 소비자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보다 다양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안전하지 않은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일반적 권한위임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제품의 추상적 위험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권한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예방적 일반적 제품안전성 심사에 대한 의무를 행정청에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청은 다수의 가능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 효율적인 위험방지의 수단을 선택을 하여야 한다. 유통분야에서 안전하지 못한 제품에 대하여 가능한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유통되기 전에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청에게 주어 질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조치는 헌법상의 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규정되어야 한다. 즉, 행정청이 직접 조치를 하기 보다는 일차적으로 행정청은 사업자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하고, 사업자가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행정청이 직접 위해방지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는 행정청의 조치는 바로 제품위험성에 대한 경고조치명령, 권고조치명령 및 지적조치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대중에 대한 행정청의 경고는 위해가 급박하여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서만 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에 대

하여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인 조치를 사업자에게 하게 하는 제도가 바람직한 방법이다.

소비자제품이 법규에 합치하는가를 심사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청에게는 소비자 제품의 제조장, 제품진열장 또는 전시장에 출입하고, 검사를 목적으로 표본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행정청이 검사를 목적으로 수거한 표본에 대한 보상의 범위에 대하여서도 명백한 규정이 필요하다. 검사목적에 기인하는 사업자의 수거수용의 의무는 행정청의 정보요청권과 연결된다. 그러나 행정청의 정보요청권에 근거하여 제조장이나 진열장 또는 창고에 출입권이 도출되기에 어려움이 있다. 물론 대부분의 특별법에서는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이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품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인 행정청의 활동을 보장하는 공장·창고출입권이 추가되어야 한다.

제품안전확보의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중요한 제도적 방안은 안전마크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행 소비자보호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품질경영촉진법에서는 일정한 제품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고 이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표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모든 소비자제품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게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충분한 안전성을 가진 제품이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선택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차단되어 있다. 그러므로 특정된 제품에 대한 의무적 검사와 그 표시이외에 모든 제품도 제조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표시를 제품에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을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기 보다는 품질경영촉진법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부 록」

I . 유럽聯合의 製品安全準則과 부속서

1. 유럽연합의 제품안전준칙

제1장 (목적-효력범위-정의규정)

제1조

- (1) 이 준칙의 목적은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있다.
- (2) 유럽연합의 법규정의 범위내에서 해당제품의 안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 준칙이 적용된다.

유럽연합의 특별한 법규범이 특정된 제품에 대한 안전요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특히 제2조, 제3조 그리고 제4조는 해당제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유럽연합의 특별한 법규범이 해당제품의 안전에 관한 특정된 관점이나 해당제품의 위험범주만을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이 규정은 해당된 특정된 안전관점이나 또는 위험성관점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제2조

이 준칙의 의미에서

- a) "제품"은 그것이 새거거나, 중고거나 또는 재사용되었거나에 관계없이 소비자용으로 특정되거나 소비자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영업활동의 범위내에서 공급된 모든 제품이다. 단, 이러한 준칙은 공급자가 골동품으로써 또는 사용전에 수리되거나 개수되어야 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에 제품공급자는 전달받은 사람에게 이에 관한 명백한 사안을 설명하여야 한다.
- b) "안전한 제품"은 아래의 측면을 고려하여 통상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하게 사용할 때에 사용기간을 포함하여 제품사용과 합치될 수 있으며 공동체와 사람의 안전에 대한 높은 보호수준의 유지에 위해가 없거나 또는 아주 경미하여 수용될 수 있는 모든 제품이다.
 - 제품의 특성, 특히 제품의 구성, 포장, 조립의 조건, 정비
 - 다른 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경우에 다른 제품에 대한 영향
 - 개봉, 상표부착,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지침과 이용지침 그리고 폐기방법 뿐만 아니라 생산자측면에서 기타의 사항 또는 정보
 - 제품의 사용시 중대한 위험에 폭로된 소비자의 집단, 특히 어린이.

높은 안전수준에 달성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적은 다른 제품의 사용가능성은 제품을 안전하지 않는 것으로 또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아니다.

- c) “위험한 제품”이란 b)에 따라 안전한 제품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는 모든 제품이다.
- d) “생산자”란
 - 유럽연합내에 사무소를 두고, 제품의 생산자와 제품에 이름, 상표 또는 다른 구별표시를 함으로서 생산자로서 등장하는 모든 사람 또는 제품을 재제조하는 사람이다.
 - 사무소를 유럽연합내에서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 생산자대리인 또는 생산자대리인이 유럽연합내에서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품의 수입업자
 - 그의 행위가 시장에 유통된 제품의 안전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에서 판매의 각 단계에 있는 기타 사업자
- e) 판매자는 그의 행위가 시장에 유통된 제품의 안전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든 판매사업자이다.

제2장: 일반적 안전의무

제3조

- (1) 생산자는 안전한 제품만을 시장에 유통시켜야 한다.
- (2) 생산자는 각각의 영업활동분야에서
 -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거나 또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예측가능한 사용기간 동안 제품에서 발생하는 위해와 적합한 경고지시 없이는 직접 인식할 수 없는 위해를 판단하여 이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경고지시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 준칙의 기타의 안전요구의 준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생산자가 제품에서 나오는 위해를 인식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생산자에 의하여 공급된 제품의 특성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해당 제품의 회수를 포함하는 위험회피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된 조치는 합목적인 범위내에서 예를 들면 동일성의 측면에서 제품표시나 또는 제품발송표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무작위표본검사의 실행, 이의제기에 대한 조사 및 이러한 감독조치에 대한 판매인에게 통보를 포함한다.
- (3) 판매인은 그가 알지못하거나 또는 그에게 주어진 정보에 의거하여 일반적 안전성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거나 알게 되었을 때는 해당제품도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자에게 부여된 일반적인 안전성의무의 준수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심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각각의 영업활동분야에서 판매인은 특히 제품에서 발생하는 위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이러한 위해의 회피를 위한 조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선 시장에서 발견될 수 있는 제품의 안전성감시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제4조

- (1) 제품에 대한 안전성요구가 공동체의 특별한 법규정으로 규율되지 않는 경우에, 이것이

제품의 유통에 대한 건강상 요구와 안전상 요구에 관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특별한 법규 정에 합치하면 이 제품은 안전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유럽연합 회원국의 특별한 법규 정은 특히 유럽연합조약 제30조와 제36조와 일치하는 특별한 법규정이다.

- (2) 제1항의 의미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제품의 일반적 안전요구에 합치여부는 유럽연합의 규범을 전환한 자국내의 구속력없는 규범, 유럽연합의 어떠한 기술적 특수 성 또는 제품이 유통되는 회원국가의 규범, 건강과 안전분야에서 존재하는 관련분야의 행동규약을 고려하거나 지식의 수준, 소비자가 당연히 기대하는 기술과 안전에 의거하여 평가된다.
- (3) 어떤 제품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합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하다는 것이 판명되면, 회원국의 관할 행정청은 해당제품을 시장에 유통 시기는 것을 제한하거나 또는 시장으로부터 회수를 요청하기 위한 합목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회원국의 의무와 권한

제5조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생산자와 판매자가 이 준칙상의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만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회원국은 특히 안전한 제품만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의무와 그 제품의 합치여부를 감독하는 특별한 행정청을 신설하거나 지명하여야 하고, 이 행정청에 이 준칙에 반하는 행위시에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여 이 준칙의 의미에서 적합한 조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가에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유럽연합 위원회에 해당 행정청을 신고한다.

제6조

- (1) 제5조에 근거하여 회원국은 위험의 정도에 합치하여 그리고 특히 유럽연합조약 제30조와 제36조와 합치하여 적합한 조치를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다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 안전한 제품으로 시장에 유통된 이후에도 사용과 소비의 최종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적절한 범위내에서 그 제품의 안전특성을 심사할 목적으로
 - 모든 관계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요구할 목적으로
 - 안전심사의 측면에서 제품이나 동일종류 제품의 샘플을 검사할 목적으로
 - 제품유통의 전제조건을 목적으로, 이것의 안전을 목적으로 그리고 제품에서 나오는 위험에 대하여 적합한 경고조치를 요구할 목적으로
 - 제품의 위험에 폭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이 적시에 특별한 경고를 하는 등 적합한 방식으로 해당 위험을 알리게 할 목적으로

- f)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하고 일치하는 징후가 존재하는 때에는 적합한 심사에 필요한 기간동안에 관련된 제품이나 또는 동일종류 제품의 공급, 전달 또는 전시를 잠정적으로 금지할 목적으로
 - g) 위험한 제품이나 또는 동일종류의 제품의 유통금지를 목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금지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추가적 보완조치의 확정을 목적으로
 - h) 이미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나 동일 종류 제품의 철회와 필요한 경우에 적합한 조건하에서 이러한 폐기를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조직화할 목적으로
- (2) 이 조항에 근거하여 회원국의 관할 행정청에 의한 조치는 각각 다음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 a) 생산자
 - b) 각각의 업무활동범위에서 판매자와 특히 국내시장에서 유통 최초 판매단계의 책임자,
 - c)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으로 입증되면 제품의 위험회피를 위한 조치에 대한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모든 다른 사람.

제4절: 통지와 정보교환

제7조

- (1) 회원국은 제품이나 또는 동일종류 제품의 유통을 제한하거나 또는 제6조제1항제d) 내지 제h)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회수를 명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 회원국은 통지의무가 특별히 유럽연합의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에서 이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유럽연합위원회에 통지한다. 이러한 의무는 해당조치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회원국내의 지역적으로 제한된 영향만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 유럽연합의 이 위원회는 즉시 관계 당사자와 협의를 한다. 이 위원회가 관련된 당사자와 협의후에 그 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면, 위원회는 즉시 해당조치를 할 회원국과 다른 회원국에 통지한다. 이 위원회는 이러한 조언후에 그 조치가 정당하지 않다고 확정하면, 즉시 조치를 받은 회원국에 통지한다.

제5절: 비상사태와 유럽연합지역에서의 조치

제8조

- (1) 해당 제품이나 또는 해당되는 동일종류의 제품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하여 진지하고 직접적 위험을 야기하기 때문에 회원국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자기의 국내에서 해당 제품이나 또는 동일종류 제품의 유통이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또는 특별한 조건을 첨부하는 즉각적 조치의 도입을 결정하면, 당해 회원국은 이를 즉시 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이 의무는 유럽연합의 다른 법률행위의 분야에서 동일한 종류의 절차에 근거하여 규정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 위험의 영향이 해당 회원국의 영토를 유월하지 않거나 유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존

재하지 않는다.

제1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결정을 하기 전에 진지하고 직접적인 위험의 존재에 관한 회원국이 소유한 정보를 유럽연합 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 (2) 이 정보를 받은 경우에 위원회는 해당 정보가 이 준칙과 합치하는가를 심사하고, 기타의 회원국에 이 정보를 전달한다. 기타의 회원국은 취한 조치를 위원회에 즉시 통보한다.
- (3) 이 조항에 의한 유럽연합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절차규율은 부속서에서 규정된다. 위원회는 제11조의 절차에 따라 이 절차의 개별적인 사항을 따른다.

제9조

위원회가 통지방식으로 회원국이나 또는 회원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로, 특히 제7조와 제8조에 의하여 1개 회원국 이상에 있는 제품에 기인하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진지하고 직접적인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

- a) 하나 또는 다수의 회원국이 제6조제1항 d) 내지 h)의 의미에서 해당 제품의 유통제한 또는 시장으로부터 회수명령을 하는 경우에
- b) 회원국간에 이러한 위험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에 견해차이가 있는 경우에
- c) 제품안전문제의 종류면에서 해당 제품이나 해당된 제품군에 관한 관련 유럽연합법규의 절차에 따라 문제의 긴급성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위험이 극복될 수 없는 경우에
- d) 위험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보장의 확보와 전체 공동시장의 적합한 기능의 보장에 적합하고 유럽연합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조치에 의하여서만 적절하게 극복될 수 있는 경우에

위원회는 회원국의 청문후 그리고 제11조의 절차에 따라 최소한 이 들 국가중의 한 국가의 신청으로 제6조제1항d) 내지 h)에 따라 적합한 잠정적인 조치의무를 회원국에게 부담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0조

- (1) 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고 위원회의 대표가 의장직을 수행하는 제품안전비상사태 협의회(다음부터는 "협의회"라고 한다)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 (2) 제9조c)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서 언급된 협의회와 유럽연합의 특별법규에 의하여 설치되고 해당 제품의 건강과 안전측면에 대한 심의시 위원회를 지원하는 기타의 협의회들은 긴밀하게 협력한다.

제11조

- (1) 위원회의 대표는 취하여져야 하는 조치의 초안을 협의회에 제출한다. 협의회는 제9조의 조건이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사전심사후 이러한 초안에 대하여 회장이 관련된 문제

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확정할 수 있는 기간내에, 그러나 1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이 초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여야 한다. 의견제시는 유럽연합 조약 제148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제안으로 이사회 결정의 수용에 관하여 규정된 다수로 행하여진다. 협의회에서의 표결시에 위에서 언급된 조항에 의한 회원국의 대표자의 투표는 계산되지 않는다. 협의회의 회장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협의회의 의견제시와 일치하는 경우에 의도된 조치를 한다. 의도된 조치가 협의회의 의견제시와 일치하지 않거나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 위원회는 이사회에 즉시 관련된 조치에 대한 제안을 한다. 이사회는 과중된 다수로 의결한다.

이사회가 결정이후 15일의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어떠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사회가 단순 과반수로 위에서 언급한 조치에 반대하지 않으면 위원회에 의하여 제안된 조치가 발하여진다.

- (2)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발하여진 조치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이 조치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연장될 수 있다.
- (3) 회원국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발하여진 결정을 10일 이내에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 (4) 이 절차에 따라 관련된 조치를 하는 회원국의 관할 행정청은 1월 내에 관계 당사자에게 의견표명의 기회를 주고 이에 관하여 위원회에 통지한다.

제12조

회원국과 위원회는 안전상 중요한 제품특성에 관한 특정된 정보가 사람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하여 全體狀況을 고려할 때에 공개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 준칙에 근거하여 수집되고, 그 속성상 영업비밀에 속하는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 의무를 공무원에게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6절: 기타 그리고 결정규정

제13조

이 준칙은 유럽연합준칙 85/374/EWG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4조

- (1) 제품유통을 제한하거나 시장으로부터 회수를 명령하는 결정으로서 이 준칙에 근거하는 모든 결정은 이에 적합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관련된 당사자에게 자체 없이 송달되어야 한다. 이 결정은 동시에 관계 회원국의 법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 구제방법과 이 권리구제방법에 적용되는 기한에 관하여도 명시하여야 한다.
관계자에게 가능한 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특히 취하여지는 조치의 긴급성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이 결정을 한 이후 주어진 기간에 수령자에게 의견표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시장으로부터 회수를 명령하는 경우에 이 명령의 실행시에 판매인, 이용자 및 소비자에게 협력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 (2) 회원국은 제품의 유통을 제한하거나 시장으로부터 회수명령하는 행정청의 결정에 대하여 관할 법원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3) 제품의 유통을 제한하거나 시장으로부터 회수명령하는 이 준칙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는 결정은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당사자의 책임에 대한 자국내의 형법적인 심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15조

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의회와 이사회에 이 준칙이 제정부터 계산하여 매 2년마다 그 실시에 관하여 보고한다.

제16조

유럽연합 이사회는 제17조제1항에서 규정된 날로부터 4년후에 그 간의 경험에 관한 위원회의 보고에 의거하여, 이 준칙의 적합성, 특히 제1조제1항 그리고 제2조a)에서 규정된 적용분야의 확장측면에서 제5절 규정의 개정 등에 관하여 결정한다.

제17조

- (1) 회원국은 늦어도 1994년 6월 29일 이 준칙에 따르기 위하여 필요한 법규명령과 행정 규칙을 제정한다. 회원국은 지체없이 위원회에 이에 관하여 알린다. 제정된 규정은 1994년 6월 29일부터 적용될 수 있다.
- (2) 회원국이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제정하면, 규정 자체나 또는 공포시에 지시에 의하여 이 준칙을 인용한다. 회원국은 인용에 관한 개별적인 사항에 관하여 규율한다.
- (3) 회원국은 위원회에 이 준칙의 적용지역에서 제정한 국내법의 조문을 송부한다.

제18조

결정 89/45/EWG는 제17조제1항에서 규정된 시점으로 폐지된다.

제19조

이 준칙은 회원국에 적용된다.

2. 부속서

제8조에 의한 정보의 신속한 교환을 위한 공동체시스템의 실행의 세부적 절차규율
(Detaillierte Verfahrensregeln zur Durchführung des Gemeinschaftlichen Systems zum raschen Austausch von Informationen gemäß Artikel 8)

1. 이 시스템은 이 준칙 제2조제a)목의 의미에서 시장에 유통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유럽연합 준칙 75/319/EWG와 81/851/EWG의 효력범위에 있는 의약품, 유럽연합 준칙 82/894/EWG의 효력범위에 있는 동물, 유럽연합 준칙 89/662/EWG의 효력범위에 속하는 한 동물을 원료로 하는 제품 그리고 제품의 광범위한 오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시스템 등은 이 규율의 예외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같은 통지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이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진지하고 직접적인 위험시에 신속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어떠한 위험이 진지하고 직접적인 특성인가에 관한 정확한 척도는 확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개별국가의 관할 행정청은 모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인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준칙 제8조는 소비자에 의한 제품사용시에 직접적인 위해와 관련되므로, 준칙이나 또는 규범에 의한 기술적 개정에 대한 심사의 필요성이 있는 장기간 경과한 후에 위해발생의 가능성 있는 제품은 제외된다.
3. 진지하고 직접적인 위해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즉시 개별국가의 행정청은 - 가능하고 무리가 되지 않는 한 - 관련된 제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생산자나 판매자 및 개별국가의 행정청이 통보한 입장과 개별사항은 회원국의 행정부와 유럽연합의 위원회가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데에 그리고 영업활동에 대한 최소의 침해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에 근거로서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회원국은 필요한 연속작업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고 그 제품과 위험의 종류에 관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얻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4. 회원국은 자국의 영토를 넘어가거나 또는 넘어갈 수 있는 진지하고 직접적인 위험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결정을 하게되면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한다. 회원국은 이에 관한 통지시에 이 준칙 제8조에 의하여 위원회에 통지하였다는 것을 알린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관한 정보도 보고되어야 한다. 특히
 - a) 제품의 정체성에 관한 사항
 - b) 위험정도의 확정에 중요한 테스트나 분석의 결과
 - c) 관련된 또는 결정된 조치의 종류
 - d) 가능한 경우에 판매과정에 관한 정보이러한 정보는 서면으로, 텔레스 또는 팩스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전에 전화로 보고를 받을 수도 있다. 여기서 신속한 정보전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

5.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경우에 따라서 취하여질 수 있는 조치의 결정전에 위원회에 정보를 줄 수 있다. 위해가 발견되거나 추측되는 경우에 회원국과 위원회는 신속한 접촉을 함으로써 예방조치를 쉽게 할 수 있다.
6. 회원국이 신속한 특정된 정보를 신뢰하면, 이를 지시하여 신뢰성있는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여기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의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신뢰성판단에 우선한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제품이나 또는 제품계열의 신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불필요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조치가 위원회와 개별회원국의 관계 네트워크 담당자에 의하여 취하여진다는 점이 기억되어야 한다.
7. 위원회는 이 준칙 제8조와 얻은 정보와 합치를 심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보하는 국가와 관계를 맺어 텔레스나 팩스로 지체없이 정보를 다른 회원국의 관할 행정청에 전달하고, 상설 대표에게 사본을 송부한다; 이 행정청은 동시에 전화로 전달받을 수도 있다. 또한 당해 위원회는 필요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제품의 추측되는 원산지와 접촉할 수도 있다.
8.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동시에 받은 정보의 보충을 위하여 특수한 상황하에서 독자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고 또는 이 준칙 제10조제1항에서 규정된 제품안전비상사태 협의회를 소환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회원국은 위원회에 요구받은 정보를 가능한 한 전달하여야 한다.
9. 다른 회원국은 다음에 관하여 가능한 한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받는다.
 - a) 그 제품이 그 국가에서 유통되었는가의 여부
 - b) 해당 위험에 대한 회원국의 추가적 정보, 우선 위험의 정보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행되는 그 제품의 테스트나 또는 분석의 결과가 포함된다.기타의 회원국은 항상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다음에 관한 정보를 통보한다.
- c) 이 준칙 제8조제1항에 의한 파악된 또는 결정된 조치
- d) 조치가 취하여 지거나 결정됨이 없이 정보 속에서 언급된 제품이 그 국가의 영토에서 발견된 시점과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이유.
10. 위원회는 결과에 대한 태도표명과 관련된 조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9호에 의하여 회원국가가 전달한 정보와 사항의 진행에 따라 제품안전비상사태 협의회를 소환할 수 있다. 제품안전비상사태 협의회는 회원국 대표자의 청원에 의하여 소집될 수도 있다.
11. 위원회는 내부적 협력절차에 관하여 다음의 사안을 위하여 노력한다.
 - a) 통보작업시 중복작업의 회피
 - b)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경험을 최대한 이용
 - c) 관련된 업무수행기관에 관한 완전한 정보제공
 - d) 이 준칙 제10조에 의하여 개별 협의회에서의 조언의 실행
12. 회원국이 즉시조치와 관계없이 진지하고 직접적인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 특수성의 의결에 의한 법규의 개정을 의도하면, 이것은 준칙 83/189/EWG에 의하여 이미 초안의 단계에서 위원회에 통보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준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이유가

기재되어 통보된다.

13. 제품안전비상사태 협의회는 상황파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도달한 모든 통지와 이에 합치하는 결과조치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통지를 받는다. 제8호와 제10호의 측면에서 그리고 특별한 제품이나 제품부문에 관한 유럽연합의 법규에서 확정된 절차나 또는 협의회의 효력범위에 속하는 경우에 이 협의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품안전비상사태 협의회가 관여하지 않아서 제11호제d)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담당관청은 다른 협의회에서의 모든 의사교환에 관한 통지를 받게 된다.
14. 현재로 식량과 식량의의 제품에 관한 네트워크로 된 2개의 접촉 담당 부서의 네트워크가 있다. 전화번호, 전신번호, 팩스번호 그리고 주소를 기재한 접촉담당부서와 네트워크 관할 관청의 명부는 비밀로 하고 네트워크의 회원에게만 배부될 수 있다. 이 명부는 개별적인 항목에 관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그리고 회원국간에 접촉을 가능하게 한다. 회원국간의 연결시 일반적인 이익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면, 상호접촉을 하는 회원국은 위원회에 이에 관하여 보고한다. 회원국의 접촉담당부서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또는 확인된 정보만이 신속한 정보교환을 위한 시스템 분야에서 들어오게 된다. 위원회는 매년 네트워크의 효율성, 필요한 개선 그리고 실행을 위임받은 기관상호간의 연결기술의 목표한 발전에 관한 계획서를 수립한다.

II. 독일 제품안전법과 입법이유 등

1. 독일 제품안전법(제품의안전성요구에대한규율과CE마크의보호에관한법률 : Gesetz zur Regelung der Sicherheitsanforderungen an Produkte und zum Schutz der CE-Kennzeichnung : Produktsicherheitsgesetz - ProdSG)

제1절: 일반적 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률의 목적은 유럽연합의 경제영역에서 동일한 경쟁조건을 수립하는 분야에서 다음을 실현하는 데에 있다.

1. 생산자와 판매자가 이미 다른 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한에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만을 개인의 사적이용에 제공하고
2. CE-표기는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에만 사용되게 하는 데에 있다.

제2절: 제품안전

제2조 (적용범위)

- (1) 이 절의 규정은 다음의 모든 제품의 사용에 적용된다.

1. 소비자에 의하여 사적인 이용이 특정되어 있거나 또는 일반적 거래관행에 따라서 이용되는 모든 제품
 2. 영업상 또는 수익상 유통되는 모든 제품.
- (2) 이 절의 규정은 사용된 제품이 다음의 것을 제외하고 유통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1. 골동품으로 된 제품 또는
 2. 골동품으로 제품을 넘긴 자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러한 것을 설명한 경우에 그 사용전에 수리되거나 또는 보수가 되어야 하는 제품.
- (3) 이 절은 다음의 법률과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의 규율을 받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a) 약품법
b) 유전공학법
c) 건축물법
d) 의료제품법
e) 에너지경제법
f) 항공법
 2. 이 절의 경고와 리콜에 관한 규정은 예외로 한다
a) 식품법
- 성분특성면에서 생필품 -,
b) 포도주법률
c) 고기위생법률
d) 가금류위생법률
e) 화학법률
f) 농약법률
g) 기기안전법률
h) 도로교통법률
i) 무기법률
j) 폭발물법률
- 제2항제2호에 규정된 법률의 집행을 관할하는 행정청은 이 절의 제8조와 제9조에 의한 경고와 리콜에 관한 규정을 집행한다; 제2항제2호f)의 경우에 관할 행정청은 연방생물농임업청(Biologische Bundesanstalt für Land- und Forstwirtschaft)이고, 제2항제2호h)의 경우는 연방동력청(Kraftfahrt-Bundesamt)이다.
- (4) 제3항에서 규정된 제품과 다른 제품에 대하여 특정된 안정요구가 적용되는 한에서, 이 안정요구는 이 절의 규정에 우선한다. 특정된 요구가 최종적인 안전검사를 가능하게 하지 않는 한에서도, 이 절의 실행을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가능한 위험면에서 이 제품을 감시하는 것은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행정청에게 부여되어 있다. 주가 이를

실행하는 데에 관할권을 가지는 한에서 주는 이와는 다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5) 이 절의 실행은 아래의 행정청에는 각각의 전문적 관할범위에 제한된다:

1. 전기통신분야의 연방허가청,
2. 연방 물리-기술소
3. 연방 물질연구·심사소
4. 연안선박운항업무법 또는 해양업무법의 실행을 관할하는 행정청 또는 이외의 기관.

제3조 (定義: 생산자, 유통자, 판매자)

(1) 이 법률에서 생산자는 영리 또는 사업상

1. 제품을 생산하는 자 또는
2. 그의 행위가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범위에서 제품을 유통시키는 자.

영업 또는 사업수행의 분야에서 이름, 상표 또는 다른 제품과 구별하는 표시를 함으로써 생산자와는 달리 제품을 반출하거나 또는 제품을 재작업하는 모든 자는 생산자로 본다. 생산자나 제2문에 의하여 생산자로 간주되는 자가 사무소를 유럽연합내에서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의 회원국내에 두고 있으면, 생산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유럽공동체내에서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의 다른 회원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으면 그 제품의 수입업자가 생산자로 간주된다.

(2) 이 법률의 의미에서 유통이란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다.

(3) 이 법률에서 판매자는 그의 행위로써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영업상 또는 업무상 제품을 유통시키는 자이다.

제4조 (생산자의 의무)

(1) 생산자는 제품이 안전한 경우에만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다.

(2) 생산자는 사업행위의 분야에서

1. 소비자에게 처음으로 제품을 유통시킬 때에 통상적 또는 예상되는 사용기간 동안에 제품에서 발생하는 위해를 판단하여 이에 대한 보호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제품에서 나오는 위해를 알고 이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제품의 특성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은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도 적용된다.

제5조 (판매자의 의무)

판매자는 안전한 제품만을 유통하는 데에 기여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특히 다음의 제품을 유통시켜서는 안된다

1.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제품 또는
2. 그에게 있는 정보 또는 활동에 근거하여 판매자로써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제품.

제6조 (안전한 제품)

- (1) 제품이 안전한 것은 통상적 또는 예상되는 사용기간 동안에 법규에 합치하거나 또는 예상되는 사용을 할 때에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1. 현저한 위해,
 2. 사용의 종류와 합치하지 않는 위해 그리고
 3.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술규범의 준수시에 충분하지 않는 위해가 제품에서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제품이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이나 유럽경제공동체의 다른 회원국의 동일한 내용수준을 가지는 규범이나 기술규범 또는 요구에 합치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술규범은 보전된다.
- (2) 제품의 안전성 판단은 특히 다음에 까지도 미친다
1. 제품의 합성, 포장, 조립방법서 그리고 정비를 포함하는 제품의 특성
 2. 제품이 다른 제품과 같이 사용될 것이 기대되는 한에서 다른 제품에 대한 영향,
 3. 전시, 판매에서 개봉, 표시, 사용·폐기·기타 생산자에 의한 주의나 또는 정보에 대한 설명,
 4. 제품의 사용시에 다른 제품보다 커다란 위험에 놓이는 특별한 소비자집단, 특히 아동.

제7조 (관할 행정청의 권한)

- (1) 관할 행정청(주무관청)은 제품이 제6조의 의미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가능한 위해의 범위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구체적인 위해가 제품에서 발생하면 안전요구에 관한 중요한 법규정, 기술규정 또는 기술수준에 중요한 기술시방서에 합치하는 제품에 대하여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주무관청은 특히, 다음의 경우에 권한을 가지고 있다
1. 안전하지 않는 제품의 유통금지,
 2. 제품이 안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는 한, 제품의 검사에 필요한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제품의 유통금지, 또는
 3.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이 특정된 조치에 의하여 보장되거나 또는 제품에서 나오는 위험에 대한 적절한 경고조치가 있는 경우에 제품이 처음으로 유통된다는 것을 명령하는.
- (3) 주무관청은 각각의 필요성에 맞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다음의 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다
1. 생산자에게,
 2. 각각의 영업행위의 분야에서 판매자, 특히 국내시장에 처음 경영단계의 책임자에게, 또는

3. 현재의 중대한 위험이 다른 방식으로 방지될 수 없는 한에서 기타 모든 사람에게.
제1문제3호의 경우에 피해가 사람에게 발생하면, 이러한 피해는 다른 방식으로 대체될
수 없거나 또는 조치에 의하여 자산이 보호될 수 없으면, 보상되어야 한다.

제8조(안전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경고)

주무관청은 제품의 유통이후에 제품에서 나오는 위험에 폭로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형식으로 특히, 생산자로부터 정보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한 위험시에 다른 효과적인 조치, 생산자에 의한 특별한 경고가 취하여 질 수 없는 경우에, 관할 행정청은 스스로 일반대중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은 여기에 준용된다.

제9조(안전하지 않는 제품의 리콜)

주무관청은 현재 유통되고 있으나 안전하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회수를 명령할 수 있고, 그 제품을 압수할 수 있고, 소비자에 대한 위험이 다른 방식으로 배제될 수 없는 한에서 폐기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제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방지가 생산자 또는 판매자의 적절한 조치로 보장되면, 관할 행정청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제10조 (州法상 규율)

건강상 위험에 대한 사전배려에 기여하고 식품법, 포도주법, 고기위생법 또는 가금류위생법 또는 이들 법률에 근거하는 법규명령의 규율을 받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고와 회수에 관한 기타 州法上의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1조 (정보와 확인)

- (1)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사람은 요구가 있으면 주무행정청에게 의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 이들은 특히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하여 주무행정청에 의하여 명하여진 조치를 실행하거나 또는 이러한 조치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이 의무자는 자기 스스로 또는 형사소추의 위험 또는 질서위반법(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에 의한 소추절차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민사소송법 제38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에게 답변이 요구되는 문의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의무자는 정보제공거부권을 명시하여야 한다.
- (2) 주무관청의 담당자는 제품이 생산되는 공간 또는 토지, 제품의 유통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되는 공간이나 토지에 출입하고, 제품조사하고 심사할, 특히 유행되게 할 권한이 있다. 주무관청의 담당자는 샘플을 채취할 수 있고, 넘겨받을 수 있다; 여기서 동일한 종류이고 동일 제품의 절반은 생산자에게 남겨져야 한다. 제7조제3항제1문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1문과 제2문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주무관청의 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범위에서 주거불가침에 대한 기본권(기본법 제13조)은 제한된다.
- (3) 이 절에 의한 주무관청의 감독목적으로 수거된 샘플은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개별적인 경우에 불공정한 피해가 발생하면 판매가격까지 보상될 수 있다.

- (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서 수건된 개인정보는 이 법률의 집행 또는 범죄행위의 소추 또는 공적 안전에 대한 위험의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제12조 (통보와 정보)

- (1) 이 절의 집행을 담당하는 주문관청과 연방과 주의 기타 관공서는 상호간에
1. 이 절의 집행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리고
 2. 각각의 관할 영역에 관한 이 절의 규정에 대한 위반과 위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자체없이 통보하고 조사행위시에 지원하여야 한다.
- (2) 행정청이 이 절에 근거하여 제품의 유통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일반적 제품안전에 관한 1992년 6월 29일의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92/59/EWG)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유럽연합위원회의 통지가 필요하면, 당해 행정청은 이유를 명시하여 연방에 위하여 지적된 관공서에 통보한다.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보절차이후 개인정보가 전달되는 경우에, 이 정보는 이 절의 집행을 위하여서만 사용될 수 있다. 이 정보가 다른 목적을 위하여도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서도 전달될 수 있는 경우에 제한된다.
- (4) 자세한 내용은 연방정부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은 법규명령에 의하여 규정된다. 여기서 법규명령은 특히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상호간의 통보절차를 규정한다. 연방경제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로써 이에 관한 일반적 행정규칙을 제정 할 수 있다.

제13조 (제품안전에 관한 명령의 제정을 위한 연방정부의 권한)

- (1)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제1조제1호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한 유럽연합의 법률행위의 집행을 위하여 이 법률의 사안영역을 결정할 수 있고, 국가간의 합의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법규명령으로써 제품의 안전요구와 유통 또는 전시를 위한 기타의 요건, 특히 심사, 제품감독, 증명, 표시, 사용설명, 사용지침, 사용 안내서, 보관의무와 통지의무 그리고 행정청의 조치에 관하여 규정할 권한을 가진다.
- (2) 연방경제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로써 이 명령의 실행을 위하여 일반적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제3절: CE-표시의 보호

제14조 (CE-표시의 남용적 사용의 금지)

- (1) CE-표시가 된 제품의 사용이 법률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제품 등에 CE-표시가 되어있으면, 제품, 제품의 포장 또는 포장속에 들어 있는 서류의 유통은 금지된다. 이 규정은 다른 법률에 남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제7조제3항제1호와 제2호는 행정청의 조치에 적용된다.

제4절: 벌칙규정

제15조 (과태료)

- (1)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2문제1호에 반하여 제품을 유통시킨자는 질서위반을 한 자이다.
- (2) 고의 또는 과실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질서위반을 한 자이다
 1. 제4조제2항에 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적시에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는 자,
 2. 제7조제1항, 제8조제1문 또는 제9조제1문에 따른 집행가능한 명령을 위반하는 자,
 3. 제11조제1항제1문에 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올바르지 않게, 완전하지 않게 또는 적시에 발하지 않거나 또는 제11조제2항제3문에 반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또는 수탁자를 지지하지 아니 하는 자,
 4. 법규명령이 이 과태료규정에 근거하여 특정된 구성요건을 요구하는 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규명령을 위반하는 자, 또는
 5. 제14조제1항에 반하여 제품, 포장 또는 서류를 처음으로 유통시킨 자.
- (3) 질서위반은 제2항제3호와 제5호의 경우에 5000마르크 이하의 과태료, 제1항과 제2항 제1호, 제2호 그리고 제4호의 경우에 50,000마르크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5절: 다른 법률의 개정, 효력발생

제16조 (건축제품법의 개정)

1992년 8월 10일의 건축제품법(BGBI.I S.1495)은 1993년 4월 27일의 법률 제59조에 의하여 개정(BGBI.I S.512, 539)됨으로써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제1조제1문에 "건축제품지침"이라는 용어에 뒤에 "그리고 유럽연합의 다른 지침"이라는 구절이 추가된다.
2.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a) 제목에 "표시된"이라는 용어 다음에 "그리고 위험한"이라는 말이 추가된다.
 - b) 제2항제1문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CE-표시로써 표시된"이라는 용어는 삭제된다.

제17조(도로교통법의 개정)

최종적으로 1994년 9월 14일의 법률 제12조제76항에 의하여 개정된 연방법률공보 제3부, 분류번호 9231-1에 공포된 정비된 조항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은 18호 끝에 마침표는 세미콜론으로 대체되고 다음의 19호가 추가된다:

"19. 일반적 제품안전에 관한 1992년 6월 29일의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92/59/EWG)의 개정에 필요한 조치".

제18조(연방동력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1971년 12월 22일의 법률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개정된 연방법률공보 제3부, 분류번호 9230-1에 공포되어 정비된 조항에서 연방동력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제4a호 뒤에 다음의 제4b호가 추가된다:

“4b. 도로교통법 제16조제1항제19호에 근거하는 법규명령과 일반적 행정법규 그리고 제품안전법 제8조와 제9조에 의한 과제;”.

제19조(효력발생)

이 법률은 공포후 4번째 달의 첫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2. 독일 제품안전법에 대한 연방정부의 입법이유

A. 일반적 이유

일반적 제품안전에 관한 1992년 6월 29일 유럽연합이사회의 준칙 92/59/EWG (ABl. EG Nr.L 228 v. 11.8.1992, 24면)이 제품안전법의 초안을 작성하게 한 동기이다. 이 법률초안은 유럽연합의 준칙을 독일법으로 전환하는 데에 기여한다; 이 법률의 목적과 내용은 유럽연합의 준칙에 의하여 이미 많은 부분에서 확정되었다. 이외에 이 법률로써 1993년 7월 22일 유럽연합 이사회의 모듈결정 93/465/EWG (ABl. EG Nr.L 220 23면)에 따라 여기서 규정되지 않는 제품에 CE-표시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가 독일법으로 전환되어 진다.

이 법률안의 핵심은 제품안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제2절이다. 이 절로써 생산자와 판매자에 의하여 유통되고, 사적 사용자를 위하여 특정된 제품이 안전하기 위한 일반적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동시에 이 법률은 유럽역내시장의 완성과정에서 조화를 위한 장치이다: 유럽연합 준칙의 독일법으로 전환으로써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에서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제품의 조화된 (최소한) 안전요구와 이에 합당한 (최소한) 의무가 확정된다. 이러한 것은 유럽역내시장에서 비교가능한 생산조건과 운영조건의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동일한 경쟁조건의 창출에 기여한다. 유럽연합의 역내국경이 없어진 이후 소비자보호는 동일한 안전요구와 집행시에 행정청과 행정청간의 밀접한 공조로 감독을 위한 여건이 개선되었다.

기타 제품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안전법의 일반적, 공법적 장치가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기준의 사법상 보호를 보충한다.

특정된 제품과 제품집단에 대하여 이미 존재하는 제품위험의 방지를 위한 특별한 공법규율은 제품안전법과 병립하여 존속한다: 이러한 특별한 공법규율은 특별규율로써 원칙적으로 일반적 제품안전법에 우선한다. 위험이 내포된 모든 제품에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포괄적 규율서의 측면에서 볼때에 대부분의 제품분야는 제품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법률은 최소한 유럽연합 준칙의 실체법적 요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야에서 보다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법적 안전성의 이유에서 이 법률안은 기존의 전문법, 특히 전문법의 특별한 요구를 제품안전법의 요구와 명백하게 구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범위에서 명백히 보다 큰 제품분야를 예외로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

제품안전법은 지금까지 특별법상 요구를 받지 않았던 제품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에 영향을 준다. 이로써 존재하고 있던 규율공백이 보완되고 제품위험으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반적, 보충적 법적 근거가 확립된다.

많은 제품에 대한 독일의 안전법에는 경고와 회수를 위한 명백한 위임근거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유럽연합준칙에 규정되어 있지만, 제품안전법은 이러한 제품에 대하여 합당한 공법상 명령을 위한 위임근거로 될 수 있다. 기타 예외적인 분야에서도 이러한 위임에 의거하게 함으로써 제품안전법은 실제적으로 폭넓은 적용분야를 확보할 수 있다. 경고와 회수에 대한 가능한 통일적 규율은 안전하고 예측가능한 법적용에 기여한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적용된 연방법과 주법상의 근거는 - 부분적으로 일반적 경찰법도 이용되었다 - 분산되고 불확정적이었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였다.

제품안전법은 제2절에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 안전한 제품만을 시장에 유통시킬 생산자의 일반적 의무,
- 위험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적합한 조치를 할 생산자의 의무,
- 제품안전의 일차적 책임자인 생산자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품안전에 기여하여야 하는 판매자의 주의의무,
- 안전하지 않은 제품의 생산·판매에 대한 조치를 위하여 행정청에 필요성에 따라 단계화된 장치,
-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안전하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균등하고 가능한 신속한 조치가 될 수 있고 제품안전법규가 유럽연합 내에서 자유로운 상품유통의 제한에 남용되지 않도록 위하여 유럽연합위원회와 다른 회원국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권한위임.

또한 이 준칙의 전환과정에서 건축물과 자동차 분야의 해당 안전규정을 이 준칙의 요건에 합치시키기 위하여 건축물법, 도로교통법 그리고 연방동력청설치에관한법률이 약간 개정된다.

조화되지 않은 분야에서 CE 표시의 허용되지 않은 사용은 금지되고, 위반시에 과태료처분과 사법상의 처분가능성이 부여된다.

이 법률의 입법권이 연방에 있다는 것은 기본법 제74조제11호에 있다.

연방,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제품안전법의 추가적 검사의무와 개입의무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받을 수 있다. 제품안전법은 예방적 안전검사를 의도하지 않고, 지금까지 특별한 안전규정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서만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비용이 자세

하게 계산될 수 없고, 큰 영향도 없다. CE-표시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통제와 관련하여 서도 행정청의 부담은 좁은 범위내에서 있게 된다. 왜냐하면 CE-표시에 대한 통제는 경쟁자, 경쟁업체 등등에 의한 사법적 조치로서 실현될 뿐만 아니라 시장에 의한 통제도 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된 관련자로서 주로 제품안전법집행의 관할을 확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정청도 예측될 수 없다.

제품안전법상 의무를 지는 생산자와 판매자가 현행 손해배상법에 근거하여서도 안전한 제품만을 시장에 유통시켜야 하고, 검사비용이나 행정청에 의한 회수명령으로 발생하는 가능한 부담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개별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되지 않는다. 이러한 한에서 일반적 가격수준, 특히 소비자가격수준에 대한 영향은 기대되지 않는다.

B. 조항별 입법이유

제1조(법률의 목적)

이 조항은 유럽연합시장의 완성과정에 속하는 소비자보호법률의 목표설정을 기술하고 있다: 안전한 제품만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생산자와 중간상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유럽연합의 전지역에서 최소한의 소비자보호수준을 유지하게 하여야 하고, 동시에 제품생산자와 제공자는 동일한 경쟁조건하에서 경쟁을 하게 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제품안전법 제2절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보다는 서열상의 후차적인 성질을 가진다. 이로써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 법률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 특정된 제품에 대하여서도 당해특별법이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만 보충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기타 이 조항은 유럽연합의 CE-표시의 사용은 허용되는 경우에만 사용하게 하는 데에 기여한다.

제2조(제1절의 적용범위 - 제품의 안전성)

제1항

목표설정에 따라 제2절의 제품안전법규는 개인적 최종소비자에 도달하는 제품만을 규제하여야 한다. 생산설비, 투자재 그리고 직업적 사용만을 위하여 특정된 다른 제품은 규제받지 않는다. 그러나 직업적 분야와 개인적인 분야에 사용되는 제품에도 적용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제품이 사적 소비자에 의하여서도 사용되는가의 여부는 일반적 거래관행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서비스분야에서 사용되는 제품은 직접 그리고 변경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도달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규제를 받는다. 또한 제품안전법의 적용전제는 영업적이거나 업무적인 행위이어야 한다. 개인에 의한 물품의 이전, 즉 개인에 의한 새로운 물건 또는 중고물건의 판매는 이 법률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제2항

이 제품안전법이 중고제품의 유통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골동품과 다시 수선되어 사용되는 제품은 예외이다. 이 때에 판매자는 이에 관한 명백한 지적을 하여야 한다. 제품안전법과 달리 대부분의 개별법률, 예를 들면 기기안전법에 의하여 중고제품은 부분적으로만 규제를 받는다. 이로써 특히 중고품거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의무를 부담한다. 물론 중고제품의 안전척도는 새제품의 안전척도와 동일하지 않다. 새제품의 안전척도는 해당제품에 관한 개별법률에 특별히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반하여 중고제품의 안전척도는 제품안전법 제6조에 의하여 규정된 일반적 안정수준에 의하여 확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7조가 지속적이고 예방적인 안전검사를 위한 법적근거가 아니라, 행정작용의 결과에서 나온다는 것은 행정청의 집행에 영향을 준다.

제3항

제3항으로 안전요구가 명백하게 법률에 의하여 명백하게 규정된 특정된 제품은 제2절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특정된 제품의 안전요구에 관하여 독일에서 작성된 규율서에 근거하여 16개의 법률이 예외로 열거되고 있다. 이 법률들은 거의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엄격하고 그리고 개별제품의 요구에 대하여 각각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된 안전요구를 두고 있다. 이것은 규율되어 있지 않은 제품분야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제품안전법에 의할 때에 가능하다. 특별법상의 안전요구는 유럽연합준칙상 안전요구나 제품안전법상 안전요구와 실질적으로 일치하거나 중복된다. 물론 건축분야와 자동차분야는 유럽연합준칙에 합치하기 위하여 약간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확장은 제5절에서 해당법률의 개정으로 수용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준칙은 행정청에게 상품유통의 금지와 제공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 뿐만 아니라, 회수명령의 가능성과 경고의 가능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의 일반대중에 대한 주의경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독일의 현행법률, 특히 식품법 분야에도 없다. 제8조와 제9조를 고려하여 제품안전법은 제2호에 규정된 개별법률에 대하여 제품회수를 위한 특별권한을 부여하고 공적 경고를 행사할 수 있다. 이로써 제품안전법은 기타의 제품분야에서 제품회수와 공적인 경고를 할 수 있는 연방통일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동시에 관련된 자가 지금까지 아주 상이하고 부분적으로 불충분한 법적 규율로써 원조를 받은 분야에서 법적 명확성과 안전성을 개선하게 한다. 제품회수와 경고는 제품안전법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제2호에서 규정된 각각의 개별법률과 결합하여 효력을 발한다. 즉, 제품안전법은 개별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실질적 안전기준을 변화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관할도 원칙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 관할 행정청의 불변은 제2문에서 명백히 하고 있다.

제4항

제4항은 일반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일반조항은 내용적으로 제3항과 합치하여 제품안전법의 일반적 안전법보다 명백하게 열거되지 않은 안전규정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조항은 전체적 안전법에 대한 명백한 기술이 부당한 많은 입법적 낭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유럽연합의 준칙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제품에 대한 최종적인 안전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이에 속한다. 이것은 이미 개별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구체적인 요구를 보충하고, 제6조의 일반적 안전개념에 합치하는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다. 제1문에 의하면 개별법률의 우위에 합치한다. 이에 따라 제품안전법이 전문적으로 특수한 안전요구의 개정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효율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나의 행정청에만 관할권을 주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제2항은 원칙적으로 그 행정청이 이미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관련된 제품의 부분적인 안전검사만을 규정하고 있는 최종적인 안전검사도 넘겨받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품안전법과 같이 개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일 행정청에 집행집중은 대부분의 경우에 발생하고 있는 인력과 비용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낭비에 대한 예로는 다수의 행정청에 의한 상이한 안전판단에 의하여 행정청간의 마찰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결국 행정청은 제2문에 의하여 제품안전법과 개별법률을 소비자보호의 목적으로도 집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소비자보호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별법률에서도 중요하다.

제5항

제4항제2문의 집행규율은 제5항의 의하여 유보된다. 여기서 이 행정청은 인적·물적 설비에 근거하여 제품안전법의 집행을 하지 않는 행정청이 열거되고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제품안전법의 집행은 다른 기관에 넘겨져야 한다. 즉, 제4항제3문은 다른 규율을 제정할 권한을 州에 부여하고 있다. 많은 개별법률을 집행하는 관할 행정청은 州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몇 가지의 경우에 제4항제2문의 집중국대화의 예외가 된다. 기본법에 의하여 결국 행정청규율을 제정하는 주는 자기의 분야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고유한 규율을 제정할 수 있다.

제3조(개념)

제3조는 이 법률에서 여러번 사용되는 3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제1항과 제3항

제1항은 생산자를 정의하고 있다. 유럽연합준칙에 합치하는 생산자의 개념은 넓게 설정되어 있다. 생산자의 정의는 제품안전법 제4조의 생산자개념에 방향을 정하고 있다. 생산자는 우선 고유한 의미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소위 준생산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즉, 자기의 이름이나 상표 또는 생산자와 다른 표시를 사용함으로써 제품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다. 나아가서 생산자의 대리인과 수입업자도 여기

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로써 유럽연합의 경제영역외에서도 생산자의 제품에 대하여 제4조의 의무가 준용된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안전특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람은 생산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품의 안전특성은 판매자와 구별을 위한 척도이다. 이러한 기타의 정의에 의하여 제품의 안전특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람은 제4조의 엄격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판매자의 개념(제3항)은 그의 행위로 제품의 안전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에 제한된다.

제2항

유통의 개념은 기기안전법(여기서: 제2조제3항제1문)에서 사용되고 적합한 정의에 따른다.

제4조(생산자의 의무)

제1항

안전한 제품만을 유통시킬 생산자의 의무는 이 법률의 핵심규정이다. 수법자를 명백하게 생산자로 함으로써 제품안전법은 일차적으로 시장에 제품을 제공하는 경제주체로 하고 있다. 물론 생산자는 이미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안전한 제품만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생산자의 이러한 공법상의 의무의 준수를 위하여 행정청의 감독이 보충되고 있다.

제2항

제2항은 2개의 특별한 의무에 의하여 생산자의 일반적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하나는 소비자가 생산자에 제공한 정보에 따라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품의 가능한 위험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처음으로 유통되는 제품의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가능한 위험을 고려하여 제품관찰의 의무이다. 여기서 제2호는 이러한 의무가 이미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과 관련된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제5조(판매자의 의무)

판매자의 의무는 생산자의 의무와 종류가 다르다. 왜냐하면 판매자는 개념상 제품의 위험잠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3조제1항의 확장된 생산자의 결과이다. 판매자는 그에게 가능하고 수인될 수 있는 주의범위 내에서 안전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예를 들면 제품과 관련된 적합한 소비자상담이 속한다. 또한 안전하지 못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영향도 여기에 속한다. 판매자에 의하여 판매되는 제품의 정보제공의무도 제2항에 의하여 판매자에게 부여되어 있다.

제6조(안전한 제품)

제1항

제6조는 안전한 제품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개인으로서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모든 제품을 규율하는 제품안전법 제2장의 전반적인 적용범위에 합치하려면 언제 제품이 안전한가는 추상적으로 그리고 불확정 개념의 사용만으로 정의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지침에 의하면 제2절의 규정은 안전하지 못한 제품으로 인한 인적피해만을 방어하지 물적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방어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안전한 제품의 정의는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해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서 안전한 제품의 개념은 제품에서 기인하는 위해의 인용정도에 관련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인용가능한 위해의 범위는 부분적으로 객관적으로, 부분적으로 주관적인 징표에 의하여 자세하게 설명된다:

- “규정에 합치하는 사용을 할 때”에 관한 징표는 제품안전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상의 다른 규정에 합치한다(예를 들면 기기안전법 제3조제1항/제2조제5항제1호). 제품안전법에서는 “기대될 수 있는 사용”的 개념적 징표는 유럽연합준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징표인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사용”과 합치한다.

유럽연합의 준칙에서 규정된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사용”이라는 개념징표는 소비자에 의한 제품의 잘못된 사용도 포함한다. 그러나 기대될 수 있는 사용에 제한된 범위에서만 제품의 하자를 인정한다. 기대될 수 있는 사용은 생산자의 시각에서 판단되나, 개별 생산자의 주관적인 시각, 제품생산자의 구체적 주관적 시각에서가 아니라, 책임의식이 있는 생산자가 일반적인 생활경험과 직업경험에 근거하여 사용종류에 관하여 예측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한다.

- 제2호에 의하면 사용의 종류와 합치될 수 없는 위험이 제품에서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이로써 제품에 대한 안전성기대치는 제품의 종류 또는 성질에 따라서 다르다. 몇 개의 제품에서는 부정적인 종류의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제품은 다른 방식으로는 생산될 수 없거나 또는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담배나 알콜의 소비시에 건강상 위해는 사용의 종류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되어야 한다.
- 수용가능한 위험수준은 3개의 구성요건적 징표에 의하여 자세하게 서술된다. 여기서 제3호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각각의 기술규격에 대한 보전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로써 유럽연합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독일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개념인 “높은 보호수준”은 독일법으로 전환되었다. 유럽연합준칙에 의하여 의도되지 않은 회원국간의 상이한 안전성요구로 자유로운 상품왕래의 제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술규격은 제2문에서 이에 합치하는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가의 동일한 가치규범 및 기술규율과 동일한 지위에 서게 된다.

이 법률안은 각각 최대한의 안전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제1항에 의하면 제품의 안전은 제

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수인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한다. 제품의 안전성은 제1항에 의하여 제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수용가능한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여건에 의거하여 제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수용될 수 있으면, 보다 높은 안전에 달성가능하거나 다른 제품이 사실적으로 보다 높은 안전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생산자 또는 중간상인은 그에게 부여된 법률상의 제품안전의무를 충족하게 된다.

제2항

제2항은 유럽연합의 준칙에 따라 안전판단에 역할을 하는 특별히 중요한 관점을 예시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제7조(관할 행정청의 권한)

제1항

제1항은 안전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행정청의 일반적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문은 추상적 위험상황에 대하여서도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예방적·일반적 제품안전성검사의 의무는 당해 행정청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중요한 행정청의 권한은 제품과 관련된 특별법에 유보되어 있다. 특별법에는 예를 들면 허가절차의 방식으로 하는 예방적 조치는 제품의 특별한 위해 때문에 행정청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곳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위해를 적게 수반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인지와 연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기타 제1문은 - 제2문도 동일하게 - 위해방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일치하여 재량규정으로 하고 있다.

제2문은 이미 구체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행정청의 조치에 관한 권한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제품이 중요한 안전규정, 기술시방서 또는 기술수준에 합치한다는 것으로 행정청의 조치에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기술수준은 제6조에 의하여 요구된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술규율의 보전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제2항

제2항은 안전하지 않은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청의 특정된 조치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준칙에서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독일의 법률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기기안전법 제6조제1항제1문).

제3항

행정청은 우선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행정청은 다수의 가능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 효율적인 위험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유통분야에서 불안전한 제품의 대부분에 대하여 가능한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가능한 유통되기 전에(제품생산자에 가능한 근접한 단계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제3호에 따른 제3자의 개입은 일반 경찰법에 따라 현재의 중요한 위해방지가 다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 기타 책임이 없는 사람의 청구권행사를 위하여

해당 경찰법 규정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참조, 예를들면 노르트하인웨스트팔렌주의 질서행정청법(Ordnungsbehördengesetz) 제19조). 이러한 경우에 제2문은 일반 경찰법상의 해당 규정에 따라서 형성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8조(안전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경고)

제8조에 의하면 해당 소비자가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으로 인하여 위해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생산자가 경고를 하도록 행정청이 명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청이 일반대중에 대하여 경고를 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고는 소비자는 이미 제품의 획득시에 알 수 있는, 제품과 직접 결합되거나 제품판매시에 알려지는 주의(제품표시, 제품사용설명서 등)인 반면에, 제8조는 위해가 제품에서 나오는 경우에 사후적 경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일차적으로 제품생산자는 의무를 지게 되고, 판매자도 의무를 지게 된다. 특히 판매자는 생산자보다 위해한 제품의 수요자를 찾아 낼 수 있는 경우에 의무를 지게 된다.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생산자의 의무도 이와 관련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르면 생산자는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서도 그 제품에서 발생하는 위해를 인식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반대중에 대한 행정청의 경고는 위해가 급박하고 최후 수단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도 일반대중에 대한 행정청의 경고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생산자와 관련하여 나타난다.

제8조는 제품안전법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제8조는 일연의 특별법률에서, 특히 식품의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8조는 이로써 독일의 제품안전법의 대부분에 대하여 경고에 대한 일반적 토대가 된다. 제8조와 기기안전법(Gerätesicherheitsgesetz)의 관계에 관하여는 제9조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9조(안전하지 않은 제품의 회수)

제9조는 이미 유통되고 있으나 안전하지 않는 제품을 행정청이 회수할 수 있게 하고, 압류하게 하고 - 최후의 수단으로는 - 폐기를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제9조는 기계안전법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따르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폐기규정도 두고 있다. 폐기가 명령되면, 해당 환경법적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품안전법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예외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생산자와 판매자가 자기의 조치로 제품에 기인하는 위해방지조치를 할 수 있으면, 기기안전법 제6조제1항과 같이 제9조는 행정청에 의하여 명령된 회수의 후순위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제8조와 같이 제9조의 회수규정은 제품안전법을 넘어서 제2조제3항의 적용 때문에 일연의 다른 개별법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기에는 또한 기기안전법 속한다. 그러나 기기안전법은 제6조에 회수와 경고에 관한 규정을 자체에서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제품안전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후순위 원칙에 합치하여 제8조와 제9조보다 우선한다. 기기

안전법 제6조는 제8조와 제9조와 같이 기기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2개의 경우에 제품안전법이 적용되어야 할 정도로 넓은 적용영역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제7조제3항제3호에 의한 폐기를 할 수 있는 명령과 소위 제3자의 청구권이다. 기타의 경우에 기기안전법 제6조제1항제1문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판매자에 대한 조치는 기기안전법 제6조제1항제4문이 원칙적으로 계약상의 토대와 관련하는 안전하지 않는 제품의 생산자에게 회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10조(정보제공의무와 관찰의무)

제7조제3항에 의한 관할 행정청 조치의 수반자 개개인의 정보제공의무와 협조의무는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한 행정청의 과제와 권한을 보충한다. 이것이 행정청의 과제이행에 필요하는 한 정보제공의무가 중요하고, 행정청에 의하여 명령된 조치를 실행하는 의무나 이에 대한 협조할 의무도 중요하다. 정보제공거부권은 다른 많은 법규정과 비교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과 원칙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

제2항에서는 관할 행정청의 출입권, 정보권 그리고 검사권이 규정되어 있다. 검사샘플의 추출권도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만 적절한 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식품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율내용과 합치한다.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기된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의 데이터보호법상 안전을 규정하고 있다.

제11조(통보와 정보)

제1항

이 법률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집행의 관할권을 가지는 연방행정청과 주의 행정청은 집행을 위탁하는 행정지소를 상호간 통보하고 집행시에 상호간의 통보와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항

유럽연합 내에서 관할 행정청의 효과적인 작업을 위하여 준칙 제7조와 제8조는 정보제공 절차를 확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특정된 경우에 유럽연합의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는 관할 행정청은 연방에 의하여 지정된 행정지소를 통보하는 것은 규정된 정보제공절차를 위하여 필요하다. 연방에 의하여 지정된 행정지소는 유럽연합의 위원회에 통지를 한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자세한 형성은 명령으로 규율된다. 명령의 내용, 목적 그리고 범위는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위임권 자체는 제4항에서 규정되어 있다.

제3항

통보절차시에 개인정보의 전달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사용은 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제한받는다.

제4항

연방정부는 법규명령으로 연방관할 행정청과 주의 관할 행정청과의 관계에 관하여(제1항) 그리고 유럽연합위원회와 유럽연합회원국의 관할 행정청과의 관계에 관하여(제2항)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위임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도 확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방경제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행정청 상호간의 통보의 절차에 관한 개별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일반적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에 의한 규율이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제품안전에 관한 시행령제정을 위한 연방정부의 수임권)

제1항

시행령제정권은 우선 이 법률의 사안범위와 관련된 유럽연합의 준칙을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은 법규명령에 의하여 독일법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시행령제정권은 국가간의 합의에서 나오는 잠정적인 의무의 전환과 이 법률 제1조제1호에 의한 이 법률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일반적 규율에까지 미친다. 권한규범은 제품안전분야에서 특별법률상 비교가능한 규율과 합치한다(예를 들면 기기안전법 제4조와 비교). 유럽연합은 기타의 준칙으로 제품안전분야를 조화시킨다는 것이 유럽연합의 지금까지의 실무에 따를 때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유럽연합에서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제정된 조화준칙의 진행과정에 속한다. 예를 들면 기계, 압력용기 또는 인적 보호장비에서 조화준칙이 제정되었다. 제품안전법에 법규명령으로 전환을 위한 사전배려를 규정하는 것은 기술적 작업수단이 아닌 소비자제품과 관련하여 생각가능한 기타 유럽연합의 조화준칙에 의미가 있다.

위임의 내용, 목적 그리고 범위는 제1항에서 충분히 규정하고 있다.

제2항

유럽연합의 법률행위의 전화목적으로 법규명령에 규정된 행정청 상호간의 공동작업을 위한 잠정적인 절차를 규율하기 위하여, 연방 경제부에 의한 일반적 행정규칙의 제정권한이 규정되어 있다.

제3절

제품안전에 관한 규정외에 제2절의 CE-표시의 남용도 이 법률에 의하여 조치를 받게 된다. 1993년 7월 22일 유럽연합 이사회의 결정 93/465/EWG(ABl. EG Nr.L.220 S.23)에 근거하여 유럽연합의 회원국가는 CE-표시의 남용과 혼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법 규를 제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CE-표시가 해당 제품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나 또는 판매자에 의하여 제품에 CE-표시가 이미 되고 있다. CE-표시의 이러한 남용은 고객에 대하여 기재된 품질기준이나 안전기

준의 기만으로 이용된다. 조치에 관한 유럽연합의 결정은 이 법률에서 2가지 방식으로 고려되고 있다. 제13조에 규정된 금지는 과태료구성요건으로 또는 사법적으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부작위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가능성에 의하여도 보전될 수 있다.

제13조

개별제품에 대한 이러한 표시의 사용이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제13조는 원칙규정으로서 CE-표시가 있는 제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독일법에서는 이와 같이 표시된 제품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규범이 없다. 이 규정으로써 소위 CE-표시의 규율되지 않았던 분야가 규율되게 되었다. CE를 사용하는 제품은 각각의 해당 규정에 구속된다. 이 규정에는 지정된 제품분야에 대한 CE-표시의 남용이 이미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예는 건축물법 제13조제1항이다. 이 조항은 동일한 건축물집단에 대한 관련된 규범 및 허가와 합치하는 경우에만 건축물의 CE-표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율하고 있는 분야의 해당 규정에 대한 제13조의 보충성은 제2문에 의하여 명백히 되고 있다. 제2항은 행정청이 공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가능한 수법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행정집행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이외에 제15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원칙적인 금지와는 달리 과태료처분은 사실로 CE-표시를 한 제품의 첫 번째 유통에만 해당된다. 이러한 제한된 과태료처분은 행위의 결과단계에서 CE-표시의 사용허가에 관한 인식이 기대될 수 없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이것은 아직 유럽연합의 CE표시에 관하여 조화되지 않은 기타 분야이다. 경미한 경우에 하자있는 행위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없다.

제14조

제14조는 불공정 경쟁방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법적으로도 CE-표시의 허가되지 않은 사용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쉽게 한다. 이 규율의 모델은 「식품특산품에관한법률(Lebensmittelspezialitätengesetz)」이다. 이와 관련된 제3조와 제4조는 규정에 적합하게 수용되었다. 과태료처분에서와 같이 허용되지 않는 CE-표시를 한 제품의 첫 번째 유통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UWG)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CE-표시를 한 제품의 그밖의 유통에 대한 조치는 이로써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1조와 제2조의 보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규정)

제15조는 - 5천마르크에서 5만마르크까지를 단계화하여 - 금전적 부과로 질서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행정법의 일상적인 과태료처분과 합치한다.

제4조제1항과 제5조제2문제1호에 따른 생산자와 판매자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과태료처분은 고의에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위반에 대한 과실은 생산자나 판매자에 대한 중대

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적 위반에 대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제한된다(예를 들면 생산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결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시리즈를 판매한 경우이다).

제16조(건축물법의 개정)

제16조에 의하여 건축물법은 유럽연합준칙상 규정에 합치하기 위하여 적은 부분이지만 개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제품안전법의 적용범위에서 완전히 도출될 수 있다(제2조제3항제1호제c목).

제1호

제1조제1문의 보충은 건축물법이 유럽연합의 「건축물준칙」외에 건축물과 관련된 유럽연합의 다른 준칙과 제품안전법을 전환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제2호

제13조제2항제1문의 삭제로 인하여 지금까지 CE-표시가 된 건축자재에 대하여서만 사용될 수 있었던 금지규율은 건축물법 제2조제1항의 의미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장하여 적용된다. 표제의 합치는 건축물법의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

제17조(도로교통법의 개정)

도로교통법은 제17조에 의하여 유럽연합의 준칙과 합치하기 위하여 적은 부분이지만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정으로써 도로교통법은 제품안전법의 적용분야의 예외가 될 수 있다(제2조제3항제2호제h목 참조).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제19가 추가됨으로 법규명령과 일반적 행정규칙에 의한 유럽연합의 「제품안전준칙」의 독일법으로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보충적 규율이 제정될 수 있다. 이러한 규율기술은 유럽연합 준칙의 독일법으로 전환을 위한 도로교통법의 일반적 법실무와 합치한다. 「제품안전준칙」의 독일법으로 실질적 전환은 연방교통부에 의하여 법규명령으로 제안될 것이다.

제18조(연방교통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연방교통청(Kraftfahrt-Bundesamt)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도로교통법의 개정과 관련되고, 제품안전법 제17조와 제2조제3항제2호제h목에 의한 도로교통법의 예외와 관련된다.

연방교통청은 이미 1951년이래로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관한 모델허가를 관할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자동차의 교통안전심사의 관할도 한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심사는 공무상 검사소와 검사원에 위탁되어 있다. 제2조에 새로이 추가된 제4b호에 의하여 제품안전법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과제도 연방교통청에 부여되어 있다. 즉 안전하지 않은 자동차의 회수와 경고도 연방교통청이 할 수 있다.

자동차의 안전과 행정청의 처분에 관한 실질적 요건은 도로교통허가법에 따라 규정된다.

제19조(효력발생)

제19조는 효력발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4개월후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은 새로운 의무와 과제에 대한 대비를 이 법률의 수범자에게 허가하고 있다.

3. 연방참사원의 입장

연방참사원은 1995년 9월 22일 제688차 회의에서 기본법 제76조제2항에 의하여 이 법률 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태도를 표명하기로 의결하였다.

1. 연방참사원은 연방정부에게 제품안전법의 초안을 철회하도록 요청하였다. 왜냐하면 이 법률은 중복규율이고, 집행을 어렵게 하고 적용에 친화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품안전 법의 필요한 규율은 오히려 해당 특별법(제2조제3항)에서 규율되어야 한다.

이유:

안전하지 못한 제품의 유통제한, 경고 그리고 제품회수에 관한 상세한 규율은 이미 개별 전문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률간소화의 이유에서 이중적 규율이 포기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규정에 대하여는 해당 특별법에 보충되어야 한다. 이것은 또한 CE-표시의 남용에 관한 규정에도 적용된다. 특별법에 도입은 집행의 실효성과 적용친화성을 증진시킨다.

2. 제품안전법안은 이중규율을 만들고, 집행을 어렵게 하며 적용친화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연방참사원은 제품안전법의 규율을 가능한 한 해당 특별법에 도입하도록 요청한다.

이유:

안전하지 못한 제품의 유통제한, 경고 그리고 회수에 관한 자세한 규율은 이미 개별전문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률간소화이유에서 이중규율은 가능한 한 삭제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규정되지 않은 분야는 특별법에 삽입되어야 한다. 이는 CE-표시의 남용에 관한 규정에도 적용된다. 특별법에 삽입은 집행의 개선과 적용친화성의 증대를 가져온다.

3. 제2조제3항제1문제1호 제a목과 제2호제a목 내지 제c목에 대하여

제2조제3항제1문제1호의 제a목 앞에 다음의 제0a목 내지 제0d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0a) 식품법 - 성분의 특성면에서만 생필품이 대상

0b) 포도주법,

0c) 육고기위생법,

0d) 가금육위생법”

결과적으로 제2조제2항제1문제2호의 a)목 내지 d)목은 삭제되어야 한다.

이유:

이 법률안에서 규정된 경고와 회수에 관한 규율(제8조, 제9조,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은 식품위생법, 포도주법, 육고기위생법 그리고 가금육위생법의 분야에 충분하지 않고 사안적으로 정당하지도 않고 법적으로 명령되지도 않은 방식으로 소비자보호를 축소한다.

법률안 제6조의 “안전한 제품”의 정의와 결합하여 회수명령과 공적 경고의 가능성은 중대하고 구체적인 건강위해의 방지분야에 제한된다. 이에 반하여 예방적 건강보호와 기관으로부터 보호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로써 식품분야에서 이 법률초안의 규율은 1991년 7월 9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식품법의 집행을 위한 법률(GBI. S.473)과 같은 기존의 주법률상 규정 보다 후퇴하고 있다. 이러한 기타의 주법률상의 규율이 연방법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제품안전법의 식품법에 적용은 최소한 부분적으로 소비자보호를 두드러지게 약화시킨다.

식품분야에서 경고와 회수에 관한 규율은 연방식품위생법 자체에서 규정된 소비자이익의 법률상 인정치 이하로 되게 한다. 여기서 허용된 경고분야의 범위는 최근에서야 비로소 포괄적인 법적 평가에 의하여 새롭게 허용된 바덴뷔르템베르크부의 식품위생법집행법률과 같이 이미 집행되고 있는 주법률에 정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소비자보호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현법적·유럽연합법적 한계도 준수되어야 한다. 제품안전법의 제2절은 포도주법, 육고기위생법과 가금육위생법에 규율을 받는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경고와 회수에 관한 법규정은 각각의 특별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4. 제14조에 대하여

제14조는 삭제되어야 한다.

이유:

제14조는 제품이 제13조의 금지에 반하여 CE-표시를 하여 유통되는 경우에 사법상 부작위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다.

a) 제14조의 규율의 필요성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CE-표시의 남용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UWG) 제3조의 일반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공정거래법의 부작위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aa) 예를 들면 연방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일반적 품질검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TÜV-표시의 사용은 공정경쟁에 반한다(BGH, GRUR 1991, 552). DIN-규격을 적시하는 광고는 해당 제품이 이 DIN-규격에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 공정경쟁에 반할 수 있다(BGH, GRUR 1985, 973; BGH, GRUR 1992, 117). 해당 제품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가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표시의 사용을 위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CE-표시를 사용하면, 판례는 공정경쟁위반이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한 요건은 적합성표시가 있는 제품의 유통은 특별한 품질이나 안전과 결합한다는 것이다. 원

칙적으로 검사되고 공적인 증명서가 부착된 제품에 대한 기대는 CE-표시의 사용과 결합될 수 있다.

bb) 원래적 손해배상청구권의 이유도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공정경쟁법에 해당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정경쟁법 제3조와 결부된 제13조제6항에 의하면 피해를 받은 경쟁자는 허용되지 않는 CE-표시의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CE-표시의 사용자가 이 표시가 오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한다.

물론 허용되지 않은 CE-표시를 한 제품의 소비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공정경쟁법 제3조에 위반에서 나오지 않는다(BGH, GRUR 1975, 150). 제14조도 경쟁자의 손해배상청구권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이 규정의 자구에서 명백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명백성은 이와 관련된 식품특산물법의 이유에 명시되어 있다(BT-Drucks.12/5025, S.6). 기타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결핍물건보장과 제조물책임법에 불충분하게 규정된 침해 때문에 항상 거부될 수 있다.

cc) 제14조제2항의 규율은 마찬가지로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공정거래법 제13조제4항의 수용이고,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31조, 제831조에 관한 종업원과 기관의 행위의 귀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b) 기타 제14조는 공정경쟁법과 충분하게 일치하지 않고 있다.

aa) 관련성이 중요한 경쟁침해에 대한 실질적 제한을 포함하는가의 여부는 규정된 공정경쟁법 제13조제2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기관의 적시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경쟁관계는 구성요건적 전제로서 - 공정경쟁법 제1조와 제3조와는 달리 - 제13조와 제14조에 바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소송의 당사자적격의 분야에서 공정경쟁법이 목표로 하는 것은 모순된다. 1994년 7월 25일의 공정경쟁법의 개정법률로 공정경쟁법에 도입된 소송상 당사자적격의 경쟁이질적 남용방지를 위한 제한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체제적으로 맞지 않고 규제완화의 사고에도 반한다.

bb) 제14조제3항은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공정경쟁법상 부작위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정경쟁법 제21조에 의하여 행위이후 6월을 소멸시효로 하고 있다. 제14조는 공정경쟁법상 특별구성요건으로서 공정경쟁법에 적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모순은 정당화될 수 없다. 기타 법적용을 위한 청구권의 경합시 새로운 구분문제가 여기서 나온다.

c) 경쟁법상 추가적 특별구성요건의 도입은 공정경쟁법의 자유화와 간소화에 추구에 반한다. 독일의 공정경쟁법은 유럽의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에 높은 규율밀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독일 경제의 경쟁력의 안전을 위하여 유럽의 다른 국가와 조화하는 데에 기여한다.

d) CE-표시의 남용에 대한 제재를 위한 유럽연합법상 의무는 이미 제7조와 결부된 제

13조제2항에 의한 공법상 권한, 제15조제2항제5호의 과태료규정 그리고 공정경쟁법의 적용가능성에 의하여 수용되었다.

5. 제15조에 대하여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a) 제1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b) 제2항은 제1호 앞에 다음의 제01호가 추가되어 제1항으로 된다:

“01.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반하여 제품이 유통된다.”

c) 제3항은 제2항으로 되고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2) 질서위반은 제1항제3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5,000마르크까지의 과태료, 제1항제01호 내지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50,000마르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유:

안전한 제품만을 유통시킬 생산자와 판매자의 의무에 대한 과실적 위반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제15조제2항의 구성요건과 비교하여 평가모순이 발생한다. 입증상 어려움은 구체적인 경우에만 중요하여야 하고 과태료부과는 일반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제16조제1호에 대하여(건축물법 제1조제1문)

제16조제1호에 “그리고 유럽연합의 다른 준칙”이라는 말은 “그리고 일반적 제품안전에 관한 1992년 6월 29일의 유럽연합이사회의 준칙 92/59/EWG (ABl. EG Nr.L 228 S.24)”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유:

이 법률초안의 제16조제1호는 마치 건축물법이 유럽연합-건축물준칙외에 건축물의 유통과 거래와 관련된 유럽연합의 다른 준칙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이것은 아는 바와 같이 그렇지 않다. 액체와 가스상태의 연료의 효과정도에 관한 1992년 5월 21일의 유럽연합 이사회의 준칙 92/42/EWG에 까지 새로운 운수보일러가 채워지고, 이는 보일러시설-시행령으로 부분적 전환외에 기타의 전환이 필요하다.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다른 유럽연합의 준칙은 상이한 유용성증명절차와 적합성증명절차 때문에 특별규정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특히,

- 기기안전법 제6차 시행령(압력용기),
- 기기안전법 제7차 시행령(가스소비시설물),
- 기술적 작업수단에 관한 제1차 시행령(전기운행장치).

그러므로 유럽연합 건축물준칙과 - 이 법률초안의 제16조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법 개정으로써 - 유럽연합-제품안전준칙만 독일의 건축물법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서 이 법률초안의 내용은 개정되어야 한다.

7. 제품안전법에 기술된 안전하지 못한 제품에 의한 위해의 이유외에 연방참사원은 이 경우에도 일반대중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일 집행행정청이 법률위반을 효과적으로 구속할 수 있게 되면, 특정된 제품의 유통으로 인하여 중요하지 않은 보호목적(예를 들면 기만으로부터 소비자보호)은 침해된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은 제품의 유통자가 독일에 지점을 두지 않고 방문판매나 통신판매의 경우와 관련된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방참사원은 제품의 특성, 생산의 상황 및 식품과 생필품의 사용에 관한 일반적 정보권이 소비자에게 부여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식품법의 개정으로 달성될 수 있다. 이외에 제품의 유통자는 소비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기존의 법률상황에 따르면 포장되지 않은 제품의 소비자는 포장된 제품에서 구성부분에 대한 표시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정보제공청구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제7조로써 비포장제품의 소비자와 포장제품의 소비자는 동등한 지위에 선다.

정보제공에 대한 이러한 권리로서 특히 식품알레르기와 식품트라벌 반응을 일으키는 소비자에 대하여 제품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할 가능성이 열려 진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 또는 윤리적 이유에서 특정된 제품을 거부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게 할 가능성도 부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규정의 도입은 소비자에 대한 제품제공의 투명성이 개선된다. 제품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부관이나 표시요구로 모두 규정되지 않는다. 이와 결부된 정보는 없어지는 아주 적은 소비자에게만 중요한 경우에 식품법의 발달시에 항상 새로운 표시부담을 하는 것이 합목적적이지 않다. 또한 유럽연합영역에서 추가적 표시요구를 위하여 개별적인 경우에만 충분한 다수가 발견될 수 있다.

소비자에 의하여 관할 행정청에 문의되는 식품법상의 많은 문제는 이에 의하여 답변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필요한 정보가 관할 행정청에 없거나 답변전달에 정보보호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범위까지 국가과제의 축소이익에서도 유통자에게 답변을 직접 요구하는 권리가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기 위하여 운영비밀이 정보제공권의 예외가 되어야 한다. 기타 제품유통자에게 답변과 결부된 비용을 질문자에게 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8. 연방참사원은 연방정부에게 이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식품법 - 성분특성면에서만 생필품,

포도주법,

육고기위생법 및

가금육위생법상의

규율을 조항형식으로 기존의 법률초안에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9. 연방참사원은 연방정부에게 모든 위험방비에 대한 고려의 이면에 소비자정보청구권이 행정청의 식품감독에 부여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법정립절차에서 심사될 것을 요구한다.

- 현재 행정청에 의한 식품검사는 구체적 위험의 방지분야에서만 행정청에 의하여 조사된 제품의 제품이름과 생산자이름을 공개할 수 있다. 이러한 분야를 넘어가는 공개는 설치되고 행사된 영업에 대한 위법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다.
- 소비자는 특히 위험방지에 대한 고려외에 작업과정, 원료, 배합 또는 식품구입시 구매 결정에 기여하는 기타의 상황에 대하여서도 점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몇 가지의 예를 열거하면 소비자는
- 식품에 방사선조사가 되었는가 또는 유전자재결합이 되었는가,
- 육고기의 원산지
- 식품, 장난감 또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가 등에 대한 정보를 희망한다.
- 유럽연합영역에서 법규범의 구조적 전환과 민감한 소비자에 의하여 요구된 제품의 품질 안전은 경제와 감시기관에 의하여 모든 것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미 추가적으로 자극욕에 의하여 드물지 않게 자극된 기존의 소비자불안은 감소되고 이미 발생한 신뢰상실은 식품경제에서 치유될 수 있다.
- 1995년 3월 23일과 24일 비스바덴에서 개최된 제8차 식품법학회에서 이를 대표하는 학문은 경제, 소비자 및 언론매체간에 이와 관련된 개선된 신뢰관계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시 보다 많은 투명성을 요구하였다.
- 1995년 초에 도입된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에 대한 긍정적 경험은 정보요소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출처: "Neue Fleischerzeitung" Nr.15 v. 13.4. 1995).
- 식품법분야에서 경고와 회수에 관한 제품안전법상의 규율은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규율은 위험방지이면에 있는 정보제공권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규율되지 않은 분야와 같이 규율된 분야에서 성분배합, 작업과정, 원산지 또는 기타 구매를 결정하는 상황을 표시하여야 하는 소비자에 대한 식품생산자의 권리는 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가능성과 대립한다; 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가능성은 행정청의 식품감독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 소비자중심과 같은 기관은 구매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평가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요건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분야에서 기본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평가하는 판단을 동시에 주기 때문이다.
평가하는 정보는 식품업자의 이익면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정보가 중요하여도 국민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 이러한 정보권에 기초하여 행정청에 의한 식품감독은 중립적 통보로써 그가 알고 있는 것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것은 구매결정에 의미가 있으면 제품명과 생산자이름을 공개 할 권리를 포함하여야 한다.
- 소비자단체의 요구는 이러한 정보가능성의 형성을 위한 척도로써 토대가 될 수 있다. 소비자단체의 위원회의 희망은 이 분야에서는 경제이익에 의하여 특징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없다.

이러한 중립적 정보권은 위험방지의 경계선에서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 포괄적 정보요청권은 독일 국민에게 높은 지위가치를 부여한다. 자기가 하는 구매결정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결정에 우선한다.

- 이러한 정보권은
- 비례에 맞고 시기적으로 맞아야 하며,
- 마스트리트 조약(유럽연합 조약 제129a조)에 규정되고,
- 세계보건기구의 사고와 소위 세계식품규격위원회(Kodex-Alimentarius-Kommission)는 유럽연합법원의 지속적인 판례와 합치할 수 있다.

10. 재정위원회는 연방참사원에게 기본법 제76조제2항에 의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4. 연방참사원의 태도표명에 대한 연방정부의 반대의견

연방참사원의 제의는 수용하지 않는다.

연방정부는 이미 제품안전법 초안의 작업시에 새로운 제품안전법의 필요성여부와 필요한 경우에 그 범위에 관하여 자세하게 검토하였다. 이러한 심사의 결과는 제한된 적용범위라고 할지라도 일반적 제품안전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이르렀다.

제품안전분야는 독일법질서에서 이미 많은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특별법은 특정된, 부분적으로 아주 적은 제품에 대하여서만 적용하고 있다. 기존의 특별법은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전부를 규제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유럽연합의 준칙에서 예측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럽연합의 준칙에 합치하는 독일법의 전환을 위하여는 지금까지 특별법에서 규율하지 않고 있는 제품에 대한 법률규정이 필요하다.

기타 기존의 특별법은 소비자제품에 대한 실질적 안전요구를 규정하고 있는 곳에서도 어떠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유럽연합의 준칙내용과 합치하지 않는다. 특히 이러한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하지 않는 제품의 회수와 경고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관련된다. 현행 독일법에서는 아주 적은 법률에서만 이러한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상황의 관점에서 연방정부는 제품안전법 초안으로 일반적·포괄법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법률은

- 아직 특별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 소비자제품을 규율하고,
-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유럽연합의 준칙의 독일법으로의 전환에 필수적인 보충적 규정을 제정한다.

제품안전법의 후순위 적용성은 제2조제4항에서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16개의 중요한 법률에서 이에 대하여 명백히 하고 있다.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예외가 되는 분야에는 각각의 관할 행정청에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는다(제2조제4항제2문).

제품회수와 경고에 관한 중대한 분야에서 연방정부는 제품안전법의 초안으로써 법적인 규율을 할 방안이고 통일적으로, 즉 다수의 소비자제품을 위하여 형성하려고 한다. 기존의 특별법에서 회수와 경고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많은 분야에서 없기 때문에 제품안전법은 다른 법영역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일반적 부분과 동일하고, 이러한 한에서 이에 합치하는 법적인 근거는 이미 존재하는 특별한 제품안전법에서도 존재한다. 여기서 회수와 경고가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특별한 회수모형이나 경고모형이 필요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법률에서만 예외이다. 예를 들면 의약품법과 의료제품법의 경우이다. 이에 합치하는 법률은 제2조제3항제1호에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회수와 경고에 관한 법적근거의 통일성은 불필요한 규율화에 합치한다. 이러한 규율은 이러한 양자의 법제도에 관한 판례와 행정실무가 여러 가지 제품과 관련하여 너무 멀리 되지 않게 하는 데에 기여한다.

이에 대하여 연방참사원의 제안은 제품안전-준칙을 기존의 특별법에 통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연방참사원의 의견은

- 여러 가지의 동일한 법규에 의하여 이러한 법률을 평창시키고,
- 의회의 소모를 야기하고,
- 법분할의 위험을 증대하게 된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지금까지 규제되지 않았던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포괄법률의 필요성이 회피된다.

유럽연합-결정으로 규정된 CE-표시의 허가되지 않는 사용에 대한 조치의 측면에서 연방참사원에 의하여 제안된 특별법의 통합은 불가능하다. 제품안전법에 대한 규율은 소위 조화되지 않은 분야에서 조치와 관련된다. 결국 CE-표시가 허가되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조치가 취하여 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서 일반적인 규율만이 가능하다. 조화된 분야에서 CE-표시의 허가되지 않는 사용은 이미 각각의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즉, 건축물법 제8조제8항의 예를 들 수 있다.

III. 유럽연합의 CE마크 적합성평가절차

유럽연합은 지역단일시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내의 모든 상품에 대하여 품질기준을 정하고,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절차상의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제품은 유럽연합의 안전기준을 달성하여야 가능하다. 유럽연합 안전기준의 달성이

부를 일반시민에게 명시하는 표시로 CE마크를 채택하고 있다. 유럽연합 시장에 자유롭게 유통되는 제품은 유럽연합이 규정하는 적합성평가절차에 따라 안전기준을 달성한 제품들에 대하여서만 CE마크를 부착한 제품이다.¹³⁰⁾

1) 일반통칙

적합성평가절차에 관한 기술적인 통일지침의 기본적인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 (a) 적합성절차의 기본적인 목표는 유럽연합의 공인기관에 의하여 유통중인 제품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 (b) 적합성평가는 제품의 설계단계의 모듈과 생산단계의 모듈로 구분된다.
- (c) 위의 두 개의 상황을 구분하는 경우에 제품은 일반적인 판행상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2단계의 결과가 확실한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 (d) 위의 2가지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의 모듈을 적용하게 됨으로서 유럽연합 이사회는 유럽연합의 공인기관으로 하여금 적합성검사를 받는 제품이나 동일한 분야의 제품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안전도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준칙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 (e) 준칙의 범위를 확정하면 이를 생산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특히 준칙에는 모듈의 제품형식과 적절성, 위험도, 대상분야의 경제적인 하부구조(예: 제3자의 유무) 등을 주요사항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f) 대상제품 또는 대상제품분야에 대한 모듈의 적용범위를 확정하는 경우에 준칙상의 요건과 적합성확인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자에 광범위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g) 관련된 준칙의 목표에 비하여 불필요하게 과중한 부담을 모듈에 적용은 준칙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 (h) 유럽연합의 공인기관은 경제활동관계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모듈을 적용 할 수 있는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i) 유럽연합 공인기관에 제출하는 기술문서는 생산자의 노하우보호를 위하여 적합성평가에 필요한 서류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비밀을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하여 법적 인 보호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 (j) 준칙은 반드시 생산자에게 품질보증방법에 기초하는 모듈의 사용을 요구하게 되고, 생산자로서는 품질보증에 사용되지 않는 모듈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그 대상이 전도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준칙상 요건이 별도로 지정한 절차의 경우는 제외된다.

130)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품만이 자기지역에서 교역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기술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文俊朝/崔星根, 技術라운드(TR)의 展開와 法的 對應, 한국법제연구원, 16면이하; 孫讚鉉/李時昱, 標準·適合 및 技術障壁: EU의 經驗과 APEC에의 시사점, 대외경제연구원; 李鍾永, 食品衛生法의 改善方案(II), 한국법제연구원, 1997 참조.

(k) 모듈을 운영함에 있어서 회원국은 관련된 준칙상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구비한 기관(자국이 관할하는)중에서 대상기관을 설정하여 자국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의무사항이란 회원국의 의무사항으로서 유럽연합의 준칙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유럽연합 (공인)심사기관이 계속하여 달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위임받은 국가기관으로서 자체임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회원국이 (공인)심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관련임무가 다른 기관에 의해 계속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l) 도급계약의 경우에 적합성평가는 다음의 특정한 보증조건이 제시되어야 한다:

- 도급계약자로서 EN 45000의 요건에 부합하는 설비의 확보와 적합성에 대하여 효과적인 감시를 할 수 있는 도급계약기관을 지정하였는가에 대한 회원국으로서의 신뢰성
- 도급계약으로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실제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유럽연합 (공인)검사기관으로서의 능력.

(m) 인정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유럽연합의 통일규격(EN 45000시리즈)에 적합성인증을 받은 유럽연합 (공인)검사기관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회원국은 집행위원회로부터 지정에 필요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n) 유럽연합 (공인)검사기관의 목록은 집행위원회에 위하여 유럽연합 관보에 공고하며 계속하여 현행성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적합성평가의 모듈

가) 개관

- 준칙에 따라 포장이나 관련문서에만 CE마크를 표시하고 제품자체에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적합성선언 또는 적합성인증서(준칙서에는 2가지중 하나로 지정된다)는 개별제품 또는 몇 가지 제품에 모두 적용되며, 제품과 함께 관리하든지 제조자가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관련준칙에 대한 시행방안을 명시하여야 한다.
- 항목별 참고사항은 1985년 5월 7일 이사회결정 부록 II B의 규격란에서 인용된 것으로서, 이것이 "새로운 접근방안"에 관한 준칙의 규격항목으로 채택되었다.
- 유럽연합 (공인)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와 기타 문서는 전산화되어 INSIS에서 관리하고 있다.
- 준칙에 따라서는 모듈 A, C 그리고 H에 해당하는 모듈은 그 범위안에서 작성한 보충요건을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모듈 C는 B(유럽연합의 형식검사)와 결합하여 사용하도록 계획된 것이며, 모듈 D, E 및 F도 일반적으로 모듈 B와 결합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예: 매우 단순한 설계 및 구조를 가진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사용할 수도 있다.

모듈 A: 내부생산관리

1. 이 모듈은 유럽연합내의 생산자 또는 그 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생산자와 그 대리자는 제2항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대상인 제품이 준칙상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생산자는 제품마다 CE마크를 부착하고 적합성선언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생산자는 제3항에 규정된 기술문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유럽연합내에서 위임된 대리자는 그 문서를 해당 검사기관의 조치에 따라 최종제품이 생산된 후 적어도 10년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특정된 생산자 또는 대리자가 유럽연합 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기술문서보관의무는 유럽연합시장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자의 책임이다.
3. 평가대상제품의 기술문서는 준칙상의 요건과의 적합성평가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설계, 제조 및 제품의 작동 등이다.
 - 3a.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기술문서와 적합성선언문서의 사본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4. 생산자는 대상이 되는 제품의 제조공정이 제2항에서 규정한 기술문서와 적용되는 준칙의 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야 한다.

모듈 Aa

이 모듈은 모듈 A에 다음의 요건을 보충한 것이다.

생산자 또는 그의 대리자는 각각의 완성된 제품별로 한가지 이상의 특수한 항목에 대하여 한가지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은 생산자에 의하여 선택된 유럽연합의 공인기관의 책임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생산자는 유럽연합 공인기관의 책임하에 생산공정 중의 작업자에 식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생산자가 선택한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수시로 제품검사를 하여야 한다. 유럽연합 공인기관에 의해 생산공정에서 선발한 적절한 최종제품의 샘플은 제5조에서 규정한 관련 규격이나 이와 동등한 시험방법에 의하여 검사되어, 준칙의 관련요건에 제품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된 제품중에서 한 개 이상이 부적합한 경우에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적절한 수단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품체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예를 들면 적용되는 통계적 방법, 특성별 샘플링계획 등). 유럽연합 공인기관의 책임하에 생산자는 생산공정중의 작업자에 식별표시를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듈 B: 형식검사

1. 이 모듈은 제품의 샘플이 해당제품에 적용되는 준칙에 합치함을 유럽연합 공인기관이 확인하고 증명하는 절차이다.
2. 유럽연합 형식검사에 대한 신청서는 생산자 또는 유럽연합 내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그 대리인이 선택한 유럽연합 공인기관에 신청한다.

- 생산자의 상호 및 소재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 상호 또는 소재지를 기입한다.
-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가 유럽연합 내의 다른 공인기관에 복수로 신청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서약서
- 제3항에 규정된 것과 같은 기술문서

신청자는 제품의 샘플을 인정기관이 처분하도록 위임한다. 다음부터는 유럽연합 형식검사의 신청서를 “형식”이라 한다.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검사중 필요하면 샘플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3. 기술문서는 준칙의 요구사항에 관련제품의 적합성 평가를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4.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4.1. 기술문서를 심사하고, 그 형식이 기술문서에 적합하게 생산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제5항에서 규정한 준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설계된 요소를 적용하지 않고 설계된 부품들을 명시한다.
 - 4.2. 제5항에서 규정된 준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생산자가 선택한 해결책이 준칙의 필수요건을 충족하는가를 체크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 및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4.3. 생산자가 적용을 위하여 관련규격을 선택한 경우에, 이것이 실제 적용되었는가의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 및 필요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4.4. 검사 및 필요한 시험을 위한 장소는 신청자와 합의되어야 한다.
 5. 형식이 준칙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신청자에게 유럽연합 형식 검사증을 발급한다. 이 증서는 생산자의 상호 및 주소, 검사결과, 유효성 조건 및 승인된 형식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6. 신청인은 승인된 제품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은 유럽연합 형식검사증을 발급한 유럽연합 공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경사항이 제품사용에 필수요건이나 또는 미리 결정된 조건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추가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추가승인은 원래 유럽연합 형식검사증에 추가한다.
 7.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유럽연합 형식검사증과 추가로 발급되거나 회수된 증서에 관한 정보를 다른 유럽연합 공인기관에 고지하여야 한다.
 8. 다른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유럽연합 형식검사증의 사본 또는 추가사항의 사본을 받을 수 있다. 증서의 부록에 관한 사항은 다른 유럽연합 공인기관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9.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은 유럽연합 형식검사증 및 추가사항에 대한 기술문서사본을 제품이 생산된 후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이 유럽연합 내에 등록되지 않는 경우, 기술문서보관의 의무는 유럽연합 시장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자의 책임이다.

모듈 C: 형식적 합성

1. 이 모듈은 유럽연합내의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행하여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규정된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대상이 되는 제품이 준칙상의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증명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준칙요건을 충족하여 적합한 제품으로 증명된 해당제품의 생산자는 CE마크를 부착하고 적합성선언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생산자는 제품의 생산과정이 유럽연합 형식검사증에 기재되어 있는 형식과 이에 적용되는 준칙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용할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은 유럽연합 형식검사증과 추가사항에 대한 기술문서사본을 제품 생산 후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은 유럽연합 내에 등록되어 있는 않은 경우에 기술문서보관의무는 유럽연합 시장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자의 책임이다.

적용가능한 보충요건은 다음과 같다: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은 완성된 제품별로 한가지 이상의 특수 항목에 대하여 한가지 이상의 시험을 하여야 한다. 시험은 생산자가 임의로 선정한 유럽연합 공인기관의 책임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생산자는 유럽연합 공인기관의 책임하에 제조공정 중의 작업자에 식별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생산자가 선정한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수시로 관련 제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유럽연합 공인기관에 의하여 생산공정에서 선발된 적절한 최종제품의 샘플은 제5조에서 규정된 관련 규격이나 또는 이와 동등한 시험방법에 의하여 검사되어 제품이 준칙의 관련요건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체크된 제품의 한 개 이상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품의 체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예: 적용되는 통계방법, 특성별 샘플링계획 등).

유럽연합 공인기관의 책임으로 생산자는 생산공정 중의 작업자에 식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모듈 D: 생산품질보증

- 이 모듈이 모듈 B와 관계없이 사용되는 경우에 기술문서의 필요성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제1항과 제2항 사이에 모듈 A의 제2항 및 제3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1. 이 모듈은 유럽연합 내의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행하여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생산자와 그 대리인은 제2항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심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 준칙상의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입증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생산자는 CE마크를 부착하고 적합성선언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CE마크는 항목 4에 규정된 것과 같이 유럽연합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이에 책임있는 유럽연합 공인기관의 볼몰마크를 같이 부착한다.

2. 생산자는 제품생산, 항목 3에서 명시된 것과 같은 최종제품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을 승인된 품질시스템으로 운영하고, 항목 4에 명시된 대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3. 품질시스템

3.1. 생산자는 자신이 선택한 유럽연합 공인기관에 품질시스템평가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예상되는 제품의 구체적 범주에 대한 관련된 정보
- 품질시스템에 관한 문서
- 가능하면, 승인된 형식의 기술문서와 유럽연합 형식검사증사본

3.2. 품질시스템은 그 제품의 유럽연합 형식검사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적용된 준칙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생산자에 의하여 선택된 모든 요소, 여전 및 규정은 방침, 절차서 및 지시서의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품질프로그램, 계획, 매뉴얼 및 기록서 등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품질목적 및 조직구조, 제품품질과 관련된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 사용되는 제조방법,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수법, 공정 및 체계적인 조치
- 생산전, 생산중, 생산후에 실행되어야 하는 검사, 시험 및 수행빈도
- 요구되는 제품품질획득의 성취도와 품질시스템의 효과적 운용에 대한 감시수단

3.3.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3.2.항의 요구사항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한 품질시스템을 평가하여야 한다. 관련된 유럽연합의 동일규격(EN 29002)에 따른 품질시스템은 이러한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심사팀은 관련제품기술의 평가경험이 있는 팀원이 최소한 한명 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절차는 검사시 생산자와 공장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는 생산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통보내용에는 검사결과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4. 사후심사

4.1. 사후심사의 목적은 생산자가 승인된 품질시스템에 따른 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4.2. 생산자는 유럽연합 공인기관이 검사 목적으로 제조, 검사, 시험 및 지정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허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정보 특히 다음 항목을 준비하여야 한다:

- 품질시스템문서
- 검사보고서, 시험테이터, 계측기검교정데이터, 품질에 관련된 요원들의 자격검정기록서와 같은 품질기록서

4.3.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생산자에 의한 품질시스템의 유지와 적용의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생산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공한다.

4.4.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예고없이 생산자를 방문할 수 있다. 이 방문기간중 필요하면

품질시스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보고서와 함께 생산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생산자는 최종제품이 생산된 후 관련 국가기관의 조치에 따라 10년 동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 3.1. 항의 2번째 사항에서 규정된 문서
 - 3.4. 항의 2번째 절에서 규정된 개정에 관한 사항
6. 각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다른 유럽연합 공인기관에 품질시스템의 승인과 취소에 관련된 정보를 주어야 한다.

모듈 E: 제품품질보증

- 모듈 B와 관계없이 이 모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술문서의 필요성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제1항과 제2항 사이에 모듈 A의 제2항과 제3항을 추가한다.
필호안의 문구는 삭제한다.
1. 이 모듈은 제2항의 품질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생산자가 심사의 대상이 된 제품이 유럽연합 형식검사증상의 형식에 적합한가 그리고 준칙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이를 공고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생산자는 각 제품별로 CE마크를 부착하고 적합성선언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CE마크에는 제4항에 명시된 사후관리 유럽연합 공인기관의 기관표시가 있어야 한다.
 2. 생산자는 최종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에 필요한 공인된 품질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제4항에 규정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품질시스템: 심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품질인증인 품질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생산자가 임의로 선택한 유럽연합 공인기관에 일임하여야 한다.
 - 3.1. 생산자는 자신이 선택한 유럽연합 공인기관에 품질시스템평가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예상되는 제품의 구체적 범주에 대한 관련 정보
 - 품질시스템에 관한 문서
 - 가능하면, 승인된 형식의 기술문서와 유럽연합 형식검사증사본
 - 3.2. 품질시스템하의 조건이란 개개의 제품별로 해당항목 제5조의 관련규격에 따른 시험검사의 실시 또는 준칙상의 요건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와 동등한 시험을 하는 것이다. 생산자가 선택한 제반요소, 요건 및 대비책은 정책, 절차서, 지시서 등 체계적인 방식으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이 품질시스템관련문서는 품질프로그램, 품질계획, 품질매뉴얼 및 품질기록에 관하여 일반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품질시스템관련문서에는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품질목표, 조직의 구조, 제품품질에 관한 경영자의 책임과 권한
 - 제조후의 정밀시험검사

- 품질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용을 감시하는 수단
- 검사보고서, 시험데이터, 계측기검교정데이터, 품질에 관련된 요원들의 자격검정기록서와 같은 품질기록서

3.3.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검사의 대상이 되는 품질시스템이 제3.2.의 요건을 충족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의 결과 그 품질시스템이 이들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관련된 동일규격(EN 29003)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심사팀에는 심사의 대상이 된 제품에 대한 평가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최소한 1명 편성하여야 한다. 평가절차에는 현장확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판정결과는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조사내용 및 판정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4. 생산자는 승인된 품질시스템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적절하고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이 품질시스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유럽연합 공인기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통보된 변경사항을 평가하고, 변경될 품질시스템이 제3.2.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또는 재심사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결정사항은 생산자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통보서에는 조사내용 및 결정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유럽연합 공인기관에 의한 사후관리

4.1. 사후관리의 목적은 승인된 품질시스템의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4.2. 생산자는 유럽연합 공인기관이 검사수행상 제조장소, 시험검사장소 그리고 보관장소의 출입을 허용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이 제공되어야 한다:

- 품질시스템문서
- 기술문서
- 검사보고서, 시험데이터, 계측기검교정데이터, 품질에 관련된 요원들의 자격검정기록서와 같은 품질기록서

4.3.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생산자가 지속적으로 품질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보고서는 생산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4. 그리고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예고없이 생산자를 방문할 수 있다. 이 방문기간 중에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해당 품질시스템이 정확하게 이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또는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생산자에게 방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보고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5. 생산자는 관련 국가기관의 조치에 따라 최종제품이 완성된 후 적어도 10년 동안은 제3.1.항의 두 번째 항목의 관련문서, 제3.4.항의 두 번째 항목에 대한 최신관리문서, 제

3.4.항, 제4.3.항 및 제4.4.항의 최후문항과 관련된 유럽연합 공인기관의 결정사항 및 보고서 등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6. 각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품질시스템의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기타 다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모듈 F: 제품검증

- 모듈 B와 관계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 기술문서의 필요성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제1항과 제2항 간에 모듈 A의 2항 및 제3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 팔호의 뒷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1. 이 모듈은 유럽연합내의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3항의 심사의 대상이 된 제품이 유럽연합 형식검사 중에서 기술된 형식에 적합한가 그리고 준칙상의 요건에 적합한가를 확인하고 입증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2. 생산자는 심사의 대상이 된 제품의 제조공정이 유럽연합 형식검사 중에 형식과 관련준칙상의 요건에 적합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각 제품별로 CE마크를 부착하고, 적합성선언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생산자의 선택에 따라 대상이 된 제품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 또는 제5항에 통계적 방법에 의한 시험검사 등 그 제품의 적합성을 체크하기 위한 적합한 정밀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a.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은 최종제품이 완성된 후 적어도 10년 동안 적합성 관련문서를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4. 정밀시험검사에 의한 전체제품의 제품별검증

4.1. 모든 제품이 유럽연합 형식검사중에 기술된 형식과 관련된 준칙상의 요건에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별로 해당준칙 제5조의 관련규격에 규정된 시험검사 또는 이와 동등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2.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모든 합격제품에 제품별로 유럽연합 공인기관의 표시를 하든가 또는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시험에 대한 적합성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3.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5. 통계적 검증

5.1. 생산자는 검사의 대상이 된 제품을 동질성의 로트로 구성하고, 각 생산로트의 제조공정이 동질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5.2. 모든 제품은 검증이 가능하도록 동질성의 로트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각 로트로부터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하여야 한다. 다음 선정된 샘플제품이 관련 준칙상의 요건에 적합한가를 확인한 후, 그 로트가 합격인지 또는 불합격인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해당 준칙 제5조의 관련규격에 규정된 시험검사 또는 이와 동등한 시험을 제품별로 실시하여

야 한다.

5.3. 통계적 절차는 다음요소를 사용한다.

관련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예: 적용되는 통계적 방법, 특성별 샘플링계획).

5.4. 합격로트인 경우에 지정기관은 각 제품마다 유럽연합 공인기관의 식별표식을 부착하거나 또는 부착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시험에 대한 적합성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샘플중에서 부적합으로 규명된 제품만을 제외하고 해당 로트의 모든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 심사의 대상이 된 로트가 불합격 판정된 경우에 유럽연합 공인기관이나 위임받은 관리기관은 그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로트의 불합격이 빈번한 경우에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그 통계적 검증을 일단 유보할 수도 있다. 생산자는 유럽연합 공인기관의 책임하에 제조공정중에 유럽연합 공인기관의 식별표시를 할 수 있다.

5.5.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모듈 G: 단위검증

1. 이 모듈은 제2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이 관련준칙상의 요건에 적합한가를 확인하고 공고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생산자는 심사의 대상이 된 제품에 CE마크를 부착하고 적합성선언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심사의 대상이 된 제품이 관련 준칙상의 요건에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제품별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준칙 제5조의 관련 규격에 규정된 적절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합격제품에 유럽연합 공인기관의 표시를 직접 부착하거나 부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시험에 대한 적합성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기술문서의 목적은 관련준칙상의 요건, 설계, 제조 및 제품의 작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술문서의 내용은 심사의 대상이 된 제품에 따라 준칙별로 나열한다. 예컨대 문서에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심사의 대상이 된 제품의 일반적 명세
 - 개념적인 설계, 제조도면, 부품의 구성, 반제품, 배선 등
 - 제5조에 규정된 규격목록(전체적인 것 또는 부분적인 것)과 제5조에 규정된 관련규격을 적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준칙상의 필수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 설계계산치, 시험검사결과 등
 - 시험보고서

모듈 H: 전체품질보증

1. 이 모듈은 제2항의 품질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생산자로 하여금 대상제품이 관련준칙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공고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생산자는 각

- 제품에 CE마크를 부착하고 적합성선언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CE 마크에는 제4항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유럽연합 공인기관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2. 생산자는 제3항에 규정된 설계, 제조 및 최종제품에 시험검사를 망라한 승인된 품질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3. 품질시스템
- 3.1. 생산자는 자신이 선정한 유럽연합 공인기관에 품질시스템평가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품의 구체적인 범위
 - 품질시스템과 관련된 문서
- 3.2. 품질시스템이란 대상제품이 관련 준칙상의 요건에 적합함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생산자가 선택한 제반요소, 요건 및 대비책은 방침, 절차서, 지시서 등 체계적인 방식으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이 품질시스템 관련문서는 품질프로그램, 품질계획, 품질매뉴얼 및 품질기록 등 품질방침 및 그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품질목표, 조직구조, 설계 및 제품품질에 관한 경영자의 책임과 권한
 - 규격을 포함한 기술적인 설계시방, 해당지침 제5조 관련규격이 전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상제품이 관련 지침상의 필수요건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하는 수단
 - 설계관리 및 설계검증기법, 제품설계시 사용될 공정 및 체계적인 조치
 - 제조전, 제조중 및 제조후에 실시될 정밀시험검사와 그 실시횟수
 - 검사보고서, 시험데이터, 계측기검교정데이터, 품질에 관련된 요원들의 자격검정기록서와 같은 품질기록서
 - 요구된 설계 및 제품품질의 성취도와 품질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용을 감시하는 수단
- 3.3.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대상 품질시스템 제3.2.항의 요건의 충족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의 결과, 그 품질시스템이 이들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관련된 동일규격(EN 29001)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심사팀에는 대상제품에 관한 기술에 경험이 있는 최소한 1명의 심사원이 편성되어야 한다. 평가절차에는 제조현장의 확인심사도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결과는 생산자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통보서에는 조사내용과 심사판정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 3.4. 생산자는 승인된 품질시스템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적절하고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이 품질시스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유럽연합 공인기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통보된 변경사항을 평가하고 변경된 품질시스템이 제3.2.항의 요건의 충족 여부와 재심사 필요성의 존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결정사항은 생산자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통보서에는 조사내용 및 결정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유럽연합 공인기관에 의한 사후관리

- 4.1. 사후관리의 목적은 승인된 품질시스템의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 4.2. 생산자는 유럽연합 공인기관에게 검사수행상 설계장소, 제조장소, 시험검사장소, 보관장소의 출입을 허용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의 자료는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 품질시스템 관련문서
 - 분석결과, 계산치, 시험치 등 품질시스템의 설계부서에서 예상되는 품질관련 기록
 - 검사보고서 및 시험데이터, 계측기검교정데이터, 품질에 관련된 요원들의 자격검정기록서 등 품질시스템의 제조부서에서 예상되는 품질관련기록서
- 4.3.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생산자가 지속적으로 품질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보고서는 생산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4.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예고없이 생산자를 방문할 수 있다. 이 방문기관 중에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대상 품질시스템이 정확하게 이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시험을 실시하거나 또는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생산자에게 방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보고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5. 생산자는 관련 국가기관의 조치에 따라 최종제품이 완료된 후 적어도 10년간 다음 사항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 제3.1 항의 두 번째 항목의 관련문서
 - 제3.1 항의 두 번째 항목의 현행성관리
 - 제3.4 항, 제4.3항, 제4.4 항의 마지막 문항에 관한 유럽연합 공인기관의 결정사항
6. 각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품질시스템의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여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활용가능한 보충요건

1. 설계의 검사

- (1) 생산자는 유럽연합 공인기관 중의 하나에 설계의 정밀검사를 일임하여야 한다.
- (2) 검사신청 내용인 설계, 제조 및 작동은 이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규격을 포함한 기술적 설계시방서
 -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특히 해당 지침 제5조의 규격이 전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경우 그 증거가 되는 생산자의 시험소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실시된 시험결과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3) 유럽연합 공인기관은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설계가 관련 지침상의 조항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유럽연합 설계검사필증을 발급한다. 검사필증에는 검사의 종

합평가, 타당성을 입증하는 조건, 승인된 설계를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이 있는 경우, 제품의 구체적인 성능도 포함시킨다.

- (4) 신청자는 승인된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유럽연합 설계검사증을 발급한 유럽연합 공인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인된 설계의 변경사항은 그러한 변경이 관련지침상의 요건이나 제품사용상 제시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 설계검사증을 발급한 유럽연합 공인기관에서 추가적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추가적 승인은 유럽연합 설계검사증원본에 그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발행한다.
- (5)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다른 유럽연합 공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유럽연합 설계검사증내용과 추가발급된 내용
 - 승인된 유럽연합 설계내용과 추가승인이 취소된 내용

參考文獻

1. 國內文獻

- 강창경, 소비자안전법 비교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20호, 1997/12
강창경, 제조물책임의 입법방향, 한국소비자연구원, 한국소비자보호연구원 7주년 개원기념 정책세미나자료, 1994/6
康昌景/杜成奎, 消費者保護法制 및 行政體系 比較研究, 韓國消費者保護研究院, 1992/2
金昌奎, 比定型的 行政作用의 許容性과 限界에 관한 研究 - 獨逸의 理論을 中心으로 - ,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 1997/6
미국의 소비자제품 규제제도, 대한무역진흥공사, 1992
소비자보호법과 친구하기,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이종석/공길택, 기업과 품질경영 시스템, 청문각, 1997/1
李鍾永, 食品衛生法의 改善方案, 한국법제연구원, 1996/12
李鍾永, 食品衛生法의 改善方案(II) - 식품안전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 한국법제연구원, 1997/12
이종인, 제품위험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부족이 제품안전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소비자문제연구, 제20호, 1997/12.
이기한, 미국의 FDA와 CPSC의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12
鄭忠見, 適正한 表示와 消費者保護, 慶南法學, 제5집, 경남대학교법학연구소, 1989
諸國의 商品安全確保對策에 관한 調查,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국, 1997/5
洪天龍, 消費者의 安全, 慶南法學, 제5집, 경남대학교법학연구소, 1989

2. 外國文獻

- Berz, U., Tagungsbericht: 34. Deutscher Verkehrsgerichtstag 1996, NZV 1996, S.100 ff.
- Brohm, W., Rechtliche Vorgaben für informelle Verwaltungshandeln, DVBl. 1994, S.133 ff.
- Brüggemeier, G., Produkthaftung und Produktsicherheit, ZHR 152 (1988), S.511 ff.

- ders., Die Gefahrdungshaftung der Produzenten nach der EG-Richtlinie – ein Fortschritt der Rechtsentwicklung?, in: Schäfer/Otto (Hrsg.), Ökonomische Analyse des Zivilrechts, 1989
- Di Fabio, U., Information als hoheitliches Gestaltungsmittel, JuS 1997, S.1 ff.
- Dolde, Behördliche Warnungen vor nicht verkehrsfähigen Lebensmittel, Rechtsgutachten, 1987
- Eckstein/Krämer, EG-Maschinenrichtlinie, Gerätesicherheitsgesetz, 1993
- Falke, Praxis der Nachmarktkontrolle technischer Gebrauchsgüter in der BRD, in: Micklitz (Hrsg.), Nachmarktkontrolle, 1988
- Gröschner, R., Öffentlichkeitsaufklärung als Behördenaufgabe, DVBl. 1990, S.619 ff.
- ders., Aufklärung der Öffentlichkeit im Umweltfragen – wirtschaftspolitisches Ziel und wirtschaftsverwaltungsrechtliche Aufgabe, WUR 1991, S.71 ff.
- Hammerl, Ch., Das Produktsicherheitsgesetz im Bereich des Lebensmittelrechts, ZLR 1997, S.611 ff.
- Hauberichs, S., 1.Schweizer Fachtagung "Produkt- und Umwelthaftung", in: Produkt- und Umwelthaftungspflicht International, 1996, S.26 ff.
- Heintzen, M., Die staatliche Warnung als Handlungsform?, in: Becker-Schwarze, Kathrin u.a. (Hrsg.), Wandel der Handlungsformen, 1991
- Himmelmann, S., Umweltrecht in der Europäischen Union, in: Himmelmann/Pohl/Tünnesen-Harmes, Handbuch des Umweltschutz, 1996, A.9
- v.Hoyning-Huene/Compensis, Deutsche Unfallverhütungsvorschriften im EG-Binnenmarkt – insbesondere für die Gerätesicherheit –, NZS 1993, S.233 ff.
- Joerges/Falke/Micklitz/Brüggemeier, Die Sicherheit von Konsumgütern und die Entwicklung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1988
- Köck, Indirekte Steuerung im Umweltrecht: Abgabenerhebung, Umweltschutzbeauftragte und Öko-Auditing, DVBl. 1994, S.27 ff.
- Kollmer, N., Zivilrechtliche und arbeitsrechtliche Wirkung des Gerätesicherheitsgesetzes, NJW 1997, S.2015 ff.

- Krämer Erwin, EWG-Verbraucherrecht, 1985
- Kullmann, H. J. Handbuch Produzentenhaftung
ders., Das künftige Produktsicherheitsgesetz, ZRP 1996, 436 ff.
- ders., Die Rechtsprechung des BGH zum Produkthaftpflicht in den Jahren 1995-1997, NJW 1997, S.1746 ff.
- Leibholz/Rinck/Hesselberger,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7.Aufl.
- Leidinger, T., Hoheitliche Warnungen, Empfehlungen und Hinweise im Spektrum staatlichen Informationshandelns - Zum aktuellen Stand der Diskussion in Rechtsprechung und Literatur -, DÖV 1993, S.925 ff.
- Middeke, Nationaler Umweltschutz im Binnenmarkt - Rechtliche Möglichkeiten und Grenzen umweltrelevanter Alleingänge im Verhältnis zum freien Warenverkehr, 1994
- Montag, Umweltschutz, freier Warenverkehr und Einheitliche Europäische Akte, RIW 1987, S.935 ff.
- Ossenbühl, Fr., Zur Staatshaftung bei behördlichen Warnungen von Lebensmitteln, ZHR 1991, S.329 ff.
- Philip, R., Staatliche Verbraucherinformation im Umwelt- und Gesundheitsrecht, 1990
- Reich, N., Förderung und Schutz diffuser Interessen durch die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1987
- ders., Schutzpolitik i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im Spannungsfeld von Rechtsschutznormen und institutioneller Integration, 1988
- Reuter, Binnenmarkt Europ - Das Beispiel der neuen Maschinenrichtlinie, CR 1990, S.540 ff.
- ders., Die neue Maschinenrichtlinie: Ein Europäischer Binnenmarkt im Maschinen - und Anlagenbau, BB 1990, S.1213 ff.
- Sattler, Inhalt und Bedeutung des CE-Zeichens, in: Deutscher Industrie- und Handelstag (Hrsg.), 1993
- Sokoll, Di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im Übergang zum Europäischen Binnenmarkt - Änderungen zum 1.1.1993, NZS 1993, S.9 ff.
- Tremml, B./Nolte, S., Amthaftung wegen behördlicher Warnungen nach dem

Produktsicherheitsgesetz, NJW 1997, S.2265 ff.

Tünnesen-Harmes, Ch., Die CE-Kennzeichnung zum Abbau technischer Handelshemmnisse in der Europäischen Union, DVBl. 1994, S.1334 ff.

Wank/Bürgmann, Deutsches und Europäisches Arbeitsschutzrecht, 1992

Wlotzke, Technischer Arbeitsschutz im Spannungsverhältnis von Arbeits- und Wirtschaftsrecht, RdA 1992, S.85 ff.

ders., Umsetzung des EG-Richtlinienwerkes für Maschinen in das deutsche Arbeitsschutzrecht, Die Genossenschaft 1990, S.6 ff.

사회문화법제분석 98-3
消費者製品의 安全性 確保를 위한 制度的 方案

1998년 9월 10일 印刷
1998년 9월 15일 發行

發行人 徐 承 完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東 亞 商 社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 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a0190호

값 6,500 원

1. 本院의 承認 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89-8323-078-9 93360

